

# 韓國戰爭의 勃發背景 研究

— 國內 政治狀況을 中心으로 —

보 관 용  
( 권 이 과 )

國 土 統 一 院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 韓國戰爭의 勃發背景 研究

—國內 政治狀況을 中心으로—



孫 世 一

서울대학교 文理大政治学科 卒業 (1958)  
 日本東京大 法学部大学院 修學 (1971~1973)  
 思想界 編輯長 (1959~1960)  
 新東亞 編輯長 (1964~1970)  
 東亞日報 論說委員 (1971~現在)

刊行責任 金 諄 教 (調査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 要 旨

韓國戰爭의 原因은 기본적으로는 解放 이후의 美蘇의 分割占領에서 비롯된 것이다. 分割占領計劃은 2次大戰의 主導국이었던 美國에 의하여立案된 것으로서 비록 分斷의 固定化가 처음부터 企圖된 것은 아니었으나 韓國이 처한 國際政治上的 위치로 보아 美國이 戰爭初期에 구상한 戰後의 大國協調에 의한 平和體制가 무너지는 경우 分斷의 固定化는 충분히 豫見되는 일이었다.

2次大戰중에 聯合國사이에서 合意된 戰後韓國處理方案은, 카이로 宣言에서 「적당한 時期에」(in due course)로 표명된 完全獨立까지의 過渡的 措置로 國際聯合 또는 美·蘇·英·中의 4個國에 의한 信託統治였다. 信託統治案은 루즈벨트大統領이 2次大戰後에 舊植民地諸地域의 完全獨立의 前段階措置로서 구상한 것인데, 韓國의 경우는 蘇聯이나 中國의 單獨支配를 방지할 수 있는 方案이라는 의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루즈벨트의 死後에 폴란드問題등을 둘러싼 蘇聯과의 不協調, 日本處理와 中國問題에 대한 美國의 政策變化등에 따라 韓國에 대한 國際信託統治는 蘇聯의 韓半島支配 저지라는 對蘇戰略上的 고려가 더 큰 比重을 차지하게 되었다.

2次大戰의 종결과 더불어 南北韓을 分割占領한 美蘇兩軍의 占領政策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蘇聯軍은 進駐와 동시에 日本의 既存統治機構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形式的으로는 韓國人에 의한 行政區域單位의 人民委員會를 결성하게 하여 間接統治의 方式을 취하면서 土地改革, 重要産業의 國有化등 「民主改革」을 추진하여 그곳을 韓半島全體의 革命을 위한 基地로 발전시킨다는 이른바 「民主基地」路線의 政策을 추진시켰다.

이에 비하여 美軍은 直接統治의 原則아래· 처음에는 日本의 統治機構와 人員을 그대로 存続시키려 했을 정도로 現状維持政策을 취하여 韓國人들의 폭발적인 政治的 要求에 対応하지 못한 채 試行錯誤를 거듭했다.

모스크바 3相會議에서 채택된 信託統治案은 蘇聯의 原案에 입각한 것이었는데, 国内右翼勢力의 격렬한 反託運動으로 말미암아 모스크바 決定에 따른 美蘇共同委員會가 失敗로 끝나자 美國은 韓國問題를 國聯으로 移管시켰다. 美國이 韓國問題를 國聯으로 移管시킨 것은 韓國問題를 國際化시킴으로써 직접적인 責任에서 벗어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結果는 南北韓에 두개의 政權樹立을 초래하고 말았다.

韓國戰爭은 北韓에 수립된 共產政權이 國際冷戰体制의 展開라는 國際政治環境속에서 人民解放戰爭으로 도발한 것이었으나, 戰爭挑發決定過程은 北韓政權內的 主導權競争과 깊이 관련된 것이었다. '45年 10월에 北韓에 「朝鮮共產黨北朝鮮分局」이 설치될 때까지만 해도 金日成을 포함한 北韓의 共產主義者들은 朴憲永指導部の 서울中央에 服從할 것을 천명했었으나 蘇聯軍占領下라는 유리한 條件하에서 主導權이 점차로 蘇聯軍의 전면적인 후원과 지시를 받는 金日成에게 넘어가고 南北韓에 「勞動黨」이 별도로 結성되면서 南韓에서의 活動方針도 北韓으로부터 指命을 받으면서 金日成과 朴憲永의 位置는 逆轉되었다.

'46年 7월의 共產黨的 「新戰術」에 따라 南韓의 거의 全域에서 벌어졌던 10月暴動으로 南勞黨은 地下로 들어가고 暴動에 가담했던 共產主義者들은 山岳地帶로 피신하여 共產계렬라가 되었는데, 北韓으로 넘어간 朴憲永등의 南勞黨系 共產主義者들은 北韓의 政權樹立以後 그들의 勢力基盤인 南韓을 「解放」시키는 것이 그들의 地位를 만회하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北韓共產主義자들이 南韓赤化가 成功하리라고 判斷한 데에는 10月暴動 이후로 山岳地帶로 피신한 共產主義者와 그들이 派遣한 빨치산들의 活動에 대한 過大評價와 韓國政局의 추이, 특히 5.30 選舉에 대한 我田引水 격인 分析등이 作用했던 것으로 보이며, 또 美國의 太平洋防禦線에서 韓國을 제외한 애치슨聲明은 그들이 戰爭을 도발하더라도 美國은 介入하지 않을 것으로 判斷한 것 같다. 그리고 解放이후에 蘇聯軍과 같이 入國한 武力部隊와 中共軍과 같이 活動하다가 入國한 武力部隊를 주축으로 하여 조직된 北韓의 軍隊는 蘇聯의 적극적인 支援으로 탱크등의 重裝備를 갖추어 1950 년초의 단계에서는 南韓의 軍事力에 비하여 월등하게 優勢하여 美國만 介入하지 않으면 軍事的으로 勝算이 있다고 단정했던 것 같다.

韓國戰爭을 둘러싼 蘇聯 및 中共과의 事前協議問題에 대해서는 여러 갈래로 分析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밝혀진 資料로 보는 한 蘇聯과는 事前協議가 있었으나 中共과는 事前協議가 있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蘇聯과의 협의는 北韓쪽의 이니셔티브로 이루어졌으나 일단 戰爭을 개시하기로 한 다음에는 作戰指揮를 蘇聯人들이 主導한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北韓이 戰爭挑發을 감행하기로 決定하기 까지에는 朴憲永등의 南勞黨系가 金日成을 說得한 것이었음은, 戰爭발발 이전에 各種 會議에서 南韓의 情勢報告를 朴憲永등이 주로 하고 있고 戰爭이 발발되자 南韓의 各地域에 배치된 政治工作員들이 대부분 南勞黨系였으며 休戰이 成立되자 일차적으로 朴憲永一黨을 숙청한 것이 韓國戰爭失敗에 대한 引責이라는 성격이 없지 않았던 점등으로 짐작할 수 있다.

韓國戰爭이 北韓共產主義者들에 의한 人民解放戰爭이라는 점에서 南韓에 대한 武力侵攻은 당연한 論理的歸結임에도 불구하고 北韓이나 蘇聯側이 韓國軍의 北侵說을 주장하고, 또 美國의 일부 修正主義者들이 이러한 주

장에 同調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은, 國境을 넘어 武力侵略을 하는 것은 人道主義에 위배 된다는 固定觀念에 따른 모순이라고 하겠다. 다만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이용된 것이 李承晩의 환상적인 北進統一論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 目 次

|                                 |     |
|---------------------------------|-----|
| 1. 第2次大戦中 聯合국의 对韓政策 .....       | 7   |
| 가. 美国의 戰後世界秩序構想과 韓國의 地位 .....   | 7   |
| 나. '카이로' '테헤란' 會談 .....         | 11  |
| 다. '알타' 會談 .....                | 15  |
| 라. '포츠담' 會談 .....               | 19  |
| 마. 38度線의 劃定 .....               | 24  |
| 2. 美·蘇의 分割占領과 初期占領政策 .....      | 35  |
| 가. 解放直後의 国内政治情勢 .....           | 35  |
| 나. 蘇聯軍의 初期占領政策 .....            | 41  |
| 다. 美軍의 初期占領政策 .....             | 50  |
| 라. 모스크바 3 相會議 .....             | 58  |
| 3. 統一政策樹立의 失敗 .....             | 73  |
| 가. 信託統治論爭과 左右分裂 .....           | 73  |
| 나. 第1次 美·蘇共同委員會 .....           | 78  |
| 다. 左右合作과 北韓의 「民主基地」政策 .....     | 83  |
| 라. 共産党的 「新戰術」과 10月暴動 .....      | 87  |
| 마. 第2次 美·蘇共同委員會 .....           | 93  |
| 4. 美国의 对韓政策轉換과 蘇·北韓의 戰爭準備 ..... | 99  |
| 가. 美国의 撤軍計劃 .....               | 99  |
| 나. 國聯의 韓國問題議決 .....             | 104 |

|                                |     |
|--------------------------------|-----|
| 다. 南勞黨의 「2.7 救國鬭爭」과 南北協商 ..... | 111 |
| 라. 두개의 政權樹立과 美·蘇軍의 撤収 .....    | 118 |
| 마. 美國의 對韓援助와 韓國軍事力 .....       | 129 |
| 바. 北韓의 軍事力增強과 對南工作 .....       | 141 |
| 사. 美國의 世界戰略과 太平洋防衛線 .....      | 148 |
| 아. 5.30 選舉와 北韓의 偽裝平和攻勢 .....   | 158 |
| 5. 結 論 .....                   | 178 |

## 1. 第2次大戦중 聯合국의 對韓政策

가. 美國의 戰後世界秩序構想과 韓國의 地位

第2次大戦중에 聯合국의 戰爭目標와 戰後世界秩序의 기초에 관한 原則이 처음 表明되기는 美國이 參戰하기 직전(1941년8월)에 발표된 大西洋憲章(정식명칭은 「合衆國大統領과 英首相의 共同宣言」)에서였다고 할 수 있다. 8개항으로 된 同憲章에는 領土의 不擴大, 關係國民의 희망에 일치하지 않는 領土變更의 不願 모든 民族이 그들 자신의 政體를 선택할 權利의 존중, 強奪된 主權과 自治의 回復등 植民地主義의 清算條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많은 英, 美人들에게 同憲章은 윌슨大統領의 14個條와 "뉴딜" 政策의 基本思想, 거기에 루즈벨트大統領의 「네가지 自由」(Four Freedom)<sup>1)</sup>를 합친데 지나지 않는 내용의 宣傳用 文書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제로 처칠 首相은 大西洋會談에서 귀국한 뒤 下院에서 열설하면서 同憲章은 印度나 버마 또는 英帝國의 그밖의 地域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大西洋會談直後에 蘇聯이 同憲章에 參加한 다음 뒤이어 10월에 美·英의 對蘇 援助를 약속한 3國議定書가 조인됨으로써 이른바 大同盟(Grand Alliance)이 결성되고, 12월의 日本의 真珠灣攻擊에 따라 美國이 參戰하게 되자 1942년1월1일에 美·英·蘇·中 4個國은 "파시즘" 打倒를 위한 相互協力 및 單獨不講和를 약속한 聯合國宣言을 발표했는데, 同宣言은 大西洋憲章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聯合國宣言에는 이튿날로 亡命政府를 포함하여 26個國이 참가했다) 그리하여 反파시즘 및 民主主義守護라는 聯合國의 戰爭目標가 뚜렷해지고 聯合國間의 結束이 강화되어 合同作戰,

武器援助, 基地提供 등 적극적인 협력이 추진되어 갔다. 그중에서도 英·美 두나라의 협력관계는 聯合參謀本部를 비롯한 各種 戰時合同機構의 설치 및 루즈벨트와 처칠의 빈번한 接觸<sup>2)</sup> 등 外交史上에 類例가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主導權은 말할 나위도 없이 「民主主義의 兵器廠」(F.D. 루즈벨트)인 美國에 있었다. 蘇聯과의 協力은 美·英의 英글로 아메리칸 聯合과 蘇同盟간의 「기묘한 同盟」(존·R·딘)관계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同盟關係는 戰後의 冷戰에 이어지는 일들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問題點들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大西洋憲章에 표명된 植民地主義清算의 原則은 새로운 國際平和機構의 설립문제와 함께 美國의 戰後平和構想의 核心을 이루는 것이었다. 美國의 對日宣戰布告 이후로는 특히 아시아諸地域의 植民地의 장래의 地位問題가 강조되게 되었는데, 그것은 오직 民主主義나 人道主義의 原則에서만은 물론 아니었다. 桎梏하의 아시아人을 解放시킨다는 것은 우선 聯合國의 戰爭目標를 高揚시키고 그럼으로써 이른바 「大東亞宣言」 등에서 보는, 英·美로부터의 아시아人의 解放이라는 日本의 戰爭目標宣伝에 對항하여 아시아 諸地域住民들을 聯合國쪽으로 끌어들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美國의 전통적인 對아시아政策인 「門戶開放」政策의 世界的規模로의 확대라는 美國의 國家利益과도 합치되는 것이었다. 곧 植民地의 解放으로 이들 地域을 市場과 原料供給地로서 개방시키고 大國協調가 가능한 平和秩序를 수립함으로써 戰時에 크게 확대된 美國經濟를 戰後에도 그대로 유지하여 美國의 國際的 主導權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sup>3)</sup>

그러나 아시아諸地域에 여러 植民地를 두고 있던 英國은 植民地主義清算의 原則에 대하여 美國의 태도와 같을 수가 없었다. 大西洋會談에서



도 처칠은 『大統領, 英國은 한 순간이라도 英聯邦内の 特惠地位를 상실할 것을 제안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루즈벨트의 제안에盟裂히 반대했는데,<sup>4)</sup> 처칠의 이러한 태도는 그 뒤로도 달라지지 않았다.<sup>5)</sup> 루즈벨트는 이러한 처칠의 태도가 불만이어서, 그 뒤의 3巨頭會談등에서도 植民地諸國의 戰後處理問題에 대해서는 처칠을 제외한 蔣介石 또는 스탈린과의 個別會談에서 더 많이 論議하고 있다.

韓國, 滿州, 台灣 등의 日本의 植民地 및 太平洋地域의 日本의 委任統治領의 將來의 地位에 대한 美國의 構想은 蘇聯의 對日參戰問題를 포함한 對日作戰 및 戰後日本處理問題와 아울러 예상되는 戰後의 美蘇關係와 關係해서 검토되었다. 美國의 韓國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日本의 真珠灣攻撃 직후부터였다. 真珠灣攻撃이 있는 2주일 뒤인 12月 22日에 韓國務長官은 駐中大使 가우스에게 重慶에 있는 大韓民國 臨時政府에 관한 정보를 中國政府에 은밀히 조회할 것을 訓令하고 있는데<sup>6)</sup>, 이는 臨時政府가 6月 6日에 金九 名의로 루즈벨트에게 外交關係의 再開를 요청하면서 李承晚을 駐美全權代表로 擧げた 申한에 대한 反應이라고 볼 수 있다.<sup>7)</sup> 비슷한 時期에 루즈벨트는 評論家 에드가 스노우와의 私的인 會見에서 韓國은 獨立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고<sup>8)</sup>, 1942年 2월 23일의 라디오放送에서도 韓國人에 言及하여 『그들은 日本의 專制主義를 육체적으로 熟知하고 있다』고 말하고 『大西洋憲章은 大서양에 連한 地域에서 뿐만 아니라 全世界에 적용된다』고 말했다.<sup>9)</sup>

그런데 루즈벨트는 이를 解放되는 植民地諸國民은 완전히 獨立할 수 있을 때까지 「自治의 訓練」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地方 行政부터 시작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完전한 國家 體制에 이르기까지 漸次적인 自治의 실행을 통하여 窮極的인 獨立主權을 획득하기 위한 訓

練期間」(1942년 1월 15일의 演說)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自治의 訓練」의 方法은 새로 설립되는 國際平和機構 또는 그 地域에 대한 利害關係國의 信託統治였다. 信託統治制度의 發想은 제 1차대전 이후의 國際聯盟하의 委任統治制度에서 나온 것이며, 國際平和機構의 구상 자체로 國際聯盟을 염두에 둔 것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戰爭의 進전과 동시에 美國務省內에는 戰後處理問題를 研究하는 機構들이 설치되는데, 1942年 10월에 발족된 戰後外交政策諮問委員會를 중심으로 한 國務省의 견해는, 植民地諸地域의 장래의 地位는 戰後國際社會의 構想속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그런 경우 하나의 世界機構의 存在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植民地諸地域에 대한 信託統治는 國際機構 그 자체에 實質性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國務省의 견해에 비하여 루즈벨트大統領은 새로운 國際平和機構보다도 強大國(그는 美·蘇·英·中의 4個國을 想定했다)의 協調에 의한 國際秩序의 保障을 더 중요시했고, 따라서 植民地諸地域에 대한 信託統治도 이들 強大國에 의한 信託統治를 생각했다. 巨頭會談등에서 루즈벨트가 國務省의 政策提議를 그다지 채택하지 않고 個人外交를 벌이는 것도 이러한 기본적인 見解差異에서 起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42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國務省內에서는 日本의 戰後處理問題와 관련하여 東北아시아地域의 장래의 地位問題가 구체적으로 討議되었다. 戰後外交政策委 政治問題分科委의 8月 會合에서는 蘇聯領土에서 많은 韓國人이 蘇聯의 영향하에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앞으로 韓國에 信託統治를 실시하는 경우 中國과 함께 蘇聯도 당연히 參加할 權利를 주장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고, 同分科委의 10月會合에서는 韓半島는 美·蘇·中 3個國의 信託統治하에 두어야 한다는 권고가 정식으로 채택되었다.<sup>10)</sup>

그런데 信託統治의 구체적인 내용은 1945년에 이르러 國際聯合憲章에 明文化될 때까지 명확하지 않았고 또 美·蘇關係의 추세에 따라 韓國에 대한 信託統治의 目的에 관한 美國의 基本政策도 달라지게 되는 것은 後述하는 바와 같다.

#### 나. 카이로-테헤란會談

한국문제에 대한 美國의 위와같은 構想은 聯合國間의 非公式協議를 거쳐 1943년 11월 27일의 카이로宣言에서는 「적당한 時期에」(in due course)<sup>11)</sup> 韓國을 獨立시킬 것을 聯合國의 政策으로 公式으로 천명했는데, 이 「적당한 時期에」란 곧 일정한 기간의 信託統治의 실시를 뜻하는 것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韓國問題에 대한 聯合國間의 協議는 對日作戰 및 戰後日本 處理問題와 관련하여 다른 東아시아地域 문제와 함께 1943년부터 시작되었다. 루즈벨트는 同年 3월 27일에 訪美중인 이든 英外相과의 회담에서 滿州 韓國, 台灣 및 인도차이나의 戰後處理問題를 제기했는데, 인도차이나에는 信託統治(trusteeship)를 실시하고, 滿州와 台灣은 中國에 반환해야 하며, 韓國에는 中國과 美國 및 그밖의 한두 나라가 참가하는 國際信託統治(international trusteeeship)를 실시할 것을 제의했다.<sup>12)</sup>

그러나 이든은 그것이 결국은 英國의 植民地諸국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信託統治案에 否定的인 反應을 보였다. 美·中間의 협의는 루즈벨트와 1942년 11월부터 1943년 6월까지 美國을 방문했던 宋美齡과의 여러 차례의 會談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宋美齡이 6월 24일의 마지막 會談을 마치고 蔣介石에게 보낸 보고 가운데에는 『루

루즈벨트는 韓國을 잠시 中·美·蘇의 共同管理 아래 둘 생각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sup>13)</sup> 그리고 滯美중인 宋子文外交部長은 흔백國務省 政治顧問을 만나 『韓國을 信託統治下에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하여 中國의 유력한 輿論이 기울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14)</sup> 또한 蘇聯에 대해서는 같은 해 10월에 美·英·蘇 3國外相會議에 參席하기 위하여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韓國務長官에게 루즈벨트가 以上과 같은 美國政府의 構想을 스탈린에게 통고하게 했다.

카이로會談중 韓國問題는 11月 23日의 루즈벨트와 蔣介石과의 會談에서 토의되었는데, 루즈벨트가 韓國, 인도차이나 그밖의 植民地諸國과 泰國의 장래의 지위에 관하여 상호 諒解에 도달할 것을 제의하자 蔣介石은 이에 同意하면서 韓國獨立의 必要性을 力說했고, 루즈벨트는 그의 의견에 동의했다.<sup>15)</sup> 그런데 루즈벨트는 蔣介石의 韓國獨立의 필요성 주장을 韓國에 대한 中國의 歷史的 地位의 회복을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蔣介石과 會談한 이튿날의 처칠과의 會談에서 루즈벨트가 처칠에게 『어제 개최했었던 討議로 蔣總統은 매우 만족한 것 같아 보이는데, 中國이 滿州와 韓國의 再占拠를 포함한 광범한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sup>16)</sup> 이보다 앞서 루즈벨트는 카이로로 향하는 「아이오와」艦에서, 會談議題試案을 놓고 參謀陣들과 討議하면서도 『蔣總統은 蘇·中·美·3國이 信託管理國이 되어 관리할 韓國의 信託統治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었는데<sup>17)</sup>, 루즈벨트와 蔣介石의 會談이 있는 이튿날 中國側이 美國側에 수교한 覺書에는 『中·英·美는 戰後 韓國獨立을 承認하는데 동의하여야 한다. 韓國獨立承認을 동의하는 蘇聯의 참여는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조항(4조 C항)이 들어 있었다.<sup>18)</sup>



그런데 英國은 처음 카이로宣言에 韓國獨立의 보장을 포함시키는데 찬성하지 않았다. 宣言文 原案討議에서 英國은 日本이 탈취한 滿州, 台灣 등 中國領土의 반환이나 韓國의 獨立에 反對하면서 『日本이 포기하는 것을 明記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주장했다.<sup>19)</sup> 이러한 英國의 주장은 아시아地域의 英國植民地諸國의 현상유지를 희망한데서 나온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 점에서, 英國의 이러한 주장의 동기를 日本의 韓國占有를 허용함으로써 日本과 어떤 協定에 도달하여 戰爭을 단축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모른다고 推測하기는 어렵다.<sup>20)</sup>

카이로宣言은 발표되기 직전에 테헤란에서 열린 美·英·蘇 3巨頭會談에서 討議되었는데, 스탈린은 카이로宣言의 內容에 대하여 贊意를 표명했다. 公式會談이 열리기 前인 28일의 루즈벨트=스탈린 會談에서 中國問題를 비롯한 아시아의 植民地諸國의 장래의 지위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스탈린은 『對日戰은 軍事的인 面뿐만 아니라 政治的인 분야에서도 日本人들과 싸워야 하는데, 이는 특히 日本人들이 몇몇 植民地地域에 최소 한도의 명목으로나마 獨立을 인정했기 때문이다』고 말하면서 프랑스가 다시 인도차이나를 지배하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고 루즈벨트는 스탈린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中國도 인도차이나에 대하여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과 그러나 解放民族이 곧 自治能力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인도차이나를 20년내지 30년간의 信託統治下에 둘 것을 蔣介石과 論議했다고 말했다. 루즈벨트의 말에 스탈린은 전폭적으로 찬성했다.<sup>21)</sup> 이어 30일의 3巨頭會談에서 처칠이 스탈린에게 카이로宣言案의 極東關係를 읽었느냐고 묻자 스탈린은 읽었다면서 『韓國은 獨立되어야 하고, 滿州, 台灣 鵬호島는 中國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옳다』고 말했다.<sup>22)</sup> 그런데 카이로 및 테헤란에서 巨頭會談을 마치고

돌아와 1944년 1월 12일 太平洋戦争国会議 (Pacific War Council. 美·英·中·和·比·加·오스트랄리아 뉴지랜드로 構成)에 會談結果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루즈벨트는 스탈린이 同意한 것으로 다음 사항을 들었다. 곧 1) 滿州, 台灣, 鵬 浩島는 中國에 반환되어야 하고, 2) 韓国人들은 아직 獨立政府를 운영 유지할만한 能力이 없으므로 약 40년간의 信託 (tutelage)하에 두어야 하며, 3) 소련은 시베리아에 不凍港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하나를 원하고 있는데 스탈린은 大連을 自由港으로 만들어 시베리아의 輸出入用으로 사용하는 案에 호의를 가지고 있고, 4) 滿州鐵道를 中國政府에 귀속시키는 것을 동의하고 있으며, 5) 스탈린은 사할린 전부와 千島列島의 소련귀속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sup>23)</sup>

이처럼 카이로會談 및 테헤란會談에서 합의된 聯合國의 對韓處理方案은, 韓國을 獨立시키되 당분간 信託統治下에 둔다는 것이었는데 後日의 사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테헤란에서 스탈린이 완전 독립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同意한 것은 "trusteeship"이 아니라 "tutelage"로 되어있는 점이다.

아울러 南사할린을 再獲得하고 大連에 進出하며, 또 信託統治參加 또는 그밖의 형태 (가령 對日作戰의 경우의 侵攻같은)로 韓半島에도 進出할 수 있게 된 蘇聯이 戰後에 東아시아에서 戰前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強大國으로 出現할 것이라는 습사라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中國内部의 國民黨政府와 共產黨의 대립은 蘇聯으로 하여금 努力을 펼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 따라서 戰前의 日本대신에 蘇聯이 아시아 大陸에서 最強大國으로 등장할 可能性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한편 太平洋에서는 카이로宣言이 「日本이 第1次大戰當時 奪取 또는 占領한 일체의 島嶼를 박탈할 것」을 분명히 했는데, 이들 島嶼들의 帰屬問題는 巨

頭會談에서는 직접 거론되지 않았으나 對日作戰上 美軍이 占拠하게 될 것임은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北아시아에서는 蘇聯이 그리고 太平洋諸地域에서는 美國이 最強大國이 되어 戰後의 이 地域의 平和와 秩序를 維持해 나간다는 대체적인 양해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는 카이로宣言에서 滿州의 中國返還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蘇聯이 大連을 使用할 수 있게 한 것이라든가, 對日作戰중 카이로會談에서 中國의 강력한 주장으로 버마作戰(곧 北쪽에서는 스틸웰 指揮下의 美·英·中 3國의 陸軍이, 南쪽에서는 暹羅灣을 넘어 英軍을 主力으로한 마운트배튼 東南亞 司令官 指揮下의 機動部隊가 日本軍에 反擊을 가한다는 戰略)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테헤란會談에서 蘇聯의 對日參戰이 約束되자 同作戰이 연기되어 버리는 사실등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蔣介石은 重慶에 돌아 온 다음에야 이러한 사실을 通牒받음과 우선 中國軍(雲南軍)만으로 北버마 進攻을 해달라는 루즈벨트의 요청을 받았다.<sup>24)</sup>

#### 다. 알타會談

카이로·테헤란會談에서 알타會談까지의 1年餘 동안에 美國政府의 아시아太平洋地域에 관한 展望이나 構想은, 日本의 降伏을 전제로 그 이후의 蘇·英·中의 地位와 美國에 의한 占領地行政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1944년 5월에 작성된 「韓國 政治問題 臨時政府」<sup>25)</sup> 라는 政策文書도 그중의 하나였다. 同文書는, 韓國人들은 36년 동안 중요한 政治的地位에서 배제되어 國家經營의 經驗을 박탈당해 왔으며 또 獨立하더라도 危弱한 韓國은 國際的壓力의 대상이 되어 太平洋地域의 政治的安定과 平和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정적인 監視機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一般國際機構下에 信託統治制度가 樹立된다면 韓國에 그러한 信託統治制度를

적용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同文書는 그러나 信託統治가 아닌 國際監視委員會의 구성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으나, 어떤 형태이든 그것이 單一國에 의한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蘇聯 1個國에 의한 監視는 美國의 利害가 있는 太平洋地域의 安全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韓國이 자주적인 獨立國이 될 때까지 單一國의 영향력하에 놓여서는 안된다는 原則은 알타會談을 앞두고 國務省이 작성한 「戰後韓國의 地位」<sup>26)</sup>라는 題下의 政策文書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주지하다시피 1945년 2월에 열린 알타會談에서는 蘇聯의 對日參戰이 확약되고 그와 관련된 極東에서의 蘇聯의 利權을 보장하는 秘密協定이 이루어지는데, 韓國問題는 蘇聯의 對日參戰 및 戰後의 아시아에서의 地位와 깊이 관련되게 마련이었다. 위의 政策文書는 이러한 狀況에 대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비록 巨頭會談에서 구체적으로 擧論되지는 않았으나 이후의 美國의 對韓政策 基本方針이 되었다. 同文書의 「韓國에 관한 聯合國間의 協議」항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問題]

어느 나라가 1) 韓國의 軍事占領과 2) 만일 韓國에 대한 過渡的 國際施政 또는 信託統治가 결정되는 경우 이에 참가해야 할 것인가?

[討議點]

韓國獨立의 수립에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共同行動이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1) 中·蘇는 韓國에 연접되어 있고 韓國問題에 전통적인 利害를 가져 왔다.



2) 美·英·中은 카이로宣言에서 韓國은 적당한 時期에 自由롭고 獨立되게 될 것이라고 公約했다.

3) 單一國에 의한 韓國軍事占領은 심각한 政治的 反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同文書는 1)의 문제에 대하여 韓國問題는 國際性을 띄고 있으므로 軍事占領과 軍事政府에는 聯合國代表가 참가해야 하고, 또 그러한 軍事政府는 全韓國을 分割地區로가 아닌 單一體의 中央集權的行政의 原則에 입각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그러한 代表國은 장래의 韓國의 政治的地位에 이해가 깊은 나라들로 하되 다른 나라들의 참가는 美國의 占領參加의 효과를 약화시킬 정도로 강하지 않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리고 2)의 문제에 대하여는, 過渡的國際施政 또는 信託統治는 제안중인 國際機構(곧 國聯)아래 두더라도 美·英·中·蘇가 信託國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러한 國際機構와 獨立的인 過渡的施政機關이 수립되더라도 위의 4大國은 당연히 참가하게 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처럼 알타會談段階의 美國의 對韓政策의 基本方針은 完全 독립까지의 과정을 軍事占領 및 軍政에서 過渡的國際施政 또는 信託統治를 거쳐 韓國人에 의한 獨立政府를 樹立하는 단계로 상정하고, 또 그러한 과정은 單一國에 의한 것이거나 分割占領 및 管理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한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國務省의 건의가 巨頭會談에서 그다지 反映되지 않았던 것은 스탈린과의 會談에서 루즈벨트가 外國軍의 韓國駐屯可能性을 否認하고 있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2월 8일에 열린 再巨頭會談에서 루즈벨트는 韓國에 대하여 美·蘇·中 각 1명씩의 代表로 구성되는 信

託統治 ( trusteeship ) 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美國이 이런 문제로 경험한 유일한 보기는 필리핀에서인데, 그곳에서 필리핀인은 自治準備에 약 50 년이 걸렸으나 韓國의 경우는 20 년내지 30 년이면 될 것으로 느낀다고 말했다. 스탈린은 그 기간이 짧을수록 좋다고 말하면서 韓國에 外國軍隊가 주둔할 것인지의 여부를 물었다. 루즈벨트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고, 스탈린은 이에 찬성했다. 다음, 루즈벨트는 個人的으로 韓國의 信託統治에 英國의 參加를 요청할 필요는 없다고 느끼나 그러면 英國은 불쾌히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스탈린은 英國은 필경 감정을 상할 것이라고 대답하고, 실제로 처칠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의 의견으로는 英國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27)

이처럼 알타會談에서의 韓國處理問題는 잠정적으로 信託統治를 실시한다는 口頭諒解가 성립되었을 문이다.

그런데 알타協定은 美國政府가 구상해 온 戰後의 美·蘇協調體制를 약속한 것이나, 그것은 이미 大西洋憲章의 原則이나 國際主義的인 政治意識에서 하기 보다는 權力政治的인 思考方式의 產物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戰後에 東北아시아에서의 蘇聯의 勢力伸長은 명백히 豫見되는 것이 없으나, 그것을 될 수 있는대로 美·蘇協調體制로 묶어 戰後의 아시아大陸의 安定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美國政府의 構想이 알타協定을 낳은 것이다.

따라서 植民地諸地域의 處理問題로 政治的地位問題보다는 經濟的發達과 平和維持問題가 더 중요시되어 새로 설치되는 國際機構下에 설립될 信託統治制度는 敵國이 지배하고 있던 領土 및 旧委任統治領에 한정시킬 것이 결정되었다. 곧 유럽諸國이나 美國의 植民地는 信託統治地域에서 제

의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信託統治制度의 채택에 따라 美國의 軍事基地가 건설될 太平洋地域의 旧委任統治領이나 日本의 領土에서는 美國의 絶對的影響力이 보장된 셈이다.

라. '포츠담' 會談

韓國의 信託統治案이 갖는 問題性에 대하여 聯合國 특히 美國이 명확히 의식하게 되는 것은 얄타會談 이후부터였다. 會談 2個月 뒤인 1945년 4월에 루즈벨트가 急死한데 이어 5월 8일에 獨逸이 항복하자 戰後處理 및 임박한 蘇聯의 對日參戰問題와 관련하여 對蘇協議가 필요하게 되어 美·英은 다시 蘇聯에 巨頭會談을 요청했다. 副統領에서 大統領職을 계승한 트루만은 外交政策에서도 우선 前任者의 政策을 그대로 답습했는데, 韓國處理問題는 1) 韓國의 獨立을 규정한 카이로宣言을 蘇聯으로 하여금 명확히 약속하게 하고 2) 韓國이 聯合國에 의하여 解放되는데로 곧 美·英·中·蘇 4個國의 信託統治下에 둔다는 것에 한층 명확한 合意를 해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5월 21일자 陸軍省의 判斷書에 따르면 陸軍은 『蘇聯은 美軍이 占領可能하기 전에 日本人을 격멸하고 사할린, 滿州, 韓國 및 華北을 점령하는 것은 軍事的으로 可能하다』고 보고 따라서 『美國은 兵力을 사용하지 않는한 極東에 관하여 蘇聯에 壓力을 가할 軍事的手段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것이 못되는 것으로 보인다. 軍事的 見地에서는 極東에 관하여 蘇聯側과 完전한 理解의 協約을 갖는 것이 요청된다』는 의견이었다.<sup>28)</sup>

5월에 트루만의 特使로 蘇聯을 방문한 헤리 홈킨스는 스탈린과 광범위한 問題를 交涉했는데, 韓國문제에 대해서는 美·英·蘇·中 4個國의



信託統治下에 둔다는 것에 합의했다.<sup>29)</sup> 이 報告를 받은 트루만은 헐리  
 駐中大使에게 4 大國信託統治에 대한 蔣介石의 同意를 얻도록 訓令했다.  
 이렇게 하여 4 大國에 의한 信託統治가 한국 문제에 대한 聯合國의 公同  
 된 政策으로 확립된 셈인데, 그러나 스탈린-흄킨스會談에서도 信託統治라  
 는 基本方針 이외에 이를테면 信託統治下의 過渡政府의 구성문제라든가  
 信託期間등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合意가 없었다.<sup>30)</sup> 다만  
 美國으로서는 이로써 韓國이 蘇聯의 單獨支配下에 놓일 가능성을 저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시점  
 에서의 美國의 韓國信託統治案은 獨立을 위한 自治能力의 訓練이라는 루  
 즈벨트의 構想에서 韓半島에 대한 蘇聯勢力의 진출의 저지방안이라는 성  
 격이 더 강해진 점이다. 이 점은 國務省이 1945년 6월에 작성한  
 「戰爭終結때의 아시아 太平洋地域의 情勢判斷 및 美國의 目的과 政策」<sup>31)</sup>  
 이라는 題下의 政策文書에 뚜렷이 나타나 있다. 同文書는 먼저 序頭에  
 서 『極東과 太平洋에서의 勝利는 美國의 거대한 軍事力과 희생의 결과  
 로 초래될 것이다. 美國은 그 대가로 이 광대한 地域의 平和와 安全  
 및 經濟的 繁榮의 적절한 보장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그러한 平和, 安  
 全 및 經濟的 繁榮을 左右하게 될 조건으로 1) 住民들의 政府形態를  
 選擇할 權利 2) 世界平和守護國( 聯合國-筆者)간의 협조를 들었다. 그  
 러한 인식에서 「韓國」항에서는 예견되는 解放後의 사태와 이에 대처할  
 美國의 政策方向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日本  
 의 支配가 종결되면 政治, 經濟, 社會의 심각한 混亂이 야기될 것은 의  
 심할 여지가 없다. 解放과 더불어 오래동안 日本人 및 韓國人地主에  
 착취당해 온 小作人들은 철저한 農地改革을 바랄 것이다. 韓國人을 代  
 表하는 政府는 현재 存在하지도 않으며 治安의 마비는 동시에 經濟의

混亂을 가져올 것이다. 軍事作戰에 의한 産業施設의 破壞에 따른 失業, 日本으로부터의 帰國者등으로 아마도 人口의 10% 이상이 失業者가 될 것이다. 蘇聯은 極東戰에 참가하고 蘇聯軍隊는 韓國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蘇聯은 韓國의 일부에 軍事政府를 樹立하고 이어 蘇聯에서 訓練된 韓國인들이 참가하는 親蘇政府를 수립하려고 할지 모른다. 市民權을 가진 蘇聯태생을 포함하여 30만명의 韓國인이 시베리아에 살고 있으며 蘇聯軍隊에는 2만내지 3만명의 韓國系蘇聯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韓國의 經濟 및 政治狀況은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温床이 될 것이고, 비록 韓國人 一般이 親蘇的이지는 않으나 蘇聯의 지원을 받는 社會主義體制의 政策과 活動은 韓人 一般의 支持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美國의 對韓政策의 基本은 카이로宣言의 실현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韓國의 정치적 장래와 관련하여 中·英·蘇 등 強大國과의 事前協約과 共同行動을 模索해야 한다. 美國은 軍事政府와 過渡的施政에 모두 참가해야 된다는 것이 美國政府의 政策이다. 뿐만 아니라 韓國人들로 하여금 強力하고 民主的인 獨立國家의 조속한 建設을 원조하는 것이 美國의 의도이다.

國務省의 이러한 狀況判斷은 포츠담會談에 대비하여 7월 4일자로 된 「韓國過渡施政 및 豫想되는 蘇聯의 態度」<sup>32)</sup> 및 「戰後韓國政府」<sup>33)</sup>라는 題下의 政策文書등에 그대로 反映되어 있다. 이들 文書에서 새로 提案된 것은 蘇聯이 對日戰에 參戰하지 않는 경우에도 蘇聯의 極東位置에 비추어 過渡施政國의 一員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과 過渡施政에서 蘇聯이 다른 參加國들을 명목상의 發言權밖에 갖지 못할 정도로 主導權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韓國을 信託統治地域으로 지정하여 國際聯合의 管理下에 두는 것이 낫다고 한 점이다.



한편 같은 때(7월 5일자)에 작성된 美陸軍省報告書는 韓半島를 蘇聯의 作戰地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占領은 美·蘇가 공동으로 행하고 聯合國의 信託統治에 의하여 예상되는 蘇聯의 企圖를 저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으며<sup>34)</sup>, 이보다 앞서 6월 18일의 美軍首腦會議때에 작성된 것으로 推測되는 「蘇聯과 對日戰爭과의 關係」<sup>35)</sup>라는 參謀部狀況判斷書는 『韓國人 자신들도 한번 被征服, 奴隸化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의 의도를 극단으로 의심할 것이며, 따라서 아마 韓國內에서 作戰하는 어떠한 單一國軍隊에 대해서도 敵對的일지 모른다』면서, 軍事적으로 가능하다면 進攻軍은 單一總聯合軍司令官 指揮下의 關係國差出의 부대로 편성되는 것이 권고할만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포츠담 會談準備用政策文書인 「蘇聯의 카이로宣言支持」<sup>36)</sup>는 蘇聯의 카이로宣言加盟公約은 極東 및 太平洋에서 美·蘇가 취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상세한 諒解로써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諒解는 滿州와 아마도 全 中國 및 韓國에 「友好」政府를 수립하려는 蘇聯의 예상되는 企圖를 저지하는데 필요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國務省 및 軍首腦의 對蘇경계심은 포츠담會談開始 前날인 7월 16일에 스티븐슨陸軍長官이 트루만에게 제출한 報告書에도 표명되었는데, 스티븐슨은 同報告書에서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本職이 들은 바로는 蘇聯은 4個國 信託에 동의하였으나 아직도 詳細한 것은 合意된 바 없습니다. 스탈린은 外國軍隊의 韓國駐屯이 없기를 促求한다고 本職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本職의 情報로는 蘇聯은 이미 1, 2個 韓國人 師團을 訓練完了하였는데 이 兵力을 韓國에서 使用할 것으로 推測됩니다.

만일 國際信託統治가 韓國에 실시되지 않거나 또는 실시되어라도 이

를 韓国人師團은 아마 支配力을 획득하여 獨立政府이기 보다는 오히려 蘇聯支配하의 地方政府가 될 政權의 수립에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이는 바로 極東에 옮겨놓은 폴란드問題입니다. 本職의 제안은 信託統治案의 強力한 추진입니다.

本職은 또한 信託統治期間중에 陸軍 또는 海兵의 최소한의 상징적 兵力을 韓國에 駐屯시킬 것을 제안합니다』<sup>37)</sup>

그러나 막상 포츠담會談에서는 지금까지 간행된 關係記錄으로 보는 한 韓國信託統治問題는 巨頭會談에서나 外相會談에서 따로 토의된 것 같지 않다. 會談後에 작성된 美国쪽의 討議內容要約에는 『韓國信託統治問題는 蘇聯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나 討議되지 않았다』<sup>38)</sup>고 적고 있다. 美国쪽은 앞에서 본 해리만特使의 交渉으로 4個國 信託統治가 확정된 것으로 인식했고, 또 이 무렵에는 폴란드事態등에서 드러난 蘇聯의 政治的企圖에 대한 경계심이 팽배하여 對日戰終結에는 蘇聯의 參戰이 必要不可欠한 것은 아니라는 判斷을 하고 있었는데, 포츠담會談중에 있었던 원자탄 實驗의 成功은 美国으로 하여금 對蘇交渉에서 단호한 態度를 취하게 했었다. 3國의 參謀長會談에서 蘇聯의 안토노프赤軍參謀總長이 蘇聯軍의 作戰에 対応한 美軍의 韓半島沿岸作戰의 可能性을 물었을 때에, 마셜將軍은 兵站상의 이유를 들어 『이러한 陸海空作戰은 아직 계획된 바 없으며, 특히 가까운 장래에는 없을 것이다』고 말하여 上陸作戰의 可能性을 부인했으나<sup>39)</sup>, 그런 다음 마셜將軍이 會談중 作戰部長 힐中將에게 美軍의 韓國進攻計劃을 준비하라고 명령한 것<sup>40)</sup>도 그러한 認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參謀長會談에서는 美·蘇兩軍의 作戰上의 混亂을 피하기 위한 空軍과 海軍의 作戰區域設定에 대해서는 합

의를 보았으나 韓半島의 內陸部에서의 作戰区域에 대한 討議나 그것과 당연히 결부되는 分割占領도 對日戰의 終結段階에 이르기까지 美國으로서 는 구체적인 計劃을 확정하지 않고 있었다.

7月 26日에 발표된 포츠담 宣言은 제 8항에서 『카이로 宣言의 条項은 이행될 것이며 또 日本의 主權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国과 우리가 결정하는 諸小島嶼에 국한될 것이다』고 천명하여 韓國問題에 대한 聯合國의 基本政策이 再確認되었는데, 蘇聯을 통하여 韓國의 繼續支配등을 조건으로 한 終戰交渉을 벌이고 있던 日本은 포츠담 宣言이 발표되자 이를 「黙殺」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広島(8月 6日)에 이어 長崎(8月 9日)에 原子彈이 投下되고 또 8일의 宣戰布告와 동시에 蘇聯軍이 滿州의 要地에 대하여 일제히 攻撃을 개시하자. 10日에 美·英·蘇 3國에 “포츠담” 宣言의 수락을 打電하여 大戰은 終幕을 내리게 되었다.

#### 마. 38度線의 劃定

日本이 포츠담 宣言을 受諾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트루만은 11일에 맥아더 將軍을 駐日本 聯合軍 最高司令官으로 임명할 것을 聯合國에 통고하여 14일까지 蘇·英·中의 동의를 받았는데, 美·蘇兩軍에 의한 韓國의 分割占領이 공표되는 것은 9月 2日에 발표된 聯合軍 最高司令官의 一般命令 제 1호에서였다. 주지하다시피 이 一般命令 제 1호에서 38度線以北의 日軍은 蘇聯軍에 降伏하고 그 以南의 日軍은 美軍에 降伏하라고 한 것인데, 運命의 分斷線이 된 38度線이 어떻게 劃定되었느냐에 대해서는 國際政治에서의 大國主義의 責任問題와 관련하여 國內外에서 論難이 많았으나<sup>41)</sup>



38度線에 의한 美·蘇兩軍의 分割占領案 자체는 8월 12일에서 14일 사이에 美3省調整委員會에서 황급히 作成된 것임에 틀림없다. 물론 美國政府는 38度線이 단순히 日軍의 降伏接受를 美·蘇가 분담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였음을 강조함으로써 分斷의 責任을 蘇聯쪽에 전가시키고 분담접수안 자체도 蘇聯軍에 의한 單獨占領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蘇聯과의 妥協如何에 따라서는 分斷이 고정될 위험성은 豫測할 수 있는 일이었다.

韓半島는 美·蘇兩軍이 공동으로 占領해야 한다는 생각은 對日占領政策案이 완성되는 1945년 6월경에 이미 美國政府의 基本方針으로 굳어져 있었다. 6월 28일에 작성된 合同參謀本部內의 合同戰爭計劃委員會 政策文書는 蘇聯軍이 사할린 이외에 千島, 滿州를 점령하고 나아가 華北地方에도 進駐할 可能性이 있음을 지적하고, 또 東南아시아 및 西南太平洋地域에서는 英國軍이 日軍의 降伏을 접수하고 軍政을 실시하며, 中國軍은 中國本土의 대부분의 地域에서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美軍은 日本本土 이외에 太平洋의 旧委任統治領, 韓國 및 台灣을 占領하게 될 것이라고 想定했다. 이중 太平洋諸島에서는 美國만이 「支配的役割」을 하고 韓半島占領은 美·蘇兩軍이 주축이 된다고 보았다.<sup>42)</sup>

또한 당시에 美國의 對蘇外交의 第一線에 있었던 해리만이나 賠償問題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모스크바에 파견되어 있던 폴리大使등은 美軍의 占領地域을 北上시킬 것을 本國政府에 건의했다. 蘇聯의 非協調에 대한 對備策으로 폴리는 『南端으로부터 시작하여 北쪽으로 進軍하면서 韓國 및 滿州의 工業地帶를 될 수 있는대로 많이 그리고 속히 占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해리만은 『美軍을 大連 및 韓國에 上陸시켜 적어도 關東半島와 韓國內 日本軍의 降伏을 접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43)</sup>

이들 現地意見을 反映하여 번즈國務長官도 美國이 될 수 있는대로 北쪽으로 올라가 日本軍의 降伏을 접수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韓國에서 가장 가까운 美軍의 位置는 沖繩로서 軍部는 거리와 人員不足을 들어 38度線조차도 만일 蘇聯이 同意하지 않기로 決定한다면 美軍이 도달하기에 너무 멀다는 의견이었다. 또 合同參謀本部는 번즈長官에게, 釜山에서 교두보만 확보해 두면 韓半島에 대한 蘇聯과의 競争에 지장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sup>44)</sup>

그런데 3省調整委員會에서 38度線에 의한 美·蘇兩軍의 分割占領案이 立案되어 確定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立案者의 한사람이었던 딘 러스크는 뒷날 다음과 같이 述懷했다.

『日本의 降伏이 돌연히 이루어졌으므로 國務省과 軍은 日本의 降伏에 관하여 맥아더將軍에게 통달할 필요한 命令과 다른 聯合國들과 공동으로 취해야 할 措置에 대하여 긴급히 檢討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위해 3省調整委員會는 8月10日부터 15日 사이에 몇 차례에 걸쳐 長時間의 會議을 열었다. 8月10日밤의 會議은 陸軍省의 매클로이次官補 집무실에서 거의 徹夜로 統行되었다. 國務省은 (번즈長官을 통하여) 美軍이 될 수 있는대로 北上하여 降伏을 접수하도록 제의했다. 그러나 軍은 즉시로 動員可能한 兵力이 부족하고 蘇聯이 進入하기 전에 北上하는 것이 時間的으로나 距離上으로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

軍의 見解는, 만일 우리의 軍事能力을 훨씬 넘는 범위의 降伏接受를 제안한다면 蘇聯이 그것을 受諾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스피드가 문제의 核心이었다. 매클로이次官補는 보스틸大領과 나에게 열방에 가서 軍隊를 될 수 있는대로 北上시켜 日本의 降伏



을 접수하고자 하는 政治的希望과 美軍이 韓國에 도달할 수 있는 能力的 制限을 檢査한 案을 작성하도록 要請했다.

우리는 만일 蘇聯이 受諾하지 않는 경우 美軍이 進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美國의 責任地域 속에 首都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8度線을 제 의했다. 38度線은 陸軍이 國務省에 제의한 案의 일부가 되었고 뒤 이어 國際적으로 同意를 얻었다. 나는 당시의 우리 軍의 위치를 고려할 때에 蘇聯은 훨씬 南쪽을 주장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蘇聯이 38度線을 受諾한 것에 대하여 다소 놀랐었다』<sup>45)</sup>

이렇게 하여 3省調整委員會에서 立案된 一般命令 第1호 초안은 12일부터 14일 사이에 參謀總長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檢討된 다음 杜魯만大 統領의 裁可를 받아 15일에 마닐라에 있던 맥아더와 英·蘇政府에 통달 되었다. 蘇聯은 이에 대한 16일자 會談에서 千島列島를 蘇聯이 占領할 것과 日本占領에 蘇聯軍도 參加할 것을 제의해 왔으나 38度線에 의한 韓國의 分割占領案에는 아무런 異議가 없었다.<sup>46)</sup>

軍事的으로 유리한 狀況에 있던 蘇聯이 왜 38度線에 의한 分割占領 案에 反對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公刊資料가 불충분하여 38度線問題 에 대한 蘇聯쪽의 記錄은 公刊된 것이 없다. 推論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6일자 會談에서 보듯이 日本占領에 參加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蘇聯軍의 北海道占領提議를 杜루 만이 거부하자 스탈린은 18일자 電報에서 크게 不滿을 표시했다. 다음 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韓國問題에 대한 한층 깊은 戰略的配慮에서 佛蘭드問題와 賠償問題등 여러가지 戰後處理問題로 美國과 意見이 對立되

고 있는 점에 비추어 美國의 警戒心을 완화하면서 우선 自國과의 接統  
地域에 在 러시아 韓人 共產主義者들을 앞세워 이른바 「民主基地」를 설정해  
놓고 未久에 실시될 信託統治를 통하여 全韓國에 「友好」政權이 수립되  
게 하려 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蘇聯은 적어도 對日戰에서는 치른 것에 비하여 큰  
戰利品을 획득했는데, 韓國의 分割占領도 그 중요한 것의 하나였다. 그  
리고 그 分割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美國의 提案과 "이니셔티브"  
에 의한 것이었다.

註

- 1) 1941년 1월의 年頭敎書에서 말한 것으로, 첫째 言論 및 表現의 自由, 둘째 信敎의 自由, 셋째 「모든 國民에게 건전하고 평화로운 生活을 보장하는」 欠乏으로부터의 自由, 넷째 「철저한 軍縮이나 突力行事に 의한 侵略을 금하는」 恐怖로부터의 自由를 들었다.
- 2) 1940년부터 루즈벨트가 死亡하기까지 두사람사이의 交通은 1,700건에 이르고 직접 만남 會談만도 8회나 된다.  
William M. McNeill, America, Britain and Russia: Their Co-operation and Conflict 1941-1946, 1953. rep.1970, p.19.
- 3) 通商과 原料供給의 自由는 大西洋憲章 제4항에도 포함되어 있고, 武器貸与法(정식명칭은 「合衆國防衛促進法」)에 따라 各國과 맺은 武器貸与協定 제7조에도 自由通商을 규정하고 있다.
- 4) Eleanor Roosevelt, This I Remember, 1945, p.36.
- 5) 가령 1945년 4월에 이르러서도 처칠은 駐中·美大使 헐레이에게 香港反還問題에 대하여 「英國은 大西洋憲章에 구속되지 않는다. 香港을 英帝國으로부터 奪으려거든 내 시체를 밟고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Anthony Kubek, How the Far East was Lost: American Policy and the Creation of Communist China 1941-1945, 1963. p.160.
- 6)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以下 FR로 略) 1942, Vol.I, p.858.
- 7) 重慶의 臨時政府와 직접적인 關係가 끊긴 채 하와이에 머물던 李承晩은 39년 4월에 워싱턴으로 돌아가 Chairman of the Korean



Commission in Washington"의 이름으로 外交活動을 재개하고 있었는데, 臨時政府는 41년 6월에 이르러 그를 「駐美外交委員部 委員長」으로 임명했다. 孫世一著 『李承晩과 金九』 1970, pp.122-

131 参照

- 8) Edgar Snow, Journey To the Beginning, 1958, p.256.
- 9)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February 28, 1942, p.183.
- 10) P.Document 118, Oct.12, 1942 / Notterpapers, State Department Documents.
- 11) 루즈벨트의 特別補佐官 해리 홉킨스가 작성한 宣言文의 草案에는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로 되어 있던 것을 루즈벨트가 "at the proper moment"로 바꾸었고, 그것을 다시 처칠이 같은 뜻의 "in due course"로 수정한 것은 널리 알려진 대로다. FR : Conference at Cairo and Teheran 1943, 1961, pp.401 - 403.
- 12) FR : 1943. Vol. III. p.37 그런데 이든은 이 會談에서 루즈벨트는 韓國과 인도차이나를 國際信託統治 (international trusteeship)에 附加하고, 信託統治構成國은 美·蘇·中으로 할 것은 제외했다고 적고 있다. Anthony Eden, Memoirs: The Reckoning, 1965, p. 378.
- 13) 『蔣介石秘錄 (14), 日本降伏』(日訳版), 1977, p.58.
- 14) FR: China, 1943, p.135.
- 15) FR: 1945, Conferences at Cairo and Teheran 1943, p.325.
- 16) ibid., p.334.
- 17) ibid., p.257.

- 18) *ibid.*, p.389.
- 19) 前掲『蔣介石秘録』 p.126.
- 20) Soon Sung Cho. *Korea in World Politics 1940-1950*, 1967, p.18.
- 21) *Conferences at Cairo and Teheran*, p.485. 및 E.R.Stettinius Jr, *Roosevelt and the Russians*, 1949, p.238. 그러나 公刊된 會談記錄에는 韓國問題에 對한 구체적인 言及은 보이지 않는다.
- 22) *ibid.*, p.566.
- 23) *ibid.*, p.869. 루즈벨트의 急死로 大統領職을 承繼한 트루만도 『테헤란에서 루즈벨트와 스탈린의 會談에서 韓國의 장래 문제가 토의되었다. 스탈린은 ..... 한국이 完全독립을 달성하기 까지는 얼마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그 기간은 40년 가량이 적당하다는 것에도 동의했다』고 적고 있다. (트루만著, 孫世一訳 『트루만 回顧錄(下)』 1968, p.295)
- 24) 入江昭, 『日米戦争』, 1978, p.184.
- 25) *FR.1944*, Vol. V, pp.1239-1242.
- 26) *FR.Conferences of at Malta and Yalta 1945*, 1955, pp.358 - 361.
- 27) *ibid.*, p.770.
- 28) The Department of Defence, *The Entry of the Soviet Union into the War Against Japan: Military Plans, 1941-1945*, 1955, p.71.
- 29) *FR: Conferences of Berlin (Potsdam) 1945*, vol.I, p.47



- 30) 이 회談에서 홉킨스는 信託統治期間은 未定인데, 25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일 수도 있겠으나 확실히 5년 또는 10년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스탈린은 4個國 信託統治가 요망되는 점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ibid.*, p.47.
- 31) FR: 1945, vol.VI, pp.556-580.
- 32) FR: Conferences of Berlin ( Potsdam ) 1945, vol.I, pp.311-313.
- 33) *ibid.*, p.314.
- 34) U.S.Congress, Background Information on Korea, House Report No.2495,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1950, pp.2-3.
- 35) Conferences of Potsdam *op.cit.*, pp.924-926.
- 36) *ibid.*, pp.926-927.
- 37) *ibid.*, vol.II, p.631.
- 38) *ibid.*, p.606.
- 39) *ibid.*, p.348.
- 40) Ray E.Appleman, United State Army in Korean War, 1961, pp.2-3.
- 41) 論者중에는 38度線이 포츠담會談중에 결정되었다고 하는 이들이 있다. 당시 美國務省의 韓國課長이었던 조지 매컨은 그의 著 "Korea Today" (1950)에서 『포츠담의 한 決定에 따라 蘇聯軍은 38度線以北의 日軍降伏을, 美軍은 以南降伏을 접수하도록 決定되었다』고 했는데, 이보다 앞서 발표한 "Korea The First Year of Liberation" (Pacific Affairs, January 1947)라는 글에서는 『알타의 參謀會

議에서 北韓은 蘇聯의 作戰地區로, 南韓은 美國地區로 확정되었다.

5 개월 뒤에 포츠담會談에서 이 一般諒解 (general understanding) 는 參謀長들 사이에서 公式化되었는데, 鴨綠江과 大韓海峽의 거의 정확한 半分線인 38 度線이 分割線으로 채택되었다. 몇 주일 뒤에 日本이 降伏하자 38 度線은 그 以北의 日軍은 蘇聯軍에, 以南의 日軍은 美軍에 降伏하는 線으로 正해졌다』고 했었다. 또한 W.H. 맥네일도 그의 著 'America, Britain and Russia: Their Cooperation and Conflict 1941-1946' (1953) 에서 38 度線에 의한 美·蘇의 分割占領이 결정된 것은 포츠담會談에서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美國政府가 公刊한 포츠담會談記錄에는 그러한 記述이 없다. 李用熙 교수는 「三八線劃定新攷 - 蘇聯對日參戰史에 沿하여」에서 『포츠담會談終了前에 이미 美參謀本部는 降伏接受節次를 討議 決定하였거나, 討議開始하였거나, 또 혹은 討議準備가 完了되었다고 推測된다』고 하고 蘇聯과의 合意与否에 대해서는 結論을 留保했다. 한편 레이 E. 아펠만은 'United State Army in Korean War' (1961) 에서 포츠담會談중의 諜計劃에 言及하여 『諜將軍과 麾下의 作戰參謀들은 美蘇兩軍간의 陸軍分界線을 그을 장소를 결정하려고 韓國地圖를 연구하였다. .... 軍事作戰家에 의하여 포츠담에서 그어진 서울北方의 이 線은 38 度線 그대로는 아니었으나 그에 가까운 것이었으며 대체로 그에 沿해 있었다. 그러나 美·蘇代表는 포츠담軍事會談중에 分割線을 제시하여 討議하지는 않았었다』고 적고 있다.

42) JWPC 375 / 2 , June 28, JSC Papers.

43) 前掲『트루만 回顧錄(上)』, p.434.

44) *ibid.*, 443.

45) FR: 1945, vol.VI. p.1039.

46) 一般命令 제 2호 草案에는 千島列島에 대한 占領에 대해서는 明記되지 않았는데, 러스크는 1978년 9월 5일 위 筆者와의 面談에서 경황중에 作成된 것이라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하필 38度線을 택한 것이 1890年代의 帝政러시아와 日本간의 外交交渉에서 韓半島에 대한 勢力分界線으로 擧論된 것에서 示唆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 그러한 歷史的事實을 전혀 몰랐으며 알았더라면 38度線이 아닌 線을 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 美·蘇의 分割占領과 初期占領政策

### 가. 解放直後の 国内政治情勢

解放當時의 国内의 중요한 政治勢力은 대체로 1) 宋鎮禹를 중심으로 한 右派民族主義勢力 2) 安在鴻등의 온건파 民族主義者들 3) 呂運亨을 중심으로 한 온건左派내지 左傾的民族主義勢力 4) 朴憲永을 중심으로 한 共產主義勢力등이었다. 8월 10일에 이미 포츠담宣言의 受諾을 알고 있었고 또 蘇聯軍의 淸津上陸을 보고 받고 있던 總督府의 日本人들은 終戰과 同時에 蘇聯軍이 서울에 進주하여 共產政權을 수립할 可能性이 있다고 판단하고,<sup>47)</sup> 宋鎮禹, 呂運亨, 安在鴻등을 차례로 만나 治安維持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중 宋鎮禹는 日本人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呂運亨과 安在鴻은 이를 受諾했는데, 오랜 日帝의 压制에서 벗어나 獨立政府의 수립이라는 民族的인 課題를 두고 처음부터 이들 国内政治勢力들의 態度에 이처럼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以後의 民族分裂의 중요한 原因이 되었다.

이들의 對立은 勢力基盤과 장래의 獨立政府樹立節次에 대한 다음과 같은 意見差異에 기인한 것이었다.

[宋] 1) 倭政이 완전히 철폐될 때까지 그대로 참고 있어야 한다.

總督府가 聯合軍에게 政權을 引渡하기 전까지는 獨立政權을 許하지 않으므로 敵과 鬪爭할 수 없는 것이다.

2) 重慶에 있는 臨時政府를 正統政府로 환영 추대해야 한다.

[呂] 1) 日帝는 이미 無條件降伏이 결정되었으므로 朝鮮民族이 自主自衛的으로 당면의 保安民生問題를 위시하여 主權確立에 매진해

야 한다.

2) 国内에서 敵과 抗争하던 人民大衆의 革命力量을 중심으로 内外 革命团体를 총망라하여 獨立政府를 세워야 한다. 48)

日本人들의 요청을 受諾한 呂運亨과 安在鴻은 解放 다음날인 8월 16일에 朝鮮建國準備委員會(委員長=呂運亨, 副委員長=安在鴻)<sup>49)</sup>의 결성을 발표했다. 安在鴻은 뒷날 자신이 建準에 참여했던 것은 1) 日帝의 崩壞 및 퇴각에 즈음하여 朝鮮人の 民族的自重으로서 日本에 의한 流血을 방지하고 2) 기존의 施設 器具 機械 資材 資本 計劃文書등까지를 완전히 보관, 관리하여 獨立政府에 인계 활용하게 하며 3) 그 獨立政府는 重慶의 臨時政府가 海外에 있는 獨立運動의 正統的指導機關이므로 革命勢力으로서 補強擴充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고 슬회했다.<sup>50)</sup> (그런데 建準이 共產主義者들의 주장대로 운영되어 나가자 그는 2주일 뒤인 9월 4일에 建準을 脫退하고 말았다)

建準은 解放의 感激과 一般國民들의 獨立政府樹立에 대한 열광적인 期待를 배경으로 各地方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治安隊 保安隊등의 治安維持团体들을 建準支部로 吸收하거나 그러한 团体가 없는 地方에는 支部를 새로 設置하면서 全國的인 基盤을 급속히 構築해 갔다. 總督府는 17일에 呂運亨에게 『接受는 聯合國에 의하여 이행될 것이므로 建準의 活動은 治安維持協力の 限界에 그치도록』警告하고 建準의 解散을 要求하기까지 했으나 建準은 이를 거부했고<sup>51)</sup>, 또 19일에는 宋鎮禹그룹에서 『政權을 政務總監에게서 받는 형식을 버리고 各界有志를 총망라하여 그 자리에서 公論하여 治安을 유지하는 정도로』하자고 제의했으나 建準은 이 제의도 거부했다.<sup>52)</sup> 그리하여 8월 22일에는 建準中央委員會를 확대하여 11部1局制로 조직을 강화하고 8월 31일까지에는 全國 145개소에 建準



支部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는데, 建準의 性格은 8월 28일에 발표된 宣言과 綱領으로 짐작할 수 있다. 同宣言은 『차계에 우리의 당면임무는 완전한 獨立과 진정한 民主主義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있다. 일시적으로 國際勢力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民主主義的要求를 도와줄지언정 방해는 않을 것이다』고 말하고 建準은 『우리民族을 진정한 民主主義的政權으로 再組織하기 위한 새 國家建設의 準備機關인 동시에 모든 進歩的民主主義的 諸勢力을 집결하기 위하여 各界各層에 완전히 開放된 統一機關이요 결코 혼잡된 協同機關은 아니다. 왜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모든 反民主主義的 反動勢力에 대한 大衆的鬭爭이 요청되는 까닭이다』로 천명했다. 그리고 앞으로 수립해야 할 「強力한 民主主義政權」은 『全國民的人民代表會議에서 선출된 人民委員으로서 構成될 것이며, 그동안 海外에서 朝鮮解放運動에 헌신하여 온 革命鬭士들과 특히 그 指導的인 集結體(重慶臨時政府를 가리킴-筆者)에 대하여는 적당한 方法에 의하여 全心的으로 맞이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다』고 하여 人民委員會制度를 想定하고 臨時政府의 처우에 대해서는 신중한 배려를 하고 있으나 그 正統性은 부인하는 태도였다. 그리고 綱領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었다.

- 1) 우리는 완전한 獨立國家의 建設을 期함.
- 2) 우리는 全民族의 政治的, 經濟的, 社会的 基本을 실현할 수 있는 民主主義 政權의 樹立을 期함.
- 3)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國內秩序를 자주적으로 維持하며 大衆生活의 確保를 期함. 53)

宋鎮禹系勢力이 배제되기는 했으나, 처음에는 建準에 右派人士들도 참가하여 地方에서는 道支部는 右派가 主導하고 郡支部는 左派가 主導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建準의 組織을 통하여 共產主義者들이 勢力을 확장해 가면서 建準의 性格이 위의 「宣言」에서 보듯이 左傾하게 되자 右派人士들은 建準에서 脫退하게 되었다. ( 9월 4일의 擴大執行委員會에서는 脫退한 安在鴻대신에 許憲이 副委員長에 취임했다 )

이러한 狀況속에서 呂運亨, 許憲, 朴憲永등은 建準의 地方組織을 動員하여 美軍이 進駐하기 사흘전인 9월 6일에 서울에서 全國人民代表者大會를 개최했다. 同會議는 呂運亨의 제의에 따라 「民主主義的 人民의 政府」를 즉시 수립할 것을 決議한 다음 國號를 「朝鮮人民共和國」으로 하는 政府 臨時組織法案을 채택하고 人民委員 54명, 候補委員 20명, 顧問 12명 및 閣僚名單을 發表했다. 人民委員과 閣僚名單에는 在美중인 李承晩을 主席으로 추대한 것을 비롯하여 金九, 金奎植, 申翼熙, 金元鳳등 在重慶臨時政府要人들 및 金性洙, 曹晚植, 金炳魯, 安在鴻등 國內의 右派指導者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어 一般國民들에게 國內外를 망라한 挙國的인 政府組織인 듯한 印象을 주었으나, 이들과는 事前에 아무런 協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內閣의 副責任者는 거의 共產主義者들로 메꾸어 실질적인 主導權은 共產主義者들이 장악하도록 되어 있었다.<sup>54)</sup> 9월 14일에 中央人民委員會는 宣言, 政綱 및 27개조의 施政方針을 발표했는데, 同施政方針의 主要内容은 日本帝國主義法律制度의 즉시 폐기, 土地改革, 重要産業의 國有化, 勞動法令의 실시, 生活必需品의 配給制, 義務教育制의 實施, 社會保險制度의 실시, 國家公安隊와 國防軍의 즉시 편성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人共의 急造는 重慶臨時政府의 正統性을 부인함으로써 臨時政府뿐만 아니라 宋鎮禹등의 右派勢力을 전제하고 ( 임의로 發表된 人民委員이나 閣僚名單에 宋鎮禹의 이름은 제외되어 있다 ) 곧 進駐할 美軍에 대하여 國內政權機關의 存在를 기정사실로 인정시키기 위함이었다.

人共의 발표와 더불어 各種의 地方組織은 人民委員會로 改稱되고 10월까지에는 7道, 12市, 131郡에 人民委員會가 組織되고<sup>55)</sup>, 建準은 사명을 다했다면서 10월 7일에 解体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美軍의 進駐와 臨時政府의 還國을 기다리면서 觀望的인 態度였던 右派勢力은 呂運亨과 朴憲永등의 주동으로 人共의 수립이 발표되기에 이르자 積極적인 反對運動을 전개했다. 이들중에는 8월 하순부터 朝鮮民族黨(金炳魯, 白寬洙, 元世勳, 趙炳玉, 李仁등) 또는 韓國國民黨(白南薰, 金度演, 許政, 張德秀, 尹致暎, 尹潛善등)을 각각 發起하고 있었으나 그 중심인물인 宋鎮禹는 政黨結成에 그다지 積極적이지 않고 汎國民的으로 臨時政府를 추대할 國民大會準備會를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左翼勢力이 人共을 급조하기에 이르자 이들은 9월 4일의 合同發起會를 거쳐 7일에는 國民大會準備委員會를 결성하고 『우리 獨立運動의 結晶体이요 現下 國際的으로 승인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에 소위 民權을 僭稱하는 일체의 團體 및 그 行動은 어떤 종류를 불구하고 이것을 단호히 排擊함』이라는 決議文을 채택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長文의 聲明書를 發表하여 「人民共和國打倒」를 宣言했다. 이들 國民大會準備會勢力은 美軍이 進駐한 뒤인 9월 16일에 서울에서 韓國民主黨을 결성했는데, 『重慶의 大韓臨時政府는 光復 벽두의 우리政府로서 마지하려 한다』는 宣言과 함께 채택된 綱領과 政策의 主要内容은 民主主義의 政體樹立, 教育 및 保健의 機會均等, 重工業主義의 經濟政策, 重要産業의 國營 또는 統制管理, 土地制度의 合理的再編成, 國防軍의 創設등이었다.<sup>56)</sup> 그런데 대표적인 保守勢力인 韓民黨이 이러한 綱領과 政策을 표방한 것은 그 당시의 一般國民들의 政治的 및 經濟的 要求가 어떤 것이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또한 建準을 脫退한 安在鴻 一派는 9월 1일에 朝鮮国民党을 結성했다  
가 25일에 社会民主党, 自由党, 共和党, 權友同盟등의 群小政党을 吸收하  
여 国民党으로 改編했는데, 이들은 宣言과 綱領에서 「国民皆勞와 大衆共  
生」을 理念으로 하는 「新民族主義」의 추구를 표방했다.<sup>57)</sup>

그동안 共產主義者들은 8월 16일에 발족한 李英, 崔益翰등 旧서울派 그  
룹의 長安洞共產党과 8월 20일에 朴憲永이 旧火曜派를 중심으로 조직한  
朝鮮共產党再建準備委員會로 分열되어 主導權競争 및 路線規定등에서 서로  
반목하다가 9월 12일에 이르러 朴憲永의 주도로 再建派가 長安派를 吸  
收하여 朝鮮共產党으로 통합되었는데 처음 長安派共產党은 「人共」에 대  
해서도 그 組織經緯의 不当性を 이유로 否定的인 태도였다.

그런데 이 무렵의 共產党的 狀況判断과 活動方針은 朴憲永이 작성한 8  
월 25일의 「一般政治路線에 대한 決定」(이른바 「8월 테에제」), 그것  
을 약간 보완한 9월 25일의 「現情勢와 우리의 任務 - 政治路線에 대한  
決定(暫定的) -」, 10월 30일의 「朝鮮共產党的 主張과 民族統一戰線의  
原則」등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朴憲永은 朝鮮革命의 現단계는 「부  
르조아民主主義革命」의 단계이므로 勞動者, 農民, 都市小市民, 일텔리겐차 등  
에 의한 民族統一戰線으로 人民政府를 수립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주장  
했다. 이러한 論理에서 現단계가 「프로레타리아 革命」의 단계라고 규  
정하고 「社会主義制度建設」을 주장한 長安派의 이론은 「極左偏向」이라  
고 비판되었다. 그러나 朴憲永이 주장한 「부르조아民主主義」란 西歐歷  
史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부르조아民主主義로 指稱하는 것은 아니었음은,  
가령 앞서 든 「現情勢와 우리의 任務」에서, 「地主와 大資家들의 독재  
하에 그들의 利益을 擁護尊重하는 政權」의 수립을 기도하는 「反動的  
民族부르조아지 - 宋鎮禹와 金性洙를 중심한 韓国民主党」을 비판하면서 그



들은 『 美国式의 데모크라시의 社会制度建設을 最高理想으로 삼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朴憲永의 이러한 路線은 北韓에 진주한 蘇聯軍의 初期占領政策과도 기본적으로 일치되는 것이었다.

朴憲永의 이러한 指針에 따라 共產主義者들은 建準에 적극 참여했고, 人共이 성립되자 人民委員會組織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勢力을 확장해 갔다.

呂運亨一派의 中心勢力은 日帝末期에 조직된 建國同盟이었는데, 이들은 美軍政當局이 人共을 정식으로 否定한 뒤인 10월 21일에 이르러 高麗 國民同盟, 人民同志會 등의 團體를 吸收하여 그 綱領이나 政策은 人共의 그것과 비슷한 것이었다.<sup>59)</sup>

#### 나. 蘇聯軍의 初期占領政策

對日宣戰布告와 동시에 羅津港과 雄基港에 蘇聯機의 폭격이 시작되고, 蘇聯軍 上陸部隊는 10일에 雄基를 占領한데 이어 13일에는 淸津에 上陸했다. 淸津上陸 때에는 日本軍과의 사이에 다소 激烈한 戰鬥이 있었으나 그 이후로는 이미 日本天皇의 降伏放送이 있던 뒤였으므로 日本軍의 저항은 없었다.

蘇聯軍이 平壤에 진주한 것은 8월 24일(本部隊의 진주는 26일)이었다. 그동안 平壤에는 8월 17일에 曹晩植을 중심으로 平安南道建國準備委員會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고 이들과는 별도로 平南地區朝鮮共產黨도 조직되어 있었다.<sup>60)</sup>

그런데 北韓에 進駐한 蘇聯軍의 初期占領政策은, 蘇聯의 基本文書들이

아직도 公開되지 않고 있어 당시에 발표된 몇가지 정책문서와 실제의 施政을 통하여 살펴 볼 수 밖에 없다. 平壤에 진주한 蘇聯軍은 25일에 日本人道知事の 交渉으로 『日本官憲은 종래대로 行政을 맡는다. 治安維持는 蘇·日共同으로 행하며, 식량 및 그밖의 物資의 配給은 확보한다. 日本人을 박해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요지의 布告를 내었으나 이튿날 日本軍의 武装解除에 관한 協定과 동시에 치스차코프司令官은 曹晩植, 玄俊赫, 旧日本人道知事, 日本人警務部長등이 合同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표했다.

- 『 1) 日本軍隊는 日本天皇의 命令에 따라 降伏하였으므로 26일 오후 8시를 기하여 平安南道の 日本政府는 消滅되고, 曹晩植을 委員長으로 하는 平安南道人民政治委員會에 政權이 인계된다. 放送, 通信, 電話, 鐵道, 工場, 銀行의 各機關은 즉시 人民政治委員會에 접수된다.
- 2) 모든 日本人官吏는 退官한다. …… 日本人 가운데에서 技術者 및 蘇聯人이 할 수 없는 技能을 가진 者는 現狀을 維持한다. …… 日本人의 居留, 就職은 新政權이 결정한다.
- 3) 日本軍은 전원 포로로 처우한다.
- 4) 食糧配給은 종래대로 행하며, 日本人에게 減配하지는 않는다.
- 5) 日本人과 朝鮮人은 사이 좋게 提携한다. 만일 문제가 발생하면 蘇聯軍에 申告할 것.
- 6) 勞務者의 파업은 금지한다.
- 7) 民間所持銃器는 전부 압수한다. 다만 칼은 제외한다.
- 8) 新政權이 各道에서 成立한 다음에 統一政府를 만든다. 다만 新政府의 所在地는 서울에 한하지 않는다. 北緯38度線은 美·蘇

兩軍進駐의 境界일 뿐으로 政治的意味는 없다』<sup>61)</sup>

이렇게 하여 이튿날 平南道政은 人民政治委員會로 이양되었다. 이처럼 蘇聯軍은 형식상 直接施政이 아닌 韓人行政機關을 통한 間接施政의 방법을 택했는데, 그것은 一般國民들에게 信望받는 曹晩植 등의 右翼陣營人士들을 내세우지 않고는 그들의 基本政策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韓人行政機關은 2次大戰 이후의 東유럽諸國에서 보듯이, 이른바 人民民主主義의 第一段階인 聯立政權의 형식에 의한 것임은 平南政治人民委員會의 人員構成으로도 알 수 있다.<sup>62)</sup>

이러한 韓人行政機關은 9월말까지 北韓의 全地域에 걸쳐 성립되었는데 (咸北은 10월 26일)<sup>63)</sup>, 이들 機關은 各道 및 市郡에 배속된 蘇聯軍警務司令官으로부터 共產黨構成員들을 통하여 필요한 指示를 받고 있었고 또한 그들의 監視下에 있었다. 그리고 이들 警務司令官들을 統括하는 것은 平壤에 있는 世稱「로마넝크司令部」<sup>64)</sup>였다.

이러한 行政體系의 개편을 통하여 추진하고자한 蘇聯의 基本政策은 全韓半島에 걸친 親蘇政權의 樹立이었음은 앞의 치스차코프의 談話에서도 명백히 볼 수 있다. 곧 各道에 成立된 新政權이란 人民委員會를 뜻하는 것이며 그 토대위에 「統一된 政府」를 만드는데 38度線이 政治的意味가 없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新政府의 所在地는 반드시 서울에 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基本政策아래 추진된 初期占領政策은 進駐와 더불어 발표한 「“치스차코프” 司令官의 布告」, 蘇聯軍政治幹部 “크루치로프”가 9월 22일에 발표한 「人民政府樹立에 관한 一般政策」, 10월 12일에 발표된 「北朝鮮駐屯 蘇聯第25軍司令官의 聲明書」 및 蘇聯軍의 주도로 10월 10일부터 3일동안 비밀리에 열린 北朝鮮五道責任者 및 熱誠者聯合大會의

會議錄 및 諸決定書등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치스차코프’ 司令官의 布告는 『朝鮮人民들이여! 蘇聯軍隊와 同盟國軍隊들은 朝鮮에서 日本 掠奪者들을 驅逐하였다. 朝鮮은 自由國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新朝鮮歷史의 첫 페이지가 될 뿐이다. . . . 왜놈들이 高台広室에서 好衣好食하며 朝鮮사람들을 滅視하며 朝鮮의 風俗과 文化를 모욕한 것은 당신들이 잘 안다. 이러한 奴隸的過去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 . . 朝鮮사람들이여! 기억하라! 幸福은 당신들의 手中에 있다. 당신들은 自由와 獨立을 구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당신들의 것이 되었다. 蘇聯軍隊는 朝鮮人民이 自由롭게 創作的勢力에 착수할만한 모든 조건을 지어주었다』라고 하여 蘇聯軍의 공로를 강조함과 同時에 또한 韓國人을 日本으로부터 분리된 解放民族으로 대우한다는 태도로 명백히 한 다음, 企業經營者들과 勞動者들에게 다음과 같은 고무적인 언사로 正常操業을 계속할 것을 促求했다.

『工場, 製造所 및 工作所主人들과 商業家 또는 企業家들이여! 왜놈들이 破壞한 工場과 製造所를 회복시켜라! 새 生産企業체를 開始하라! 蘇聯軍隊司令部는 모든 朝鮮企業所들의 財産保護를 담보하며, 그 企業所들의 正常的 作業을 보장함에 백방으로 援助할 것이다.

朝鮮勞動者들이여! 勞力에서의 英雄心과 創作的努力을 發揮하라! 朝鮮사람의 훌륭한 民族性중의 하나인 勞力에 대한 愛着心을 發揮하라! 진정한 事業으로써 朝鮮의 經濟的 및 文化的 發展에 대하여 顧慮하는 者라야만 母國朝鮮의 愛國者가 되며 충실한 朝鮮사람이 된다』<sup>65)</sup>

이처럼 치스차코프의 布告는 韓國의 解放이 「蘇聯軍隊와 同盟國軍隊들」에 의한 것이라고 함으로써 聯合國의 同盟關係를 일단 전제하면서도 蘇



聯軍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시키고, 또 日本勢力의 일소와 아울러 資本家層과 勞動者層을 莫論한 자발적인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全階層에 걸친 對蘇信賴感을 造成시키고자 한 것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 치스차코프의 布告는 後述하는 바와 같은 맥아더의 布告와는 너무나 對照的인 것이었다.

쿠르치로프<sup>66)</sup>의 「一般政策」은 현재까지 알려진 文獻으로는 韓人行政機關이나 共産黨의 決定書, 綱領 등의 형식을 통하지 않은 거의 唯一한 蘇聯軍의 政策文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 1) 朝鮮은 完全獨立國이 되어야 하고 그 政府는 非日本的인 各階層이 포함되어야 한다. 蘇聯은 勞動者 農民의 政權樹立을 주장하며 이를 美·英·中에 제의할 것이다.
- 2) 土地問題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土地는 人口에 比例하여 再分配되어야 한다. 朝鮮人地主의 土地로서 自耕하지 않는 土地 및 日本人의 土地는 몰수하여 政府가 農民들에게 再分配한다.
- 3) 日本人所有工場은 日本的要素를 완전히 除去하여 工場勞動者와 技術者에 의하여 관리하게 한다. 技術分野에서 日本人이 필요한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利用할 것이나, 朝鮮人技術者를 시급히 訓練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朝鮮人의 中小企業은 허용되나, 人民委員會의 감독하에 두어야 한다. 商品生産의 확대는 급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 4) 1945년의 農産物은 일체 日本으로 반출하지 않는다. 日本人所有 農産物은 人民委員會에 이관시켜 人民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긴급목적에 사용하게 한다. 蘇聯軍이 진주하는 동안 얼마간의 食糧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 農民들에 대한 稅金은 4個國委員會執行

部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비율은 以前보다 낮아질 것이다.  
親日的 要素는 철저히 제거한다. ....

5) 個人經營의 技術機關은 허용되나, 특별한 감시하에 두어야 한다.

모든 文化機關, 醫療機關, 教育機關은 國營으로 하고, 勞働者, 農民에게 개방한다.

6) .... 銀行은 즉시 人民委員會管轄下에 두어야 한다. 67)

蘇聯軍의 이러한 占領政策은, 그들의 進駐目的이 韓國에 소비에트秩序를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韓國을 日本으로부터 解放시키는데 있다고 되풀이하여 宣傳한 것과는 달리, 그들의 占領地域에 東유럽 諸國에서와 같이 처음부터 親蘇的인 社會主義體制를 構築하려고 했음을 말해준다. 그것은 日本軍 降伏接授라는 聯合軍司令官의 一般命令第 1 號에서 천명된 占領이 基本目的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으나, 日本勢力의 숙청이나 土地改革問題와 같이 많은 韓國人들이 절실한 당면과제로 생각했던 문제에 대하여 선명한 처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감정적인 現狀維持政策을 기본정책으로 삼았던 南韓의 美軍政에 대한 韓國人의 不滿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蘇聯軍의 이러한 기본방침은 10월 12일에 발표된 「北朝鮮駐屯蘇聯 25 軍司令官의 聲明書」에도 되풀이하여 표명되었다. 곧 同聲明書는 「蘇聯軍隊는 약탈자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北朝鮮으로 들어왔다. 蘇聯軍隊는 朝鮮에 소비에트秩序를 설정하거나 또는 朝鮮地域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지 않는다. 北朝鮮人民의 公私有財産은 蘇聯軍司令部當局의 보호하에 처하여 있다」고 말하고, 다음 5個條의 命令事項을 공포했다.

1) 北朝鮮地域에 日本侵略主義의 殘存들을 영구히 根絶시키며 民主主義

初歩와 公民自由의 鞏固를 자기의 과업으로 내세우는 모든 反日民主主義團體들의 결성과 그들의 활동을 허가함.

2) 北朝鮮勞動大衆에게 自由的職業同盟, 保險会社, 文化啓蒙協會들의 결성권을 줄것.

3) 聖潔(聖堂을 가리킨 듯-筆者)들과 기타 教會들에서 예배하는 것을 禁止할 것.

4) 제 1 조, 제 2 조에서 지적한 反日黨과 民主主義團體들을 자기의 綱領과 規約을 가지고 와서 반드시 地方自治機關과 軍警務司令官에 등록해야 하며 同時에 자기의 指導機關의 人員名簿를 제출할 것.

5) 北朝鮮地域內에 있는 모든 武裝隊를 解散시킬 것. 모든 武器, 彈藥, 軍用物資들을 軍警務司令官에 바칠 것.

平民중에서 社會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臨時道議(委)員會들은 蘇聯軍司令部와 협의하에 지정된 人員數의 保安隊를 조직함을 허가함.<sup>69)</sup>

北韓住民중에 宗敎人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信敎의 自由를 당분간 허용하기로 하면서, 南韓에서와 같이 저마다 政黨 및 社會團體들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政治活動이나 社會活動을 하려는 人士들의 신분을 파악하고, 또 각 지방에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治安을 맡고 있던 武裝隊를 모두 해산시키고, 무기를 몰수하여 人民委員會傘下의 保安隊를 조직하기로 한 것이다.

北韓五道(平南, 平北, 咸南, 咸北, 黃海)에 人民委員會組織이 成立되자 10월 8일에 平壤에서 北朝鮮五道人民委員會聯合會議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平壤에 北朝鮮五道行政局(責任者도 平南人民政治委員長 曹晚植이 兼임)을 설치할 것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성립된 韓人行政機構안에서 蘇聯軍

의 占領政策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것은 蘇聯軍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으며 급작스럽게 組織을 확대해간 共産黨勢力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이를 共産黨組織은 처음 道單位로 「朝鮮共産黨○○地區委員會」의 이름으로 활동하여 解放과 더불어 서울에 再組織된 朝鮮共産黨(朴憲永指導部)의 地方組織임을 자처했다. 그러나 이는 北韓의 各地方共産黨組織이 서울의 朴憲永指導部로부터 실제로 指示를 받고 있었다기 보다는 國際共産主義의 이른바 一國一黨原則의 固定理念에 의해서였을 것이며, 蘇聯軍當局으로서의 黨의 中央이 美軍占領地域안에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10월 10일부터 3일간 平壤에서 北朝鮮五道黨員 熱誠者聯合大會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朝鮮共産黨의 統一組織으로서 「朝鮮共産黨北朝鮮分局」<sup>70)</sup>이 조직되는데, 이 會議가 韓人共産主義者들의 要求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蘇聯軍當局의 主宰에 의한 것이었음은 會議벽두에 國際情勢에 대한 講演을 한 사람이 蘇聯人이었고 吳琪燮 등은 서울中央黨의 指導性을 강조하면서 北韓地域에서의 統一組織을 강력히 반대할 것등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sup>71)</sup> 金日成이 공식으로 등장하는 것도 이 會議에서인데<sup>72)</sup>, 그는 組織問題에 대한 報告를 했다. 會議는 『우리는 금번 世界大戰에 있어서 스탈린元帥의 世界平和와 解放을 위한 참되고 위대한 政策 밑에 指導되는 붉은 軍隊의 英雄的 鬪爭에 의하여 그 모든 유리한 條件 실현되는 朝鮮에 있어서, 더욱 北部朝鮮에 있어서 朴憲永同志의 正當한 路線을 밟아서 五道聯合會議가 열리게 됨에 대하여 全世界無産階級の 祖国인 蘇聯邦 스탈린元帥께 감사드리는 동시에 朝鮮無産階級の 指導者인 朴憲永同志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 . . . 朝鮮共産黨 만세 朝鮮人民共和國 만세. 全世界프로레타리아의 領首 스탈린同志 만세. 朝鮮無産階級領首 朴憲永同志 만세』라는 朴憲永에게 보내는



祝電을 결의하여 金日成을 包含한 모든 會議參加者들이 朴을 共産党的 「領首」로 인정했다.

그러나 金은 『朴동무의 指示 밑에서 우리에게 박두한 問題를 討論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吳琪燮이 1920年代 이래의 共産主義運動에 있어서의 朴憲永의 指導力에 의한 공적을 강조한 것과는 내조적으로 金日成은 과거의 鬪爭이 『非組織的이었고 散漫的이었고 自然發生的이었으며 一方 國際條件이 不利했기 때문에』 그리고 『勞動者의 利益을 代表할 政黨이 없었고 派閥싸움만이 있었고 國際党的 指導와 兄弟党的 援助를 받지 못하고 朝鮮의 그룹은 自由主義的傾向에 빠져 각 그룹이 一体가 되어 黨은 再建할 計劃이었으므로』 失敗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美·蘇兩軍이 分割占領한 狀況에서 『北部朝鮮의 特殊性을 따라 모든 行政 기타 党的 政策을 實現시킴에 있어 더욱 党中央과의 밀접한 指導와 連絡이 요구되는 동시에 五道の 行政上統制를 필요로함에 따라서』 北韓에 「党中央에 직속된 分局」을 설치할 것을 제의한 것이다. 곧 蘇聯軍의 占領이라는 유리한 條件下에서 北韓에서 「民主改革」을 추진하고 이를 全韓國의 改革을 위한 「基地」로 삼아야 한다는 이른바 「民主基地」路線이 천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조직된 北朝鮮分局은 형식적으로는 서울中央党的 下部機關으로 출발했으나, 바로 「民主基地」의 司令部로 전환하여 오히려 서울의 朴憲永指導部에 필요한 指示를 내리는 입장이 되었다.

五道行政의 설치와 共産黨北朝鮮分局의 組織으로 蘇聯軍의 占領體系가 갖추어지자 聯合大會終了日인 13일저녁에 平南人民政治委主權의 「金日成 將軍歡迎會」가 열리고 이튿날에는 「金日成將軍 歸國歡迎 平壤市群衆大會」가 열려 金이 처음으로 大衆앞에 나타났다.

이보다 앞서 이른바 「資產階級性 民主主義革命」을 제창하면서 曹晩植과 함께 平南人民政治委를 指導하던 玄俊赫<sup>74)</sup>은 9월 28일에 暗殺당했고, 共産党北朝鮮分局도 처음에는 蘇聯派의 金鎔範이 責任秘書 延安派의 武亭과 国内派의 吳琪燮이 第2秘書가 되었으나, 11월의 第2次擴大執行委員會, 12월의 제3차 擴大執行委員會를 거치는 동안 蘇聯軍을 배경으로 한 金日成이 勢力을 확보하여 정식으로 党責任秘書가 되었다.

한편 曹晩植을 중심으로 한 右翼勢力은 11월 3일에 朝鮮民主黨을 결성했다.

이처럼 蘇聯軍은 人民委員會를 통한 間接施政形式을 통하여 共産党的 勢力基盤을 굳혀나감과 동시에 滿州의 産業施設과 함께 北韓에 있던 主要産業施設들로 「戰利品」으로서 철거해 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水豊岬施設로서, 10월하순부터 12월중순까지 發電所의 제3, 4, 5号機를 解体하여 철거했다.<sup>75)</sup>

#### 다. 美軍의 初期占領政策

南韓에 진주한 美軍의 初期占領政策은 9월 2일자의 「하지 司令官布告」 9월 7일자의 「맥아더 最高司令官布告」 3省調整委員會가 작성한 10월 17일자의 「美軍占領下의 韓國地域에서의 民政에 관한 美陸軍最高司令官에 대한 基本指令」(SWNCC 17618) 등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進駐에 앞서 空中撒布된 하지司令官의 포고는 美軍이 聯合軍代表로서 근일중에 上陸하는데, 그 목적은 『貴國을 民主主義制度下에 두고 國民의 秩序維持를 도모함에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國家組織의 改善은 一朝一夕에 되는 것이 아니며, …… 어떠한 改革도 서서히 進行한다』면서

基本方針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民衆에 대한 布告 및 諸命令은 현존하는 諸官庁을 통하여 공표된다. 聯合軍最高司令官의 命令은 여러분을 援助하는 것이 本旨이므로 여러분은 이를 엄숙히 遵守勵行해주시기 바란다. …… 日本人 및 美上陸軍에 대한 反亂行爲, 財産 및 既設機關의 破壞 등의 輕率妄動에 흐르는 行爲를 엄격히 戒하고 平和를 지키며 平時와 다른없는 生活을 하는 것이 國土建設을 順조롭게 하고 日常生活의 向上을 기하는 所以가 될 것이다』<sup>76)</sup>

이 布告에서 말하는 「現存하는 諸官庁」이란 日本總督府의 諸機關을 가리킨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方針은 9월 6일에 서울에 도착한 美軍의 先進隊代表 해리스准將과 日本總督府의 遠藤政務總監간의 會談에서 더 자세히 표명되었다. 해리스가 美軍進駐計劃을 통고한 다음 『南韓의 行政을 행하는데는 현행의 官庁執務중의 官吏 및 官庁의 建物設備를 계속 사용하는것이 가능한가』하고 물은데 대하여 遠藤이 『軍政을 施行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자 해리스는 『軍政施行이라고 명확히는 말하기 어렵다. 韓國은 여전히 總督, 總監의 總括下에 두고 美軍司令官은 行政의 管理, 監督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다』고 대답했다.

遠藤이 그러한 管理, 監督의 실제과정을 묻자 해리스는 『美軍司令官은 行政의 大綱을 總督에 指示하고, 구체적 案件에 대해서는 總督에게 決裁權을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sup>77)</sup>

이처럼 總督府의 存置方針은 日本의 降伏이 예상밖으로 빨라 하지가 韓國으로 出發할 때까지 合同參謀本部로부터 韓國에 대한 아무런 訓令도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日本占領에 대하여 트루만大統領이 맥

아더 太平洋美陸軍最高司令官에게 시달한 訓令(8월 14일자)을, 필요한 變  
更을 加하여( mutatis mutandis ), 韓國에 적용하는 것, 곧 美軍政長官  
의 指揮下에서 總督과 그의 日本人參謀를 韓國施政에 利用하는 것」<sup>78)</sup>  
을 당면방침으로 삼은 것이었다.

9월 8일에 美軍이 서울에 進駐하면서 공포된 맥아더 最高司令官布告 제  
1호는 이러한 美軍의 初期占領政策의 基本方針을 한결 명확히 했다.  
布告는 먼저 『本官率下의 戰勝軍은 日本国天皇과 政府와 大本營을 대표  
하여 서명한 降伏文書의 조항에 따라 오늘 北緯 38度以南의 韓國地域을  
占領한다. . . . 韓國人은 韓國占領의 目的이 降伏文書條項의 이행과 韓國  
人의 人權 및 宗教上의 權利를 보장함에 있음을 인식할 줄로 확신한다.  
本官은 本官에게 부여된 太平洋美陸軍最高司令官의 權限을 가지고 이제부  
터 韓國의 北緯 38度以南의 地域 및 同地域 住民에 대하여 軍政을 실  
시한다』고 천명하고 「占領에 관한 條件」으로 다음의 5個條를 들었다.

- 1) 韓國의 北緯 38度以南의 地域 및 同地域住民에 대한 모든 行政權  
은 당분간 本官의 權限下에서 施行함.
- 2) 政府(總督府-筆者), 公共團體 또는 그밖의 名譽職員 및 雇傭人  
또는 公益事業, 公衆衛生을 포함한 公共事業에 종사하는 職員 및 雇  
傭人은 有給無給을 불문하고, 또 그밖의 諸般重要職業에 종사하는  
者는 別命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職務에 종사하고, 또한 모든 記  
録과 財産의 保管에 임할 것.
- 3) 住民은 本官 및 本官의 權限下에서 발표한 命令에 복종할 것.  
占領軍에 대하여 反抗行動을 하거나 또는 秩序保安에 교란행위를  
하는 者는 용서없이 嚴罰에 처함.



- 4) 住民의 所有權은 이를 존중함. 住民은 本官의 別命이 있을 때까지 日帝의 業務에 종사할 것.
- 5) 軍政期間중 英語를 모든 目的에 사용하는 公用語로 함. 英語와 韓國語 또는 日本語간에 解釈이나 定義가 不明하거나 不同이 생길 때에는 英語를 기본으로 함.
- 6) 以後로 공포하게 되는 布告, 法令, 規約, 告示, 指示 및 條例는 本官 또는 本官의 權限下에서 발표하여 住民이 이행해야 할 事項을 明記함.<sup>79)</sup>

이 맥아더의 布告 제 1 호는 이후의 美軍政 3 年간의 憲法的規範이 되었는데 같은 날자의 布告 제 2 호에서는 『降伏文書의 條項 또는 太平洋美陸軍最高司令官의 權限下에 發한 布告, 命令, 指示를 위반한 자, 美國人과 그밖의 聯合國人의 人命 또는 所有物 또는 保安을 害한 자, 公衆의 治安과 秩序를 攪亂한 자, 正當한 行政을 방해하는 자, 또는 聯合軍에 대하여 故意的로 敵對行爲를 하는 자는 占領軍 軍法會議에서 有罪로 결정한 후에 同會議의 결정하는 대로 死刑 또는 他刑에 처함』<sup>80)</sup> 이라고 천명했다.

맥아더의 布告는 本國政府로부터 包括的인 政策示達이 있기 전의 應急措置의 性格을 띤 것이기는 하나, 北韓에 進駐한 蘇聯軍司令官의 前述한 바와 같은 布告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으로 『우리(美國人-筆者)는 解放軍이 아니었다. . . . 上陸 첫날부터 우리는 韓國人의 敵으로 行動했다』<sup>81)</sup> 고 할만한 것이었다. 美軍은 이 時点까지도 韓國을 日本의 일부처럼 다루어 敗戰國에 대한 勝戰國의 자세로 임했다. 그리하여 日本의 支配機構를 가장 有効한 統治機關내지 合法的統治機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美軍政初期에 韓國을 取材訪問했던 마크 게인에 따르면 그와 面談한 軍政庁의 한 要人은 『하지가 말한 바에 따르면 韓國은 日本帝國의 일부로서 우리의 敵國이었다. 그러므로 降伏條件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 . . 그리고 적어도 初期에는 日本의 行政機構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기간중은 우리는 日本의 統治機關을 韓國에서의 合法政體로 인정한다. 韓國인들이 自由獨立의 희망을 갖는 것은 생각할 수 있으나 이점에 관한 聯合國의 政策은 내가 아는 한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sup>82)</sup>

이러한 現狀維持政策에 따라 9일에 總督府에서 降伏調印式을 마친 다음 하지는 記者會見에서 總督이하 日本官吏들을 당분간 留任시킨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데모行進등 韓國인의 猛烈한 反對에 부딪자 3省調整委員會는 11일에 맥아더에게 『政治的理由에서 阿部總督, 總督府의 局長, 道知事, 道警察局長의 즉각 退任이 바람직하다』고 訓令하<sup>83)</sup>기에 따라 하지는 12일에 阿部總督등에 대해 사임을 요청하여, 日本人 總督을 그대로 두고 그것을 管理 監督하겠다고 당초의 計劃은 수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遠藤政務總監이하 각 局長들은 14일에 解任된 뒤에도 「行政顧問」으로 남아 있으라는 요청을 받았다.<sup>84)</sup> 이러한 狀況에서 占領初期에 日本人들의 「助言」이 크게 作用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하여 9월 20일에는 駐韓美軍政庁이 정식으로 발족되었는데, 그 布告文에서 『美軍政庁은 「人民을 위한, 人民에 의한 人民의」 民主主義 政府를 건설하기까지의 過渡的期間에 38度線以南의 韓國地域을 統治, 指導, 支配하는 聯合國 總司令官아래 美軍에 의하여 설립된 잠정적 政府이다. 軍政庁은 南韓에서의 唯一한 政府이며, 軍政庁本部の 道·府·郡을 통하

여 기성의 各種機關(日本の 支配機關-筆者)을 운영하는 것으로, 軍政庁의 유일한 任務는 韓國의 福利上 健全한 政府 및 健全한 經濟의 基礎를 확립함에 있다』<sup>85)</sup>고 천명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실시된 美軍의 直接統治(곧 軍政)의 구체적인 性格은 10월 13일에 3省調整委員會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되어 17일에 맥 아더에게 송부된 「美軍占領下の 韓國地域에서의 民政에 관한 太平洋美陸軍最高司令官에 대한 基本指令」에서 비로소 자세히 규정되었다. 指令의 目的은 「聯合國信託統治가 수립될 때까지의 初期占領期間에 韓國의 民政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필요한 政策과 太平洋美陸軍最高司令官의 權限 및 指針이 될 政策」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占領軍의 權限의 基礎 및 範圍는 『敵國領土에 대하여, 占領軍이 통제로 갖는 權限을 行使』하고 『占領軍의 安全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韓國을 被解放國으로 待遇』하며, 『軍의 人員을 최대한으로 節約하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韓國人을 行政上의 地位에 기용』하되 『有資格韓國人내지 적당한 人員이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日本人이나 日本人에 協力한 韓國人도 기용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同指令은 韓國에 대한 美國의 窮極的인 목적은 『國際社會에서 責任을 가지고 平和的인 一員으로서의 地位를 확보할 수 있는 自由롭고 獨立된 國家의 수립을 가능케 할 諸條件을 育成하는데 있다』고 말하고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韓國人的 政治的, 經濟的 生活로부터 日本支配의 모든 흔적을 점차로 제거하여 獨立國으로서의 韓國의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諸制度를 日本의 그것과 최종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또한 同指令은 『蘇聯軍과의 連絡 채널을 설립하고, 그 채널을 통하여, 韓國을 統治함에 있어서 本指令의 目的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手續 및 政策에 관하여 步調를

맞추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現地軍 레벨에서 蘇聯과 필요한 交渉을 벌일 것도 訓令했다.<sup>86)</sup>

日本の 降伏接受라는 당연한 軍事的 目的의외에는 구체적인 문제가 없이, 더구나 左翼勢力이 주동이 되어 韓國人들 사이에 그 처단문제가 크게 論難되고 있던 附日協力者마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용한다는 美國의 現状維持政策은 추발적인 政治的熱狂속의 韓國事態에 대처함에 있어서 失敗의 연속이었다. 그러면서 政治的으로는 표면상 中立主義를 표방했는데, 이는 北韓의 蘇聯軍当局과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어 그 指導를 받고 있던 共産黨을 중심으로한 左翼勢力의 猛烈한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 그들은 美軍政에 대하여 人共을 일종의 既定事實로 인정할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內政不干涉」과 「嚴正中立」 및 治安責任의 인제를 요구하는 한편, 1946년 3월 1일에 民族反逆者를 제외한 18세이상의 모든 男女에게 投票權을 주어 總選舉를 실시한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이에 美軍政当局은 10월 10일에 아놀드軍政長官 명의로 『南韓에는 오직 하나의 政府가 있을 뿐이다. 이 政府는 맥아더元帥의 布告와 하지中將의 政令과 아놀드少將의 行政令에 의하여 正當히 수립된 것이다』라는 人共否認의 聲明書를 발표했다.

한편 하지는 10월 5일에 軍政에 대한 諮問機關으로 「教育者, 弁護士 實業家, 左翼 내지 急進的 政治勢力과 保守的 政治勢力의 指導者」들 11명 에 의한 「顧問會議」<sup>87)</sup>를 구성했는데, 그 설치 목적은 하지에 대한 諮問뿐만 아니라 『韓國人들로 하여금 그들의 政府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sup>88)</sup> 그리하여 軍政庁의 行政要員들도 이들이 추천하게 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韓國民主黨을 중심으로 한 右翼系人士들로서 뒤이어 警察(趙炳玉), 司法(金用茂)등의 各分野에 걸쳐



美軍政에 적극적으로 協調하게 되었다. 그러나 같은 右翼勢力 내에서도 韓民黨과 10월 16일에 歸國하여 곧 獨立促成中央協議會를 결성한 李承晚과 11월 23일에 귀국한 金九, 金奎植 등의 臨時政府要人들간에 對美軍政 庁 協調問題, 左右合作問題(政黨行動統一問題), 附日協力者 處理問題 등 당면 과제에 대해 意見差異를 드러내어 政局은 걸잡을 수 없는 混亂을 거듭했다. 그런 중에 蘇聯軍은 南行列車의 運行停止 등 38度線에 의한 分斷의 固定化와 小作料의 改革, 土地를 포함한 日本總督府 및 日人個人財產의 國有化 등 일련의 「民主基地」政策이 추진되었다. 하지는 「初期基本指令」에 입각하여 北韓의 蘇聯軍司令官과 회담해 보려고 여러번 시도했으나, 蘇聯軍쪽은 이를 權限밖이라고 번번히 거절했다.

그리하여 占領 3개월 뒤(12월 16일)에는 하지가 合同參謀本部에 대하여 『현재와 같은 條件과 政策에 의한 美國의 韓國占領은 極東에서의 美國의 威信을 어떠한 명분으로도 들이킬 수 없을 정도로 政治的, 經濟的 합정가까이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狀況을 막기 위해서도 國際的 레벨의 적극적인 行動을 취하거나 극히 가까운 장래에 美國이 南韓에서 主導權을 장악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보고하면서, 38度線의 취소와 美國政府나 聯合國등은 韓國을 日本과 완전히 분리하여 줄 것등을 건의했다.<sup>89)</sup>

하지가 건의한 「國際的레벨의 적극적인 行動」은 이미 美國政府首腦에서 검토되고 있었다.

### 라. '모스크바' 3相會議

蘇聯軍의 初期占領에 따른 分斷의 固定化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美國으로서는 알타會談이래로 명확히 해 놓지 않았던 韓國信託統治問題에 蘇聯과 結말을 짓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12월 16일부터 모스크바에서 열린 美·英·蘇 3國의 外相會議는 日本占領에 관한 결정, 中國問題, 滿州問題, 인도네시아問題, 그리스問題, 原子에너지를 管理問題, 旧枢軸國과의 平和條約 締結을 위한 手續問題,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 政府承認에 대한 英·美쪽의 조건문제등 광범위한 문제와 함께 韓國問題가 聯合國의 현안 문제의 하나로 토의되었다. 토의는 물론 4個國에 의한 信託統治를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것이냐는 것이었다.

카이로宣言의 「적당한 時期에」란 귀결의 내용이 잠정적인 信託統治期間을 의하는 것임이 처음으로 韓國人에게 밝혀지기는 解放이 되고도 2個月이나 뒤인 10월 20일에 이르러 美國務省極東局長 빈센트가 美國外交政策協議會의 모임에서 『韓國은 多年間 日本에 예속되어 있었던 관계로 自治의 준비가 없으므로 당분간 信託統治制度를 실시한다』고 發表한 데서였다. 이 빈센트 發言이 보도되자 國內은 左右翼을 가릴 것없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24일의 國民黨(代表 安在鴻)의 反託談話를 필두로 政黨合同準備委員會의 反託聲明, 韓國民主黨의 反託決議, 「人共」中央人民委員會의 反託聲明, 朝鮮共産黨을 포함한 左右諸政黨으로 구성된 各政黨行動統一委員會의 反託決議 등이 잇따르고 11월 2일의 結成大會에서 「1年以內에 國民選舉를 단행」할 것을 결의한 獨立促成中央協議會는 11월 4일 會長 李承晩 名의 反託決議書를 4大聯合國에 발송했다.<sup>90)</sup>

信託統治問題에 대한 國內의 이러한 反應에 대해 앞서 본 하지 의

合同參謀本部에 보낸 보고서는 『韓國人은 聯合國의 잠정적인 信託統治를  
 극히 싫어하며 만일 지금 또는 장차 언젠가는 이를 실시한다면 韓國人은  
 실제로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고 적고 있다. 그리하여 現地軍司令官  
 레벨에서는 本國政府에 대해 信託統治案의 포기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11월 20일 軍政庁政治顧問「랭든」은 국무장관에 대한 보고에서 信託統  
 治에 대신할 다른 計劃을 수립할 것을 건의했는데, 다른 計劃이란 金九  
 등의 臨時政府(그때까지는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었다)를 중심으로 行  
 政委員會(Governing Commission)를 조직시키는 것으로 同行政委員會  
 는 軍政을 繼承할 잠정정부로 國家元首를 선거하고 美·蘇兩軍이 철수한  
 뒤에는 이 行政委員會의 權能을 蘇聯占領地域까지 확대한다는 것이었다.<sup>91)</sup>  
 이에 대하여 國務省은 11월 29일의 回電에서 『信託統治는 分割占領이  
 전의 合意事項으로서 信託統治의 原則의 유지는 分割占領을 종결시키는데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 韓國의 獨立, 統一에 대하여 蘇聯으로부터 어떠한  
 구체적 보장을 얻지 못하면 信託統治를 포기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行政委員會와 같은 新構想을 만들어 내기 전에 蘇聯과 交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말했다.<sup>92)</sup> 그러나 軍政當局은 계속 信託統治政策의  
 포기를 주장하여 12월 14일자 랭든의 電文은 모스크바 3相會議에 대  
 한 희망사항을 표명한 가운데 『만일 우리가 韓國獨立의 몇가지 구체적  
 인 수속에 대하여 蘇聯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단호한 조  
 처를 취하여 韓國人 指導者들에게 韓國에 대한 우리의 眞意를 확신시킴  
 으로써 共產主義와의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民衆의 敵意와의 鬪爭에 의하  
 여 그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수 밖에 없다』<sup>93)</sup>고 했으며 맥아더는 모  
 스크바 3相會議가 열리는 바로 그날인 12월 16일 合同參謀本部議長에  
 대한 보고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의 하나로 「信託統治의 포기」를 명확

히 聲明할 것을 권고했다.<sup>94)</sup>

現地軍 레벨의 이러한 권고는 맥아더의 報告가 『지금 남한의 정세는 共產主義의 정착에 가장 기름진 토양이다』고 지적한 것이나 랭든 보고서의 문맥에서 알 수 있듯이 美軍占領地域에서의 共產主義勢力의 확장과 北韓의 소비에트化 및 38度線의 分斷固定化에 대한 우려에서 행해졌던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蘇聯 및 共產主義勢力의 확장에 대한 고려는 信託統治案을 견지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를테면 駐蘇大使 해리먼은 11월 12일에 『蘇聯은 어쩌면 信託統治를 통해서보다 「友好的」인 韓國의 獨立政府를 만듦으로써 對韓支配權의 확보를 기도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信託統治는 蘇聯으로서는 3분의 1의 支配力밖에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韓國處理問題가 다른 大國에 의하여 다루어지지 않는한 蘇聯은 필경 말없이 北韓에서의 政治的基盤을 굳혀 民政問題가 제기될 때까지에는 蘇聯의 政治的基盤을 구축하려고 韓國에도 政治적으로 침투할 것이다』<sup>95)</sup> 라고 蘇聯이 信託統治를 거부할 가능성을 우려하기까지 하고, 中國戰區의 美軍司令官이었던 웨드마이어가 陸軍省에 보낸 보고서에서 滿州와 韓國에 대하여 『그 지역이 蘇聯의 傀儡내지 衛星國이 되는 것은 막기 위하여』 美國이 『信託統治를 美·中·英·蘇의 보호 아래 곧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sup>96)</sup> 등이 그 例다. 이처럼 이 단계에서의 美國의 韓國에 대한 信託統治政策은 蘇聯勢力의 저지수단이라는 성격이 한결 짙어지고, 따라서 蘇聯勢力의 沮止라는 근본 방침을 구현함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信託統治는 포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었다.

위와같은 견지에 입각한 美國政府의 韓國信託統治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10월 말까지는 확정되어 갔다. 10월 22일에 3省調整委員會에서



승인된 「國際信託統治成立 이전의 韓國에 있어서의 民政의 構造 및 구성에 대한 미국정부의 기본정책」이란 政策報告書는 ①현재의 美·蘇軍事占領은 될 수 있는한 빠른 시일 안에 信託統治로 移行되어야 하고 따라서 ②信託統治를 위한 交渉을 곧 開始하고 ③交渉이 타결될 때까지는 信託統治를 위한 기반 구축으로서 兩軍의 人爲的인 分割線을 철폐하고 軍事占領을 統合 (centralize) 시키기 위한 조치가 곧 강구되어야 하며 ④現地軍司令官은 軍事的 수준에서의 調整을 통하여 蘇聯軍司令官과 가능한 한 협조에 努力하며, 또 이미 송부한 지령 (「初期基本指令」)에 입각한 南韓에서의 行政의 조직에서 사령관은 그 구성을 소련과의 합의로 全韓國에 확대할 수 있도록 調整할 것이 요망된다는 요지의 것이었다.<sup>97)</sup> 信託統治 실시 전이라도 곧 「軍政의 統合」을 통하여 어디까지나 統一 韓國을 단위로 한 信託統治를 준비한 것이나, 南韓의 행정기구를 北韓에 까지 확대하도록 한데서 보듯이 信託統治중의 美國 優位의 확보라는 戰時 外交중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뒤이어 (10월 24일) 승인된, 信託統治의 형태와 기능 및 軍政庁과 國際聯合과의 관계를 규정한 政策報告書 (「韓國의 國際信託統治에 대한 美國의 政策」)의 요지는 ①日本의 主權 및 軍政의 종로후 한국은 國聯憲章의 國際信託統治制度의 조항에 따라 非戰略地域信託統治地로 되어야 하며 ②美國·英國·蘇聯 및 中國은 韓國에 대해 國聯憲章 79條 규정의 「直接關係國」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이들 4個國은 가능한한 빨리 그들 자신을 國聯憲章 79條, 81條 및 그밖의 적당한 조항에 입각한 공동의 「施政權者」 (administrative authority)로 하여 한국에 실시될 信託統治의 協定에 들어가야 하는데, 施政權者의 目的은 물론 韓國人이 獨立의 責任을 지게 되고 窮極的으로는 韓國의 國聯加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이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알타會談 이래 고려되어 온 「国聯  
下의 美·英·中·蘇의 4個国信託統治」案이 美国의 정책으로 확정된다.  
同政策報告書에 따르면 韓國을 国聯의 國際信託統治 아래 두는 것의 利  
點은 非戰略地域에 대한 信託統治로 總會의 승인이 필요하고, 施政權者는  
信託地域에 대한 年次報告를 제출해야 하며, 信託統治理事會는 信託統治地  
域의 청원을 접수할 수 있고 또 當該地域의 정기적 視察을 행하기 때  
문에 韓國人은 總會와 信託統治理事會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施政權者에  
대한 비판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同報告  
書는 信託協定은 副次的 規定으로 ①韓國은 單一의 政治的, 經濟的 統一  
體로서 하나의 中央施政機構(central administrative authority)에  
의하여 통치되며 ②施政에는 될 수 있는대로 많은 韓國人을 기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sup>98)</sup>

모스크바 三相會議에서의 韓國문제 토의에 임하는 美国의 입장은 위와  
같은 기본정책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外相會議의 첫날 회의에서 「獨  
立韓國政府樹立을 위한 統一行政의 창설」이 의제가 되었다. 번즈長官은  
몰로토프外相에게 해리먼 駐蘇 美大使가 약 한달 전인 11월 8일 몰  
로토프外相에게 전한 각서<sup>99)</sup>의 사본을 소개했다. 몰로토프는 그것이 자  
기로서 處理困難한 문제일뿐 아니라 합의된 의사일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討議를 行政과 信託統治問題에 국한시키기를 요청했다.  
그리하여 이튿날인 12월 17일에 번즈는 「韓國의 統一行政」(Unified  
Administration for Korea)라는 각서를 제출했는데, 이 각서는 앞서  
본 3省調整委員會의 政策報告書의 내용을 구체화시킨 것이었다. 同覺書  
에서 번즈는 우선 韓國에 統一行政을 창설할 것을 제안했는데, 그 統一  
行政은, 交易 및 交通, 電氣通信, 配電, 石炭運送, 難民問題등 韓國의 國家

利益에 관련된 모든 현안문제를 共同解決하기 위하여 두 司令官에 의해서 운영되고 또 되도록 韓国人을 行政官 또는 兩司令官의 顧問 (consultants and advisers)으로 統一行政에 기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統一行政은 「獨立韓國政府樹立을 향한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非軍政으로의 과도적인, 그러나 필요한 段階」라고 하여 過渡政府내지 臨時政府의 성격을 시사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것이 뒤에 「韓国人에 의한 臨時政府」수립이라는 蘇聯의 수정안에 번즈가 동의하는 근거가 되었는지 모른다. 同覺書는 이어 4大國의 信託統治가 「하나의 獨立韓國」을 낳을 가장 가능성있는 機構를 준비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그러므로 關係 4個國이 될 수 있는대로 빨리 信託協定下의 하나의 統一行政을 설치하기 위한 토의를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 協定の 試案이라면서 美國의 信託統治案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美·英·中·蘇의 4個國이 施政權者가 되어 國聯憲章 76條가 규정한 基本目的에 따라 행동하되 그 權限과 構能은 「한 사람의 高等弁務官」(a high commissioner)과 4施政權國의 한 사람씩의 代表에 의하여 구성되는 「執行委員會」를 통하여 행사하며, 信託統治의 期間은 5년으로 하고 4施政國의 協定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나 5년 이상은 더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sup>100)</sup>

위와 같은 美國案에 대하여 몰로토프는 이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요구했고, 12월 20일에 이르러 韓國問題가 다시 토의되었다. 몰로토프는 소련이 4個國 信託統治案에 찬성한 것은 인정하나 그것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장래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韓國問題 處理에 대한 소련안을 제시했다. 이 案은 이튿날 美國代表가 두가지 사소한 변경을 가하여 12월 27일에 모스크바會議의 共同聲明에 挿入되었는데 全文은 다음과 같다.

- 1) 韓國은 獨立國家로 再興시키고 民主主義原則에 따른 國家의 發展과 오랜 日本支配의 불행한 諸結果의 조속한 清算을 위한 諸條件을 조성시키기 위하여 韓國民主臨時政府를 수립하여 韓國의 工業, 交通 農業 및 韓國人의 民族文化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게 한다.
- 2) 韓國臨時政府의 수립을 돕고 또 미리 적당한 방법을 검토할 목적으로 南韓의 美軍司令部와 北韓의 蘇軍司令부의 代表들로 구성되는 共同委員會를 설치한다. 委員會는 그 提案을 준비함에 있어 韓國의 民主的諸政黨 및 社會團體와 協議한다. 委員會가 작성하는 勸告案은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兩國政府가 共同委員會에 代表를 갖는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 中國, 聯合王國(英國) 및 美合衆國의 各政府의 檢討를 위하여 제출한다.
- 3) 韓國民主臨時政府와 韓國의 民主的諸團體의 參加 아래 韓國人民의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進步와 民主的自治의 發展 및 韓國의 國家的獨立의 달성을 協力 및 援助(helping and assisting)하는 方法(信託統治)을 작성하는 것도 共同委員會의 課題로 한다. 共同委員會의 提案은 韓國民主臨時政府와의 協의를 거쳐 5個年 以內의 韓國에 대한 4大國 信託統治에 관한 協定의 작성을 위한 美合衆國,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 聯合王國 및 中國의 各政府의 共同審議에 회부한다.
- 4) 南北韓 양쪽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諸問題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리고 南韓의 美軍司令部와 北韓의 蘇軍司令部간의 行政 經濟分野에서의 항구적인 協調를 확립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2週間內에 駐韓美·蘇兩司令部의 代表로 구성되는 會議를 개최한다.<sup>101)</sup>



韓國問題에 대한 이 「모스크바 協定」은 蘇聯案을 거의 그대로 채택한 것으로 美國代表에 의하여 蘇聯案에 가해진 두가지 「사소한 변경」이란, 하나는 ②의 마지막 부분, 곧 委員會가 작성하는 勸告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關係國政府」의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던 蘇聯案에 蘇·中·英·美의 4個國名을 名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야말로 사소한 文章의 기술적 수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sup>102)</sup> 이렇게 해서 協定の 내용은 애당초 美國이 제안했던 것보다는 많이 달라졌다. 우선 信託統治에 앞서 과도적 단계로 제안했던 美·蘇 兩司命官이 공동으로 統管하는 統一行政案이 韓國民主臨時政府의 수립으로 바뀌었고, 다음은 4大國 信託統治와 國聯과의 관계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이다. 모스크바會議 도중에 앞서 본 맥아더의 韓國人의 反託意思에 대한 報告(信託統治 포기 성명의 권고)는 애치슨國務長官代理에 의해서 12월 20일에 모스크바의 해리먼 大使에게 打電되어 있었는데, 同電文에서 애치슨은 『만일 韓國에 관한 共同聲明이 모스크바에서 발표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곧 信託統治에 대한 韓國人의 바람직하지 못한 反應에 대한 보고에 비추어, 韓國人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信託統治란 施政權者의 잠정적 調整으로서 그것은 國聯機構의 後援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함이 좋다』<sup>103)</sup> 고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聯과의 關係문제가 빠진 것은 번즈의 양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모스크바會議에서의 極東問題의 決定은 日本 및 中國問題에 대한 美國의 주장을 관철시킨 대신 韓國問題는 蘇聯의 주장에 타협한 느낌이 짙다. 번즈로서는 國聯의 關係문제는 美·蘇共同委員會를 통하여, 그리고 同委員會의 提案을 토대로 한 信託統治協定の 작성을 위한 4大國會議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한편

소련은 한국문제를 처음부터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國聯과는 떼어서 다루려 했음을 同協定文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協力 및 援助(信託統治)」라는 概念의 모호성은 뒤이어 國內에서 벌어지는 反託運動에서 左翼勢力들로 하여금 애초의 태도를 바꾸어 모스크바協定 지지로 나서면서 「後見」이란 用語를 쓰게 하여 혼란을 자아내는 꼬투리가 되었다. 그밖에 美国案과 달라진 것은 最長 10年까지라고 했던 信託統治期間이 「5年以内」로 단축된 점이였다.

## 註

- 47)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 1967, p.67.
- 48) 金俊淵, 『独立路線』, 1957, pp.2-6, 民主主義 民族戦線『朝鮮解放 1年史』, 1946, pp.79-80.
- 49) 「朝鮮建国準備 委員会」라는 名称은 安在鴻이 命名한 것이라고 한다.  
( 森田 前掲書, p.76 )
- 50) 安在鴻, 「岐路에 선 朝鮮民族」( 「新天地」 제3권 제6호, 1948년 7월호 )
- 51) 森田前掲書, p.81. 前掲『解放1年史』, p.84.
- 52) 金俊淵, 前掲書, p.7. 上同『解放一年史』, p.80.
- 53) 上同 『解放一年史』, pp.83-84.
- 54) 「人共」의 立案者라고 할 수 있는 朴憲永自身은 閣僚名單에는 물론 54人의 人民委員名單에도 들어있지 않으며, 金日成은 人民委員으로 포함시켰다. 「人共」수립의 論議와 人選은 9월 4일 医專病院에 입원중이던 許憲의 病실에서 朴憲永 呂運亨 鄭栢 許憲의 4人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 前掲『朝鮮解放一年史』 pp.85-86.  
朴駟遠, 『南勞党總批判(上)』, 1948, pp.32-33 )
- 55) 前掲『解放一年史』, p.90.
- 56) 金鍾範, 金東雲 『解放前後의 朝鮮真相』( 제2집 ), 1945, pp.69-70.
- 57) ibid., p.77.
- 58) 朝鮮産業調査所 『 올바른 路線을 위하여』, 1945, pp.1-12.  
金默坤 『韓國戰爭과 勞動党戰略』, 1973, 附錄1 参照,
- 59) 前掲『解放前後의 朝鮮真相』( 제2집 ), pp.46-51.

- 60) 森田芳夫, 前掲書에는 ( pp.182-183 ) 終戰과 동시에 曹晩植을 委員長으로 하고 共産党的 玄俊赫을 副委員長으로 하는 平安南道治安維持委員會가 조직되었다가 뒤에 建準平南支部로 改稱되었다고 했으나 曹晩植이 班石에서 平壤으로 나온 것은 8월 17일이었고 玄은 共産党的 組織強化를 위하여 서울에서 파견되었었다. ( 吳泳鎮 『하나의 証言』 1952, pp.30-42 )
- 61) 森田, 前掲書, pp.184-185.
- 62) 平南政治人民委員會는 26일밤에 치스차코프가 로마넵크등의 막료와 함께 曹晩植등의 建準代表와 玄俊赫등의 共産党代表를 그의 숙소인 鐵道호텔로 초치하여 결성시킨 것인데, 委員 32名の 半数는 共産党에 配定했다. 「人民政治委員會」라는 名称은, 蘇聯軍과 共産党은 「人民委員會」로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曹晩植등의 주장으로 「政治」2字가 添加된 것이라고 한다.
- 63) 平南人民政治委員會의 성립에 이어, 平北( 8월 31일 ), 咸南( 9월 1일 ) 黄海( 9월 2일 ), 江原( 9월 15일 ), 咸北( 10월 26일 )의 차례로 韓人行政機關이 성립되었는데, 그 号稱은 「人民政治委員會」 「臨時道委員會」 「人民委員會」등이 混用되었던 것 같다. ( 森田 前掲書 pp. 158-191. 民主朝鮮社 『解放後三年間の 国内外重要日誌』, 1948, pp.1-3, 金昌順 『北韓十五年史』 1961, p.52 )
- 64) 北韓에 진주한 蘇聯軍은 第 25 軍으로 近衛軍大將 이반 치스차코프 司令官指揮아래 政治關係는 레베제프少將, 軍隊는 샤닌少將, 軍政은 로마넵크少將이 담당했는데, 旧平南道庁에 자리잡은 제 25 군사령부와는 별도로 旧平壤稅務署建物에 간판도 달지 않고 있던 蘇聯軍司令部가 곧 로마넵크司令部였다. 蘇聯軍안에서의 号稱은 「政治司令部」 또는



- 「軍政司令部」였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蘇聯軍과 같이 入國한 金日成 등의 蘇聯派 共産黨員 43人이 참여하고 있었다고 한다. ( 森田 前揭書 p.192, 金昌順 前揭書 pp.52-54, 李弘根 『蘇聯軍政의 始末』 1950, pp.1-2 )
- 65) 朝鮮中央通信社, 『朝鮮中央年鑑』( 1949年版 ) pp.57-58, 森田, 前揭書, pp.192-193.
- 66) 그의 이름이나 職責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점이 없지 않다. 45년 9월 22일자 「勞動者新聞」의 記事를 英訳한 李庭植 교수는 ' Kruchrov '로 표기하고 職責은 ' political cadre '라고 번역했는데, ( Chung-Sik Lee "Materials on Korean Communism" 1945-1947, 1977, p.144 ) 坪江 = 『朝鮮民族獨立運動秘史』( 改訂增補版, 1959, p.467 )에는 「クルヤル政治指導委員」으로 되어있다.
- 67) 「勞動者新聞」 1945년 9월 22일자 Chung-Sik Lee, ibid. pp.144-145의 英訳文을 다시 번역한 것이다.
- 68) 가령 치스차코프布告文에 이어 全北韓地域에 揭示된 「붉은 軍隊는 무슨 目的으로 朝鮮에 왔는가」라는 제시문에서는 『우리에게는 …… 남의 領土를 점령하려거나 또 다른 나라사람들을 정복하려는 戰爭目的이 없으며 또 있을 수 없습니다. …… 붉은 軍隊는 朝鮮에 소비에트秩序를 설정하거나 또는 朝鮮地域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지 않았읍니다』라고 공언했다. ( 金昌順 前揭書 p.47, 吳泳鎮 前揭書 p.130 ) -
- 69) 『朝鮮中央年鑑』( 1949年度版 ), p.58.
- 70) 朴憲永 숙청이후에 간행된 北韓出版物들은 이 「分局」稱号를 「中央分局」 또는 「北朝鮮組織委員會」였다고 적고 있다.

- 71) 朝鮮産業運動調査所 『육은 路線을 위하여』, ( 1945 ) 所蔵 同會議録 参照.
- 72) 金이 언제 平壤에 왔는지는 여러 論者들의 說이 다르고 北韓의 公式刊行物에서조차도 애매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의 伝記를 썼던 韓載德씨 등의 証言에 따르면 8월하순경에 入國하여 金英煥이라는 이름으로 行動하고 있었다 한다.
- 73) 前掲『육은 路線을 위하여』, pp.40-45.
- 74) 그의 주장은 『政治問題處理에 있어서 아무런 能力도 없는 勞働者나 農民들이 政治的主導權을 장악할 것이 아니라 이 단계에 있어서는 民族問題解決과 獨立國家創建에 유용한 意見과 經倫을 가진 人士들에 의하여 階級과 党派을 초월한 政治勢力을 형성하자』는 것이었다고 한다. ( 金昌順 前掲書 p.66 )
- 75) 森田 前掲書, pp.207-209.
- 76) *ibid.*, p.269.
- 77) *ibid.*, pp.272-273.
- 78) FR 1945, vol.VI.p.1041.
- 79) 駐韓美軍政庁, 『美軍政法令集』 및 FR. *ibid.*, p.1044.
- 80) 同上 『法令集』.
- 81) Mark Gain "Japan Diary" 1948, p.428.
- 82) *ibid.*, p.428.
- 83) FR.1945, *op.cit.*, p.1045.
- 84) 森田 前掲書, p.289.
- 85) 同上書, p.291.
- 86) FR.1945 *op.cit.*, pp.1073-1091.

- 87) 11 명의 명단은 金性洙(教育家), 金用淳(實業家), 金東元(實業家), 李容高(醫師), 吳泳秀(銀行家), 宋鎮禹(政治家), 金用茂(弁護士), 姜柄順(辯護士), 尹基益(鉦業家), 呂運亨(政治家), 曹晚植(政治家), 委員長은 金性洙였는데, 呂運亨은 뒤에 辭退 且 曹晚植은 北韓에 있었으므로 參加 하지 못했다.
- 88) FR. op. cit., p.1069.
- 89) 前掲『트루만回顧錄(下)』, pp.296-297. FR. ibid., pp.1144-1148.
- 90) 빈센트 쏘름에 대한 北韓에서의 反應은 잘 알 수 없다. 12월 말의 모스크바協定에 대한 태도로 미루어 曹晚植을 중심으로 한 右翼勢力에서는 물론 反對였을 것이나 共產主義者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는 여러 資料에도 不明하다.
- 91) FR. ibid., pp.1130-1133.
- 92) ibid., pp.1137-1138.
- 93) ibid., pp.1142-1144.
- 94) ibid., pp.1144-1147.
- 95) FR.1945, vol.II p.700.
- 96) ibid., vol.VI p.1101.
- 97) ibid., p.1096.
- 98) ibid., pp.1101-1103.
- 99) 해리먼의 覺醒에는 石炭을 포함한 資源의 兩地域간의 교환, 鐵道와 그밖의 交通, 海岸輸送등의 재개, 統一的財政政策의 設定, 日本居住民의 귀환을 포함한 難民問題의 해결등에 대하여 먼저 現地軍레벨의 交渉을 시작하자고 제의했었다. (FR.1945, vol.II p.641)

- 100) FR. 1945, vol.II p.643.
- 101) ibid., p.820.
- 102) ibid., pp.716-717.
- 103) FR. 1945, vol.VI p.1148.



### 3. 統一改體樹立의 失敗

가. 信託統治論쟁과 左右分裂

모스크바 3 相會議決定(물론 위에서 본 韓國에 관한 協定도 그 一部다)은 '45년말 당시의 大國間의 妥協의 산물로 評해저는때, 土魯만<sup>104</sup> 및 불가리아의 親露政權 승인 문제와 日本 문제가 擧정되고 中國 문제에서 美國案이 關切된 대신 韓國 문제에서 蘇聯案이 採択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모스크바外相會議의 결과는 美國의 경우 大統領과 國務長官의 對立을 격화시켜 土魯만은 會議에서 돌아온 번즈에게 後任者를 決定하는 대로 解任할 뜻을 통고했다. 土魯만은 『나는 蘇聯을 어르는데 질렸다』고 토로했는데 그가 보기에 번즈外交는 너무 妥協적이었던 것이다. 極東問題에서는 韓國問題가 그러한 경우로서 모스크바協定の 韓國問題에 대한 決定을 土魯만이 土魯만에게는 번즈가 美國에 돌아와서 報告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듯이<sup>104</sup>, 번즈의 獨走였다.<sup>105</sup>

그러므로 3 相會議決定의 이행은 특히 韓國問題에 관한 경우, 그 이행 과정에서 美國의 주장이 關切되지 않는한 처음부터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었다. 더구나 信託統治에 대한 韓國民衆 특히 美國의 지지세력인 右翼진영의 격렬한 反對는 美國으로 하여금 달래머에 까지게 했고 끝내는 카이로宣言아래의 政策의 修正(곧 信託統治의 포기)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韓國問題에 관한 모스크바協定の 全文이 國內에 알려진 것은 12月 28日이었다. 하루가 급하게 獨立政府의 수립을 고대하고 있던 韓國民衆들에

에 5개년간의 信託統治의 결정은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대부분의 韓国人들은 그것이 종래 美國을 포함한 國際社會에서의 『韓国人은 自治能力이 없다』는 모욕적인 誤解 - 이는 지난 날 日本이 韓國 占領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내세웠던 유일한 구실이기도 했었다. - 에서 비롯된 大國主義처사로 받아들여졌다. 그리하여 反託運動은 「새로운 獨立運動」(金九의 말)과 같은 결의로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잠시나마 美軍政은 機能麻痺 상태에 빠질 정도였다. 反託運動 추진방법을 두고 臨政系와는 달리 美軍政과의 마찰을 피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그러나 共産党的의 朴憲永에게는 『이번만은 제발 영웅적 태도를 취하여 反託運動에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종용했던 宋鎮禹가 12월 30일에 金臨政系의 青年에게 暗殺된 것은 信託統治案에 대한 韓国人의 反感이 얼마나 격렬했던가를 말해준다.

左翼勢力은 모스크바協定이 전해진 그날밤으로 金九의 主導下에 조직된 信託統治反對國民總動員委員會에는 참가하지 않았으나 信託統治를 반대하는 意思自体에는 변함이 없었다.

앞서 본 10月の 빈센트發言에 대한 人共의 성명은 『만일 美國이 信託管理制를 朝鮮에 실시하려 한다면 朝鮮民族은 비록 全民族의 生命을 否定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이를 배격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論調는 모스크바協定 발표직후에 나온 左翼團體의 諸聲明에서도 마찬가지였다. 共産黨도 『정확한 자료가 입수되는대로 正式發表 하겠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한 간부의 『個人的見解』로 反託을 표명했다. 그러나 1946年 1月 2日에 발표된 人共의 中央委員會와 朝鮮共産黨的의 최초의 公式聲明은 『이 문제의 乙巳條約과의 대비를 운운하고……撤市 罷業으로써 民衆을 선동하여 指導하는 것은 市民의 生命을 질식시키는

일이며 특히 근로대중의 생활을 마멸시키는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지도자들을 규명하여 배격해야 한다. 信託統治問題의 해결은 民主主義的民族統一戰線을 전고히 결성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sup>106)</sup> 고 하여 反託運動을 계기로 한 民族陣營의 大衆的리더십의 확대를 전제하는 한편 信託統治問題는 民族統一戰線을 결성하여 「解決」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1월 3日 左翼陣營 주최의 大衆集會에서 贊託의 태도를 분명히 하여 모인 群衆들을 당황케 했다. 共産党的 公式見解의 결정이 이처럼 時間이 걸린 것이라든가 공식결정이 贊託으로 急變된 것은 물론 北韓의 蘇聯軍 당국과의 協議에 따른 시간이며 결정이었다. 그동안 朴憲永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왔었는데, 이때부터 左翼쪽에서는 「信託統治」라는 말 대신에 蘇聯軍當局이 공식발표한 「後見制」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 說明, 解釈으로 民衆을 설득하려 했다.

3相會議決定에 대한 反應은 北韓에서도 마찬가지였다. 曹晩植을 중심으로 한 朝鮮民主党的 주도로 広範圍한 反託運動이 전개되었고 共産主義者들도 처음에는 外廓団体 이름으로 反託壁報까지 붙였다. 그러나 모스크바로 부터 『三相會議決定은 蘇聯이 앞장서서 (蘇聯案을 토대로 - 筆者) 만든 것이므로 共産党은 絶對支持하라』는 指示가 있자 共産主義者들은 돌연 贊託運動으로 나서게 되었다.<sup>107)</sup> 그리하여 1946年 1月 2日에는 朝鮮 共産党北朝鮮分局을 비롯한 獨立同盟, 民主青年同盟등의 团体들의 「모스크바 決定 支持共同聲明書」, 3日에는 「北朝鮮行政局長會議 支持 共同聲明書」등이 발표되었는데, 이 성명서들은 한결같이 臨時政府의 수립의 의의를 강조하고 信託統治問題는 「後見制」라고 하여 「援助」의 내용임을 강조하였다. 反託運動은 1月 5日에 로마넵코少將의 명령에 의하여 금지되고<sup>108)</sup>, 그때까지 北朝鮮五道行政局長이었던 曹晩植은 연금되었다. 蘇聯은 그들의

占領地域 안의 일체의 反託勢力을 배제하여 北韓의 政黨 社會團體를 3 相會議決定支持로 통일시키고 (黨首 曹晚植의 연금후에 朝鮮民主黨도 무락치로 들어가 있던 崔庸進이 2月 24日에 黨首가 되어 贊託을 표명했다) 南韓의 左翼勢力도 3 相會議決定을 지지하게 해서 美·蘇共同委員會에 대비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3 相會議決定을 계기로 北韓에서는 右翼勢力이 或은 越南 或은 東淸으로 급격히 沒落하게 되고 南韓에서도 1946년 들어서는 左翼勢力이 贊託으로 일치하게 되어 信託統治問題를 둘러싸고 격렬한 論爭을 전개하게 되었다.

共産黨을 중심으로 北韓의 政黨 社會團體를 3 相會議決定支持로 통합시킨 蘇聯當局은 2月 8日에 「北部朝鮮 各政黨 各社會團體 各行政局 及各道市郡人民委員會代表 擴大協議會」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서 金日成은 「北朝鮮의 行政上, 人民生活上 切실히 요구되는 諸問題를 해결하여 모스크바 3 相會議決定을 실천에 옮기며 民族統一戰線의 기초위에 장차 세워질 民主主義朝鮮臨時政府建立을 촉진하기」 위하여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를 조직할 것을 재의하여, 이날 정식으로 發足시켰다. (委員長=金日成, 副委員長=金枋奉, 書記長=康良燮)<sup>109)</sup> 이는 그때까지 臨時行政機關이던 道單位의 人民委員會와는 달리 北韓全地域을 總括하는 統一的中央施政機關으로서 3 相會議決定에 따른 臨時政府가 수립되는 경우 그 基本組織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으리라는 것은 심사리 추측할 수 있다.<sup>110)</sup>

한편 南韓의 左翼勢力에서는 共産黨과 呂運亨의 朝鮮人民黨을 중심으로 '46年 2月 15日에 民主主義民族戰線(議長團=呂運亨, 朴憲永, 許憲, 金元鳳, 白南雲)을 결성했다. 결성에 앞서 2月 1日 발표된 同準備委員會의 「宣言」에 따르면 그것은 ①朝鮮人民의 總選舉에 의하여 決定될 人民代表大會가 구성될 때까지의 暫定的 國會의 역할을 맡고 ② 모스크바協定



의 原則에 입각한 美·蘇共同委員會의 臨時政府組織에 있어 朝鮮民族 唯一의 正式代表로서의 發言權을 확보할 것을 표방한 것이었다. <sup>111)</sup> 民戰은 실질적으로는 人共을 계승한 것인데 「朝鮮民族 唯一의 正式代表」라고 하여 南韓은 아니라 全韓國代表임을 표방하고 있는 것은 이 時點까지도 南韓의 共產主義者들이 朝鮮共產黨의 中心은 「서울中央」으로 자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sup>112)</sup>

한편 民戰의 결성은 一般의 反託熱을 배경으로 하여 一般國民들의 큰 기대속에서 그 개최가 준비되고 있던 非常國民會議에 대결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동안 右翼勢力에서는 託治를 찬성하는 左翼들을 「新事犬主義者」, 「國際追隨者」라고 규탄하면서, 1月 4日의 金九의 3개항의 제의에 의한 ①남의 손을 기대할 것 없이 우리 손으로 신속히 강고한 過渡政權을 수립하기 위한 非常政治會議를 소집할 것 ②過渡政權이 수립될 때까지 臨時政府를 확대, 강화할 것 ③非常政治會議에 의한 過渡政府의 수립과 동시에 臨時政府는 해체하며 그 過渡政府로 하여금 國民代表大會를 소집하여 正式政權을 조직하게 할 것에 따른 非常政治會議 (籌備會 과정에서 非常國民會議로 改稱)의 소집을 서두르고 있었다. <sup>113)</sup>

그리하여 2月 1日에는 「저명한 民衆指導者」 8명 (李承晩, 金九, 金奎植, 權東鎭, 吳世昌, 金昌淑, 曹晩植, 洪命燾)을 包含한 政黨, 社會團體, 海外僑民團體代表들 (201名 초청자중 167名 참석)이 모여 非常國民會議를 열고 이 자리에서 『韓國의 자주적 民主主義過渡政權樹立과 기타 긴급한 諸問題의 해결에 관하여 關係列國과 절충하며 필요한 措置를 행할』가 구로서 最高政務委員會를 구성할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그 員數와 人選은 李承晩과 金九에 일임했는데, 兩人은 2月 13日 共產黨 이외의 各 政派, 宗教界등을 알배한 28명의 명단을 발표했고, 이들은 이튿날 南朝鮮

大韓國民代表民主議院으로 발족했다. (呂運亨등 人民黨代表 3人도 選定되어 呂運亨 이외의 두사람은 會議에 出席했다. 그러나 呂運亨은 앞서 본대로 이튿날 民戰결성에 참가하여 議長團의 한사람이 되었다) 114)

이렇게 발족한 民主議院의 성격은 『韓國의 여러 民主主義政黨과 社會團體에서 피선된 南部韓國民主主義代表會議의 議員인 우리는 代表會議의 모든 일을 奉行하며 이땅에 머무는 美軍總司令官이 韓國의 過渡政府樹立을 準備하는 努力에 諮問 資格으로 협조하기를 同意함』이라고 한 宣言文에서 보듯이 「자주적인 過渡政府 樹立」이라는 애당초의 목적에서 「美軍司令官의 過渡政府 樹立 노력에 諮問」하는 기관으로 달라졌다. 이때문에 物議도 있었으나 이는 美軍政當局이 그들대로 非常國民會議 소집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美·蘇共同委員會가 목적으로 하는 臨時政府의 母體가 될 수 있는 民族指導者의 집결체 조직을 추진하여 李承晩등을 설득해서 非常國民會議의 最高政務委員會를 위와같은 성격의 民主議院으로 발족시킨 것이므로 이는 앞서 본 랭든政治顧問의 行政委員會設立案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 나. 第1次 美·蘇共同委員會

모스크바 3 相會議決定 제 4 항 (南北韓兩地域에 관련된 긴급한 諸問題 및 美·蘇兩軍司令部 사이의 行政, 經濟分野에서의 協調方案을 토의하기 위한 會議開催)에 따른 美·蘇兩軍代表의 會議은 1月 16日부터 서울에서 열렸다. 그러나 兩國의 기본적 의견차이는 이 會議에서 곧 드러났다. 美國代表는 會議가 兩地域의 궁극적인 통합을 다루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蘇聯代表는 이 會議는 양지역간의 사소한 조정 이외에는

아무것도 토의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美国代表가 物資搬出問題를 토의하자고 하자 蘇聯쪽은 그것이 긴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고, 38線을 종래의 道境界에 따라 변경하자는 美国쪽의 제의에 대해 蘇聯쪽은 관심을 갖고 고려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美国쪽은 放送体系의 一元化와 南北韓을 통한 新聞의 자유로운 配布를 가능하게 하자고 제의했으나 蘇聯쪽은 그것은 이 會議의 權限밖의 일이라고 거부했고, 通貨의 統一 및 電話, 電報, 書信등의 교환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자고 美国쪽의 제의에 대해서는 蘇聯쪽은 그것은 긴급한 문제가 아니므로 보류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蘇聯쪽은 北韓의 石炭등의 물자와 南韓의 쌀을 교환하자고 제의했는데, 당시 南韓에는 많은 難民으로 말미암아 쌀의 여유가 없었으므로 美国쪽은 이를 거부했다. 그리하여 會議은 결국 2月 5일에 1個月이 내에 美·蘇共同委員會를 연다는 것과 우편물의 교환, 라디오周波數의 할당, 38度線往來, 北韓으로부터의 送電의 계속과 같은 제한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하고 폐회했다.<sup>115)</sup> 그러나 합의를 본 사항들도 뒤에 시행되지 않은 것이 많았다.

제 1차 美·蘇共同委員會는 3月 20日 서울에서 막을 열었는데 會議 첫날 蘇聯代表 스티코프는 『朝鮮에는 民主主義制度를 建立하려는 노력을 방해함을 목적으로 하는 反動的, 反民主的의 党派와 一部分의 分子的인 反黨으로 초래된 중대한 난관이 있다. 앞으로 수립될 民主臨時政府는 모스크바 3相會議의 결정을 지지하는 民主的 諸政黨 社会团体를 망라한 大衆團結의 토대 위에 창설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蘇聯의 목적은 『朝鮮이 蘇聯에 대한 攻擊基地로 되지 않는 友好的民主國家가 되게 함에 있다』고 말하여, 共委가 목적으로 하는 臨時政府의 설립에 反託主張者, 곧 右翼勢力이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뜻을 분명히 했다.<sup>116)</sup> 한편 美国은



「美国代表團의 목적에 관한 聲明」을 통하여 『表現의 자유는 절대적이야 하며 상대적이거나 例外로 左右되거나 해서는 안된다. ……南韓에서의 美国의 政策은 온건파전 과격파전, 資本家전 共產主義者전 모든 民主的그룹이 아무런 검열이나 制限없이 자기네의 黨을 결성하고 자기네의 會晤를 갖고 자기네의 演說을 방송하고 자기네의 思想 및 哲學을 선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들 自由의 보장은 美国民主主義思想에서의 基本的인 的의를 갖는다』고 聲明하고, 美国代表團이 의도하는 바는 『비록 아무리 잘 組織되어 있고 아무리 정력적으로 政治活動을 할지라도 少数派에 의한 韓國支配를 저지함에 있다』고 聲明했다. 17) 「表現의 자유」란 反託 右翼系에도 臨時政府 設립에 대한 發言權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비록 아무리 잘 組織되고」 「아무리 정력적으로 政治活動을 하는」 少数派란 共產黨을 가리킨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기본적인 立場의 대립 아래 共委는 進行되었다. 3月 21日과 24日에는 會議 進行을 위한 第1号, 第2号 共同聲明이 발표되고 30日에는 第3号 聲明이 발표되었는데, 第3号 聲明에 따르면 討議의 進行을 2단계로 구분해서 첫단계의 토의에서는 3相會議決定 第2項(韓國民主臨時政府의 設立)의 設立문제를, 다음 단계에서는 第3項(信託統治案作成問題)의 設立문제를 토의한다는 것이었다. 첫단계 - 이는 곧 臨時政府 設立의 手續의 토의를 뜻한다 - 는 ①民主的 諸政黨 및 社會 團體와 協議할 조건과 順序 ②韓國民主臨時政府의 機構 및 組織의 원칙과 臨時憲章에 의하여 組織될 各 機關에 대한 設立의 예비검토 ③장래의 韓國民主臨時政府의 政綱 및 적당한 法規에 관한 예비토의 ④韓國民主臨時政府關係에 대한 設立에 관한 토의의 四個項目으로서 이를 토의 하기 위하여 3個 分科委員會를 구성하여 第1分科委는 ①의 문제를, 第2分科



위는 ②의 문제를, 第3分科위는 ③의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會議은 美·蘇共위에 참가할 韓國의 政党 社会团体的 代表의 資格問題로 의견이 대립했다. 美国쪽은 南韓에서 구성된 民主議院에 北韓의 政党 社会团体的 代表를 추가해서 새로이 共위에 대한 協議委員會를 구성하고 臨時憲法의 준비도 이 協議委員會에 맡기자고 제의했다. 이 協議委員會 구성안에 대하여 蘇聯쪽은 그것은 朝鮮의 政党 社会团体들을 협의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으로 이는 모스크바協定 2項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또한 美国쪽은 臨時政府의 수립에 앞서 行政과 經濟를 統一할 것을 제안했는데, 그것은 모스크바會議에서 제안한 일련의 제의와 일관되는 것이었다. 이처럼 美国은 兩地域의 최종적인 統一 곧 臨時政府의 수립 이전에 그것의 기초적 조건이 될 現實問題를 단계적으로 解決하자는 주장이었는데, 이에 반하여 蘇聯은 「모스크바協定이 규정한 最優先의 과제는 朝鮮人에 의한 臨時政府의 樹立」이고 經濟 및 行政의 統一은 臨時政府가 수립된 뒤에 그 政府의 참가 아래 實現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여 政治的統合을 우선시키자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赤十字會談등 일련의 南北會談 進行과정을 연상하게 한다. 그러면서 蘇聯쪽은 共同委員會는 3相會議決定을 지지하는 政党, 社会团体만을 協議對象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했는데, 그것은 물론 美国쪽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다. 이에 대한 對抗策으로서 美国이 주장한 것이 앞의 「美国代表團의 목적에 관한 声明書」에서 본 「表現의 自由」의 論理였다. 118)

이렇게 하여 會議은 암초에 부딪치자 4月5일에 이르러 蘇聯쪽은 『3相會議決定에 반대했더라도 自己의 誤謬를 인정하고 3相會議決定을 지지한다고 声明하는 政党 社会团体와는 協議한다』는 修正案을 제시했다. 그

리고 다시금 共同委員會로서 政黨 社會團體와 협의할 조건을 토의한 결과 4月 17日 『그 目的과 方法이 명실공히 民主主義的이고 모스크바 協定을 지지한다는 聲明書에 署名하는 韓國의 個人 및 政黨 社會團體와 협의한다』는 합의에 도달했고 이는 18日 共同聲明 第5號로 공표되었다. 이 第5號 聲明에 따르면, 共委의 협의 대상이 될 團體 및 個人은 ① 3相會議決定 第1項에 明示된 目的을 지지하고 ② 3相會議決定 第2項에 따른 臨時政府樹立에 관한 共委의 決定을 준수하며 ③ 共委가 臨時政府와 함께 3相會議協定 第3項에 明示된 方案에 관한 提案을 作成하는데 協力한다는 내용의 宣言書에 署名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第5號 聲明이 발표되자 그동안 共委歡迎大會를 여는 등 共委에 적극 협력 자세를 보이고 있던 左翼勢力을 15日의 朝鮮共產黨의 署名을 필두로 일제히 署名手續을 끝냈으나 民主議院에서는 한때 의견이 갈리다가 결국 署名 拒否를 결정했다. 하지司令官은 이들을 說得하는 한편 27일에는 『宣言書에 서명하는 政黨과 社會團體에는 信託統治에 대해 贊成이나 反對의 의사를 발표할 특권을 보장하며, 共委와 協議하기 위하여 宣言書에 서명하는 것은 그 政黨이나 社會團體가 信託統治를 贊成하고 그것을 지지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宣言書에 서명하지 않으면 共委의 협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聲明했다. 그리하여 5月 1日 民主議院은 『五號 聲明書에 包含된 宣言書에 서명하는 것은 共委와 협의하여 臨時政府 樹立에 참가하여 信託統治를 반대할 수 있는 계기인 것을 확인하고 本院은 本院에 관계된 각 政黨과 團體에 대하여 共委에 참가, 협의함을 可타고 인정한다』고 聲明書를 발표하고 서명수속을 취했다. 119)

民主議院의 서명수속이 끝나자 共委는 각 政黨 社會團體 대표에게 제

출할 質問書를 작성할 것을 규정한 4月 24日부 第6号声明을 기초로 ①臨時政府와 地方行政機構의 組織과 원칙에 관한 問題 ② 臨時政府의 政綱에 관한 問題等を 내용으로 하는 第7号声明을 發表했다. 그러나 共委는 第7号 声明 發表뒤 停頓되고 말았는데, 그것은 蘇聯쪽이 앞서 본 民主議院의 声明書의 내용을 들어 民主議院과의 협의를 拒否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美国쪽은 政党 社会団体와의 協議問題를 뒤로 돌리고 占領地域間的 經濟的統一에 의한 38度線 철제문제를 먼저 토의할 것을 제의했으나 蘇聯쪽은 『共委는 朝鮮經濟의 統一問題를 討議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것은 장차 설립될 朝鮮政府가 스스로 토의할 問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美国쪽의 제의를 거부했다. 蘇聯쪽이 주장하기로는 美国의 이와같은 經濟的 統一 제의는 韓國의 全經濟管理를 美軍司令部의 統制아래 두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會議는 실질적인 문제에는 討議를 시작해 보지도 못한 채 5月 8日에 스티코프가 하자에게 北韓으로 帰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통고함으로써 마침내 無期休會에 들어가고 말았다. 120)

#### 다. 左右合作과 北韓의 「民主基地」政策

美·蘇共同委員會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도 北韓에서는 소비에트型 體制가 급속도로 구축되어 갔다. 2月에 발족한 臨時人民委員會는 발족과 동시에 反民主主義分子의 肅清, 土地改革의 실시, 모스크바 3相會議 決定의 真意의 大衆的解説事業의 전개등 「10個綱領」을 채택하고 3月 15日에는 이를 더 확대한 「20個政綱」을 발표하는등 北韓을 「民主基地」로 건설할 것을 표방한 基本政策이 추진되었다. 가장 먼저 착수한 事業은

土地改革으로서, 3月 5日 無償沒收, 無償分配의 土地改革法令을 발표하고 나서 2個月 남짓한 4月 13日에는 이미 「土地改革事業의 總結」을 위한 北朝鮮臨時人民委 제 2차 擴大委員會를 여는 형편이었다. 그리하여 美·蘇共委의 決裂과 더불어 6月 5日에는 面郡市道の 정식 人民委員會의 選舉를 실시한다는 選舉法令이 발표되고, 6月 24日에는 「北朝鮮勞動者 및 事務員에 대한 勞動法令」이 발표되어 모든 勞動者, 事務員들이 職業同盟(朝鮮勞組全國評議會 北朝鮮總局이 46年 5月 26日에 北朝鮮職業同盟이라는 獨立組織으로 바뀌어졌다)으로 組織되게 되었다. 이어 7월 30日에는 男女平等權에 대한 法令이 발표되고 8月 10日에는 <産業 交通 運輸 通信 銀行등의 國有化에 관한 法令이 발표되어 「日本國家와 日本人의 私人 및 法人등의 소유 또는 叛逆者所有로 되어 있는 일체의 企業所, 鉦山, 發電所, 鐵道運輸, 通信, 銀行 産業 및 文化機關」을 國有化했다. 이처럼 급격한 國有化政策이 가능했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解放 이전의 北韓의 거의 모든 主要工業이나 自然資源 動力 鐵道 電氣 등의 公益施設이 日本政府나 日本人의 所有였으므로 『韓國의 共產主義는 사실상 세계의 어느 곳에서 보다 出發이 有利했기』 때문이다. 121)

이러한 北韓의 소비에트化的 중심세력은 물론 직접 蘇聯軍의 지원을 받은 一團의 共產主義者들이었으나, 위와같은 政策을 수행하기 위한 大衆的基盤의 강화를 목적으로 7月 22日에는 北朝鮮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그 기반위에서 8月 30日에는 朝鮮共產黨北朝鮮分局과 延安派의 新民黨(獨立同盟의 後身으로 1946年 3月 30日 創黨)이 合黨하여 北朝鮮勞動黨(委員長=金枋鳳, 副委員長=金日成, 朱寧河)을 결성했는데, 이는 黨體制에 있어서도 共產黨의 「서울中央」理論을 배제하고 北韓單獨의 共產黨을 결성한 것이다. 이와같은 北韓의 급격한 소비에트



化는 앞서 본 蘇聯의 기본적인 占領政策에 입각한 것으로, 全韓國에 걸쳐 어떤 형태로든 統一施政이 수립되기 이전에 北韓을 이른바 蘇聯에 友好的인 「民主基地」로 구축해 놓으려고 한데서 취해진 조치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폴리特使가 『그들(蘇聯軍 - 筆者)은 信託統治의 實施 臨時政府와 같은 어떤 制度의 설립 또는 北韓에서 그들 자신의 보루를 구축하는데 무슨 方法으로나 지장이 될지 모를 어떠한 行動에 있어서도 美國과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명백히 기피하고 있다』<sup>122)</sup> 라고 판단했듯이, 全韓國의 共產化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北韓만의 单独政權이 되어갈 것은 당연한 귀추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美國은 美·蘇共委의 결렬을 계기로 이러한 北韓의 상황을 감안하여 南韓에 韓國人の 代表機關을 수립할 계획을 추진했다.

5月 22日의 3省(國務, 陸軍, 海軍) 長官會議의 韓國에 관한 覚書에 따르면, 國務省極東局은 이미 美·蘇共委의 장래의 성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南韓에 즉시 選舉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는데, 그 選舉란 「國家政府를 위한 것은 아니나 獨逸에서 실시된 것보다는 더 高次元의 政治職을 위한」 것이었다.<sup>123)</sup> 이러한 구상은 물론 現地軍政當局의 보고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이겠는데, 모스크바 3相會議 이전부터 行政委員會設置 등을 제의하고 美·蘇共委에 앞서서는 民主議院을 구성시켰던 現地軍政當局은 美·蘇共委가 결렬한 뒤인 5月 24日에 랭든政治顧問의 國務長官에게 보낸 보고를 통하여 『蘇聯은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에서의 統一戰線政策과 약간 다를 뿐인 政策을 韓國에서 강행할 의도임이 너무나 명백하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政策을 수락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분명히 全半島에 대한 蘇聯의 지배를 촉진시키고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다』고 말하면서 만일 共產黨과의 合作

없이도 諸愛國政黨的의 만족스러운 統合이 달성될 수 있다면, 하지 장군은 모스크바決定에 의한 統一臨時政府의 設立 이전의 기간에 자기의 最高權限 아래 法令을 제정할 韓國人의 行政不參的內閣 ( Nonadministrative Cabinet ) 과 立法機關을 창설함으로써 그들의 참여를 증대시킬 것을 計劃하고 있다고 말했다. 123)

1946年 5月 25日 民主議院의 金奎植과 民戰의 呂運亨의 會談으로 시작되는 左右合作運動은 美國의 이러한 政策에 의한 것이었으며 李承晩이 地方遊說중인 6月 3日 『이제 우리는 無期休會된 共委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統一政府를 고대하나 如意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南쪽만이라도 臨時政府 或은 委員會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以北에서 蘇聯이 철퇴하도록 世界公論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다』고 한 이른바 井邑発言도 美軍政當局의 이러한 政策과 無關하다고 보기 어렵다.

共産黨과 과격한 反託論者를 배제한 諸政治勢力을 통합하여 美軍政의 支持基盤으로 삼을 목적 아래 추진된 左右合作運動은 우여곡절 끝에 10月 4日에 이르러 左右合作委員會의 이름으로 ①朝鮮의 民主獨立을 보장한 모스크바協定에 따라 南北을 통한 左右合作에 의하여 民主臨時政府를 수립할 것, ②土地改革에 있어서는 沒收, 有條件沒收, 遞減買上등으로 얻은 土地를 農民에게 無償으로 분여할 것, ③朝鮮全域에 걸쳐 言論 出版 集會 結社 交通 投票등의 自由를 보장할 것 등의 7個項의 「左右合作7原則」을 발표했다. 125) 그러나 이 7原則은 共産黨과 李承晩, 金九등의 極右勢力의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역시 信託統治問題와 土地改革問題였다. 共産黨과 極右勢力이 不參한대로 左右翼의 온건파들의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美軍政은 8月 24日에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創設」에 관한 軍政法令

118号를 공포했고, 이에 따라 12月 12日에 民選議員 45名, 官選議員 45名으로 구성된 立法議院(議長=金奎植, 副議長=崔東旽, 尹琦燮, 呂運亨은 官選議員選舉에 不滿을 품고 辭退)이 발족했다. 그리고 1947年 6月 3日에는 美軍政庁이 南朝鮮過渡政府(民政長官=安在鴻)로 改稱되었다.

美軍政의 이러한 左右合作工作은 그 자체로서 큰 成果를 보지 못한채 결과적으로 建準, 人共, 民戰등을 통하여 같은 行動을 취해 온 左翼勢力을 분열시키는 効果는 있었으나 분열되어 一般民衆들에게 큰 영향력을 發揮하고 있던 李承晩과 金九를 「過議分子」라고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美軍政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던 韓民黨系 마저 제외시킴으로서 기본적으로 美國에 協調的인 右翼勢力의 균열을 초래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北韓에서는 11月 3日에 道市郡人民委員會의 選舉가 실시되고 이어 47年 2月에는 面里(洞) 人民委員會의 선거를 實施했다. 그리고 47年 2月 17日에는 道市郡人民委員會大會를 열어 最高立法機關으로 北朝鮮人民會議을 설치할 것을 결의하고, 21日에 소집된 同會議(常任委員長=金料鳳, 副委員長=崔鏞健, 書記長=康良煜)에 의해서 「臨時」자를 없앤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金日成, 副委員長=金策, 洪箕疇)가 설립되어 「人民經濟 1個年計劃」을 채택하고 12月 1日에는 新貨幣를 발행했다. 교환된 旧貨幣는 그것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던 南韓의 工作金으로 流入되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라. 共産黨의 「新戰術」과 10月暴動

제 1차 美·蘇共委가 無期休會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共産黨의 貨幣偽造事件(精版社事件)이 발생하자 美軍政當局은 黨幹部들에게 逮捕令을

내리고 機關紙 「解放日報」를 停刊시키는등 共産黨에 대하여 단호한 방침을 취했다. 이처럼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자 共産黨은 그들대로 朴憲永이 7月 22日에 평양을 訪問하고 와서 지령한 이른바 「新戰術에 대한 指示」에 따라 行動하게 되었다. 「新戰術」이란 지금까지 이른바 「國際民主主義」路線에 입각하여 美軍을 解放軍으로 규정하고 合法運動을 표방해 왔던 방침을 바꾸어 「美帝國主義打倒」를 명확히 표방하면서 暴力鬭爭을 전개하는 일이었다. 朴憲永의 「新戰術에 대한 指示」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共委休會와 共産黨貨幣事件으로 大衆들의 共産黨에 대한 非難攻擊이 심하여져 黨의 獨立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守勢를 취하였으나 그 守勢는 積極的攻勢를 준비하기 위한 守勢였다. 8.15이후 전면적으로 전개하였던 協調合作路線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 2) 美國의 杜魯門政策이 帝國主義的, 反動的路線으로 전환하였으므로 中國共産黨, 日本共産黨과 긴밀히 연결하여 極東에서의 反美運動을 적극화할 것
- 3) 南朝鮮에서도 北朝鮮에서와 같이 諸般制度를 무조건으로 改革할 것을 강력히 要求抗議할 것
- 4) 美帝國主義政策의 구체적내용을 해부하여 暴露하고, 共委休會의 원인도 國內反動陣營에만 돌리지 말고 美國代表의 國際的謀略과 反動性을 결부하여 民衆에게 暴露하고 郡衆을 組織化하고 國內外輿論과 우리의 적극적 要求로써 우리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확실히 입각하여 大衆의 강력한 鬭爭을 전개할 것
- 5) 宣傳教養解説의 중심점을 3相決定支持實踐에만 두지 말고 구체적으

로 北朝鮮의 制度를 선전하여 南朝鮮의 무조건적인 北朝鮮化를 도모할 것.

6) 현재까지의 無抵抗적인 態勢를 청산하고 적극적 攻擊態勢를 취하고 右翼陣營에 大打擊을 줄 준비를 갖추고 指導者가 反動警察에 검거될 때에는 奪取運動을 강력히 전개할 것

7) 南朝鮮의 모든 과탄은 그 최고원인이 經濟의 集中的表現인 政治的 權力이 軍政 및 軍政下에 있는 新·旧派 民族反逆者들에게 있는 까닭이므로 『政權을 軍政으로부터 人民委員會에 넘기라』는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sup>126)</sup>

共産党的 이러한 「新戰術」은 蘇聯 占領當局의 方針에 의한 것이었는데, 朴憲永은 26日에 이 「新戰術」을 指示하고 나서 呂運亨과 金奎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던 左右合作運動을 批判하는 한편 北韓에서 北朝鮮勞動黨이 결성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南韓의 左翼3黨(朝鮮共産黨, 朝鮮人民黨 및 白南雲, 許憲등의 南朝鮮新民黨)의 合黨工作을 추진했다. 左翼3黨의 合黨問題는 실은 呂運亨이 이끄는 人民黨이 8月3日에 『北朝鮮에서는 土地改革, 重要産業의 國有化, 勞動法, 男女平等權法 등의 실시로서 民主主義의 근본과업을 실현하는 도정에 있으며 南朝鮮에서도 民主主義民族戰線을 중심으로 한 8백여만의 人民大衆이 집결되어 진정한 民主主義運動의 거대한 勢力을 형성하여 그 과업완수에 매진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우리는 民主主義的建設을 現단계의 과업으로 하고 있는 이상 그 勢力을 分散시키고 때로는 無用의 마찰을 가져올 우려가 없지 않은 政黨의 創立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反動輩들의 이간과 모략을 봉쇄하는 의미에서도 우리 民主主義各政黨은 . . . 하나의 거대한 政黨으로 合同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바이다』라고 말하면서 共産黨과 新民



党에 먼저 제의하고 共産党和 新民党이 이 제의에 찬성했던 것이다.<sup>127)</sup>  
 共産党이 「新戰術」을 채택한 이후로 「左右合作에 의한 平和的統一政府  
 樹立」을 주장하는 呂運亨과 「暴力革命」을 주장하는 朴憲永의 대립으로  
 좀처럼 진척되지 않다가 9月 4日에 이르러 呂運亨이 자기가 주도하는  
 人民党的 党首職을 辭退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거쳐 南朝鮮勞動党(委員長  
 =許憲, 副委員長=朴憲永)으로 合同했고, 10暴動을 거쳐 11月 23日에 정  
 식으로 結成대회를 열었다. 그런데 南朝鮮勞動党的 結成단계에 이르러서  
 는 朴憲永이 「新戰術」에서 「南朝鮮의 무조건적인 北朝鮮化」를 강조하  
 고 있는데서 보듯이 이미 南韓의 共産党은 「서울中央」의 고정관념을  
 포기하고 蘇聯軍의 직접 지도를 받고 있던 北朝鮮當局에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다. 南勞党的 組織機構는 물론 全党大會(年1回)를 最高決議機關으  
 로 하고 그 밑에 中央委員會(3個月에 1回)를 두었으나 이는 규약대  
 로 소집되지 않았고 실제의 行動指令은 평양의 蘇聯軍司令部政治部에로부  
 터 海州의 朴憲永指導部(9월에 逮捕令이 내린 이후 차은 海州로 피신  
 해 있었다)를 통하여 하달하게 되어 있었는데, 蘇聯軍司令部政治部는 前  
 서울駐在領事 싸부싱이 주재하고 있었다.<sup>128)</sup> 뿐만 아니라 金日成이 뒷  
 날 朴憲永을 숙청하면서 9月末부터 시작된 10月暴動과 관련하여 『勞  
 働者の 罷業鬭爭을 10月の 農民秋收鬭爭과 결합시키기 위하여 10월에  
 행하도록 지도했는데도 朴憲永은 党的 指導方針을 고의로 歪曲하였다』<sup>129)</sup>  
 고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朴憲永의 「新戰術」지령이후로 共産主義者들에 의한 테러行爲는 더욱  
 격렬해져 갔는데 左右翼勢力의 타협할 수 없는 分水嶺을 이룬 것이 9  
 月하순에서 11月末까지 걸쳤던 暴動事態였다. 9月 24日의 釜山鐵道勞  
 組의 罷業을 선두로 全鐵勞組가 總罷業에 들어가고 이에 호응하여 25일

에는 서울에서 出版勞組의 罷業, 各級學校의 同盟休校, 京城電氣從業員罷業 등이 잇따랐고, 10月1日에는 大邱에서 全評指揮下에 「南朝鮮罷業共同闘争委員會」라는 간판을 내걸고 약 1만5천명의 群衆을 동원하여 警察과 대치했다. 勞組와 警察간부간에 協商交渉이 失敗하자 警察은 示威群衆에게 突進하기에 이르렀고, 그러자 이튿날 示威群衆은 大邱警察署를 습격하여 武器를 탈취하고 警察官과 그들의 家族들을 殺害 拉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美軍이 직접 出動함으로써 사태가 수습되는듯 했으나 곧 慶北一帶의 警察署가 群衆의 습격을 받고 많은 死傷者와 함께 6천여명이 檢挙되었다. 이 사태를 계기로 暴動은 全國各地로 확대되어 갔고 특히 全南地方의 騷擾가 심했다. 暴動에 가담했다가 警察의 逮捕가 두려워서 山岳地帶로 피신한 많은 人員들은 뒤에 共產黨치산要員이 되었다.<sup>130)</sup> 이 10月暴動(北韓에서는 이 事件을 「10月人民抗爭」으로 부르고 있다)은 糧穀不足, 격심한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生活苦에 기인한 自然發生的인 요소도 없지 않았으나, 그것을 선동하고 조직한 것이 共產黨이었음은 示威群衆들의 要求事項속에 『政權은 人民委員會의 손에 넘기라』 『朴憲永의 逮捕命을 취소하라』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거의 전국적으로 騷擾事態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 左右合作委員會는 事件의 真相을 규명하고 그 對策을 강구하기 위한 韓·美共同會談을 개최할 것을 건의하여 10月23日부터 러취軍政長官을 비롯한 美軍政當局代表 10人和 金奎植, 呂運亨, 安在鴻등 左右合作委代表 10人이 會談을 갖게 되었는데, 이 會談은 『8.15解放이후 韓國側이 美軍政을 상대로 公式會談을 가진 것으로는 처음 있었던 會談』인 셈이다.<sup>131)</sup> 1개월가까이 계속되던 韓·美共同會談은 立法議院開院을 앞두고 마감하기로 하고 하지에 게 제출할 共同決議案을 제출했는데(票決에서는 10대 10同數로 하지의

最終決斷에 넘겼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은 10月暴動이 비록 共産黨의 선동에 의하여 촉발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을 가능하게 한 美軍政의 문제점을 짐작하게 한다.

- 1) 警察에 대한 怨恨 : 警察人事에 있어 日帝警察出身, 특히 日帝下에서 抗日愛國者를 탄압하고 박해하던 日帝의 惡質高等警察出身을 解放된 令日 警務部當局이 등용하여 특히 査察警察의 一線에 배치되어 비록 共産主義者라 할지라도 그들이 警察技術者라는 명목으로 그들을 逮捕拷問하는 사실은 韓國人의 感情을 지극히 손상시켰으며, 그 결과는 軍政警察에 대한 一般民衆의 反感을 사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 2) 軍政庁内 前親日派의 殘留 : (略)
- 3) 軍政庁内 通譯의 影響 : (略)
- 4) 어떤 朝鮮人官吏의 腐敗 : 広範圍하게 행해지고 있는 官吏의 贈賄 買収 등 각종 腐敗와 非行, 특히 帰屬財産처분에 따른 不正事件은 軍政内部의 韓國人, 美國人이 다 함께 관련되어 있으므로 官公吏에 대한 監視를 嚴重히 하여 그 擴大를 방지하고 嚴重 단속할 것.
- 5) 朝鮮의 福利에 반대하는 煽動者 非合法的暴力에 의한 共産主義者들의 破壞的 行동을 방지할 것.

위의 5개항의 建議와 함께 食糧行政의 -Jul렬로 인하여 食糧事情의 惡化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과 騷擾의 責任者로 警務部長 趙炳玉의 引責罷免을 요구했으나 趙의 파면은 실현되지 않았다. 132)

그러나 美軍政은 左右合作에 의한 中間派勢力으로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설치계획을 추진하여 間接選舉를 통한 民選議員 45名과 官選議員 45명으로 구성되는 立法議員을 12月12日에 발족시켰다. 그러나 이 立法議

院의 설치에 대해서는 하지와 리취가 『이는 行政權移讓의 한 단계이며 人民이 政府運營에 참여하는 民主主義的 發展의 한 표현으로서, 南朝鮮單政이나 기타 아무런 다른 목적이 없다』고 거듭 성명했으나 左右兩勢力에서 非難이 많았고 左右合作委의 呂運亨등도 『議員명부에 유명한 親日派가 들어있는 것은 유감이다』고 말하면서 官選議員職을 거부했다. 그리하여 46年 12月 12日에 개원하여 大韓民國政府樹立 직전인 48年 5月 20日에 폐원될 때까지 291회의 會議를 열었으나 47年 1月の 信託統治反對決議와 48年 5月 10日의 總選舉를 위한 選舉法制定이외에는 실질적인 기능은 행사하지 못했다.<sup>133)</sup>

#### 마. 第2次 美·蘇共同委員會

南韓의 情勢가 左右翼의 타협할 수 없는 對立狀으로 치달고 있는 동안에도 美蘇共委의 再開를 위한 하지와 치즈차코부간의 交渉은 계속되었으나 兩司令官의 主張은 제 2차 合議결 열때의 主張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한편 美軍政의 지원아래 左右合作運動이 추진되면서 共委再開를 요구하는 主張도 많았으나 그러한 추세와는 달리 李承晩과 金九勢力에 의한 自律政府樹立運動도 한결 積極성을 띠고 추진되었다. 地方遊說중의 유명한 井邑 発言에서 『이제 우리는 無期休會된 共委가 再開될 氣色도 보이지 않으며 統一政府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南方만이라도 臨時政府 或은 委員會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以北에서 蘇聯이 철퇴하도록 世界 公論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다』고 했던 李承晩은 서울에 돌아 오자 6月 25日에 金九와 더불어 民族統一總本部를 조직하고 12月에는 하지의 反對를 무릅쓰고 渡美하여 워싱턴에 머물면서 「獨立外交」를 전개했다. 그리고 金九



는 또다시 反託運動을 벌여 各地에서 左右衝突이 벌어지고 47年에 접어들면서는 臨時政府의 「主權宣言」이 云謂되는등으로 政局은 하지司令官 자신이 1947年 1月에 본국정부에 대해 『美·蘇의 협력으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한국은 아마 내란에 빠질지 모른다』라고 보고할 정도로 混亂했다.<sup>134)</sup> 그리하여 美國은 停頓상태에 빠진 現地軍 레벨에서의 접촉을 政府間交渉으로 바꾸어 마셜國務長官과 몰로토프蘇聯外相 사이에 書翰交換이 시작되었다. 4月과 5月 사이에 각각 두 차례씩의 書翰交換에서 『공동성명 第5号에 규정된 宣言文에 서명한 政黨과 社会团体는 最初協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그 대표가 모스크바 결정의 실행에 있어서 또는 연합국에 대하여 相反될 때 美·蘇共委는 협의에 따라 이를 交代시킬 수 있고, 모스크바 결정을 反對 教唆하거나 선동하는 자는 除外하는데, 그 경우는 共委의 同意아래 행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1947年 5月 21日에 제 2차 美·蘇共同委員會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다.

再開된 美·蘇共委는 26日 第9号声明(2次共委의 첫声明)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第1段階로 協議事項을 臨時政府 設립준비안에 국한한다는 것과 議事進行方案, 書記局 및 分科委員會設置方法등을 규정한 것이었다. 第9号声明發表 이후의 討議에서 協議對象의 성격과 범위에 대하여 소련 쪽은 重要政黨만을 對象으로 하는 少数協議体案을 주장하여 討議가 잠시 중단되었으나 결국 「広範圍한 토대위에서 협의한다는 原則」에 합의하고, 이를 제 10호 声明으로 발표했다. 이어서 발표된 제 11호 성명을 民主的政黨 및 社会团体는 共委와의 協議에 참가하기 위해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거나 또 그에 협력한다는 宣言書에 署名, 捺印하고 참가에 관한 청원서를 6月 23日까지 서울 또는 평양에 제출하며, 이러한 수속을

완료한 政黨團體는 臨時政府의 憲章 政綱에 관한 答案을 작성하여 7月 1日까지 제출한다는등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共委의 의사진행의 큰 난관이었던 제 5호 聲明에 대한 署名問題가 해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共委의 진전은 右翼反託 진영에 큰 충격이었다. 그리하여 韓民黨은 그들이 지지하는 李承晩과 金九의 不參態度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도자 李承晩박사의 주장하는 總選舉에 의한 統一政府樹立을 共委內部에서 관철코자 함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共委의 초청협약에 응할 것을 결정했고,<sup>135)</sup> 이에 따라 反託陣營에 속했던 1百 70여 政黨 社會團體도 행동을 통일하여 共委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여 共委는 예정대로 6月 25日과 7月 1日에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南北에所在하는 각 정당 社會團體와의 合同會議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정식의 個別的口頭協議의 절차와 방법을 지지하기 위한 予備會議였는데, 이는 곧 임시정부 수립문제가 새로운 단계에 이른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共委가 「広範圍한 토대위에서 협의한다는 原則」에 따라 協議對象者名簿作成 문제를 본격적으로 토의하기 시작하자 다시금 美·蘇의 의견대립이 표면화하여 第1次共委때와 똑같은 論爭을 되풀이 하게 되고 말았다. 7月 16日의 미국대표의 성명에 따르면, 소련측은 協議對象 명부에서 社會團體로 規定할 수 없는 團體, 地方的 내지 순전한 한 地域의 단체 및 모스크바決定을 지지할 의사가 없는 團體, 특히 反託鬭爭委員會 및 유사한 단체의 회원등을 제외 할 것을 주장했고 이에 대해 美國측은 모스크바 결정에는 「社會團體」라는 개념의 해석이 없고 反託鬭爭委員會가입단체라도 宣言書에 서명한, 아상 最初協議에의 참가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때부터 委員會가 臨時政府憲章 및 政綱을 작성해서 4大國

에 제출하고 남북한총선거 실시를 준비할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타협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소련측은 ① ②에는 반대하고 ③의 (가)에 대해서는 贊成했으나 (나)에 대해서는 모스크바 決定을 지지하는 남북한의 政党 社会团体的 代表者同수로 구성되는 臨時議會 (Provisional assembly)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소련측의 同數案에 대해 공동성명 대신 서로 責任전가와 反論의 一方的인 聲明이 되풀이 되고 회의는 다시금 停頓되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8月 12日에 부라운 美代表는 ① 共委는 南北韓의 团体와 각각 별도로 협의할 것 ② 소련측이 인정하지 않는 政党团体에 대해서는 美国쪽이 单独協議를 행하여 그것을 共委의 協議로 간주할 것 ③ (가) 口頭協議대신 諮問書에 의해 答申하게 할 것 (나) 第2分科 美国쪽은 다시 남한의 人口의 優位를 들어 3대 2의 臨時政府閣員 構成을 제의 했으나 소련은 이를 거부했다. 136) 이렇게 하여 第2次 美·蘇共委도 끝장이 나고 말았다.

交渉은 다시 政府間交渉으로 옮겨져 8月 26日에 美国務次官 로베트는 9月 8日에 워싱턴에서 4大国会議를 열것을 몰로토프에게 제의했는데, 同會議의 議題로 美国이 제의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 1) 美 蘇의 兩占領地域에 각각 臨時立法機關을 구성하기 위한 선거를 빠른 시일안에 실시한다. 投票는 보통선거에 입각하여 複數政党에 대한 無記名秘密投票로 하고 選舉는 各地域内の 現立法機關이 채택한 法律에 따라 실시한다.
- 2) 이들 地域別臨時立法機關은 兩地域別人口比例에 따라 일정수의 代表를 선출하고 이들 代表로 하여금 全國的인 臨時立法機關을 구성하게 한다. 이 立法機關은 서울에서 회합하여 統一韓國의 臨時政府

한 對抗策으로 9月26日의 共同委員會에서 韓國에 주둔하는 모든 占領軍을 1948년초에 동시에 철수시키자고 제안했다. 共委의 美國代表가 그러한 協定에 들어갈 권한을 갖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蘇聯은 이 제의를 몰로토프를 통하여 로베트에게 통달되었다. 그러나 로베트는 原則問題가 國聯에 상정되어 있는 동안 美國은 별도의 協定을 맺을 수 없다고 이를 거부했다. 결국 9月 24日에 國聯運營委員會는 韓國問題를 議題로 결정하고 이어 「國聯監視下의 人口比例에 의한 南北韓의 총선거」案이 확정되어 갔다. 그러나 소련의 同意가 없는한 南北韓에 걸친 총선거는 실현불가능한 일이었고 同案에 소련이 反對한 이상 그것이 실행되리라고는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139)

그런데 占領軍의 철수문제는 美國政府로서도 이미 검토되고 있는 문제였고 韓國問題의 國聯移管도 韓國 獨立에 대한 責任을 國際聯合에 전가시킴으로써 美國의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韓國으로부터 빠져나가려는 政策的인 配慮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韓國問題의 國聯移管은 後日 닉슨 독트린으로 구체화하는 美國의 對아시아政策의 原形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를 수립한다.

- 3) 統一韓國의 臨時政府는 韓國에 대한 모스크바決定을 준수하는 4개국 代表와 韓國에서 회합하여 韓國獨立의 總濟的 및 政治的基盤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어떤 援助가 필요하며 또 그 원조는 어떤 조건으로 주어져야 할 것인가를 討議한다.
- 4) 이상의 모든 단계에서 國際聯合을 擘서버로 참석하도록 초청한다.
- 5) 韓國臨時政府와 4 大國은 外國占領軍이 철수할시기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 6) 兩地域의 臨時立法機關으로 하여금 臨時憲法을 기초하도록 권고하며 全國臨時立法機關이 全韓國을 위한 憲法을 제정할 때에 사용될 기초가 되게 한다.
- 7) 統一獨立韓國이 수립될 때까지 兩占領地域内の公私의 韓國機關은 國聯에 의하여 창설되거나 그 산하에 있는 國際機構와 협의할 수 있게 하며 적당한 경우에는 公式的인 國際會議에 韓國人 擘서버를 참석시킨다. 137)

그러나 몰로토프는 9月4日字 회신에서 이 제의를 단호히 거부했다. 모스크바協定은 韓國獨立의 첫 단계로 共同委員會를 규정했으며 이 문제에 대한 다른 어떤 접근법은 협정위반이라는 것이었다. 138) 그리하여 美國은 韓國問題에 대한 蘇聯과의 직접 협상을 포기하고 9月 17日에 國際聯合에 상정시켰다. 마셜國務長官은 제안설명에서 『韓國問題는 美·蘇兩國의 交渉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總會가 信託統治期間없이 韓國獨立을 달성시키는 조치를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비산스키蘇聯代表는 韓國問題의 國聯移管은 모스크바協定違反이라고 반대하고 그 철회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蘇聯은 美國의 方針에 대

#### 4. 美國의 對韓政策轉換과 蘇·北韓의 戰爭準備

##### 가. 美國의 撤軍計劃

47년 3월의 트루만 독트린 宣言 이후로 美國政府는 韓國問題를 주로 極東에서의 對蘇戰略과 결부하여 檢討하였다. 그것은 가령 47년 3월 13일에 그리스와 터키의 '援助에 관한 上院外交委員會에서 애치슨이 『世界에는 우리가 직접 접근할 수 없는 地域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에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들은 蘇聯의 軍事支配圈안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그밖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 하나는 韓國이다. 그곳이야말로 蘇聯과 우리와의 사이에 명확한 一線을 그을 수 있는 또하나의 장소라고 생각한다』<sup>140)</sup>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그로부터 1개월 뒤인 47년 4월 단계에 이르러서는 國務省의 東歐問題担当者의 보고가 경고한 것처럼 「全世界가 주시하는 속에서 韓國이 東西 對立의 象徴」이 되어 가고 있을 때에 오히려 美國政府의 對韓政策은 급속히 冷却해졌다. 4월 4일에 패터슨 國防長官은 마셜 國務長官에 대해 議會에서 승인된 규모의 國防豫算으로서는 占領費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占領의 부담에 비하여 南韓의 戰略的 重要性이 없다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時日안에 駐韓美軍을 철수할 것을 건의했다.<sup>141)</sup> 사실 트루만 독트린의 실질적인 목적은 당시 격심한 經濟危機에 빠져있던 西·歐를 원조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이러한 西歐우선主義는 外交와 經濟面에서 뿐만 아니라 軍事面에서도 반영되어 46년 6월까지 戰後의 計劃試

案으로 채택된 軍의 計劃에서는 「西歐에서의 戰略的攻勢와 極東에서의 戰略的防禦」가 기본방침으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基本計劃에서는 韓國은 西歐, 터키, 地中海, 北아프리카등을 포함한 11개 危險地点 가운데에서 비중이 가장 낮은 편이었고, 合同戰略調整委員會의 要約에서도 韓國은 美國의 國家利益으로 보아 16 국가가운데에서 「끝에서부터 두 번째」의 낮은 순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sup>142)</sup> 第2次 美蘇共委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무렵인 47년 8월 4일에 3省調整委員會는 『韓國을 蘇聯의 支配下로 포기하지 않으면서 되도록 빠른 時日안에 韓國에서의 人員과 費用의 介入을 청산내지 감축할 모든 努力을 해야한다』면서 國務省이 韓國問題를 國聯에 제의할 것을 준비할 作業班을 즉시 구성하라고 건의했다.<sup>143)</sup>

이 무렵에 작성된 각종 狀況判斷書나 政策建議書 가운데에서 이후의 미국의 對韓政策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이 「웨드마이어報告書」이다. 트루만 대통령은 마아설의 권고에 따라 44년부터 46년까지 중국지구 미군사령관겸 蔣介石총통 참모장을 지낸 바 있는 제2군사령관 앨버트 웨드마이어에게 「현재와 장래의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군사적 정세의 평가」를 위하여 중국을 視察하고 歸路에 韓國에 들러 對韓經濟援助計劃에 관련된 제반 정세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는데, 웨드마이어는 약 두달동안(한국체제는 1주일) 中國과 韓國을 視察하고 돌아가 9월 19일에 報告書를 제출했다.<sup>144)</sup>

이 웨드마이어報告書는 이후의 美國의 對韓政策의 原型이 되었는데, 웨드마이어는 美國政府가 모스크바會議決定에 따른 臨時政府의 조속한 수립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하며, 그와 아울러 南韓의 政治, 經濟 軍事情勢의 改善에 필요한 원조를 해야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美国이 經濟自立의 전망이 희박한 南韓을 끝까지 支援하려 한다면 救護方式의 援助를 계속하는 길밖에 별 도리가 없다. 南韓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과 더불어 韓半島의 군사정세는 미국의 戰略的 이해 관계에서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蘇聯軍이 北韓을 계속 점령하고 있는한 美国은 南韓에 군대를 유지하거나 세계 앞에 「이데올로기의 후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美国의 軍事的 立場은 極東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 . . 위에서 지적한 것과 점령이 仮想敵國의 不凍港使用 및 강력한 공군과 해군기지 설치의 기회를 막는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美国이 韓國에 軍隊나 基地를 유지하더라도 군사적 이익은 거의 없다. 極東에 큰 敵對行爲가 發生하는 경우 韓國에 있는 現兵力은 우리의 지금의 군사력으로는 그 곳에 유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군사적 부담이 될 것 같다. 駐韓美占領軍에 관한 조치로는 세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다.

첫째는 당장 철수시키는 방법. 이는 南韓을 北韓人民(共產)軍의 壓力을 통하여 소련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戰略的 陣地에서 채택될 수 없는 方法이다.

둘째는 占領을 무기한으로 계속하는 方法. 이는 蘇聯軍이 철수하고 나면 美国國民들이 용납할 수 없고 또 美国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方法이다.

셋째는 蘇聯占領軍과 동시에 철수시키는 方法』

워드마이어는 세계 案을 채택할 것과 그것은 오히려 蘇聯과의 協定에 입각하여 實行하되, 철수하기 전에 南韓國防力의 건설과 訓練을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145)



『웨드마이어報告書』의 이러한 건의내용은 뒤이어 작성된 合參本部和 国家安全保障會議가 작성한 政策文書에 그대로 反映되었다. 韓國問題를 國聯總會에 上정시키기 직전에 國務省은 「美國의 軍事的安全의 견지에서 본 南韓軍事占領의 利益」에 대한 合參本부의 견해를 물었는데, 9월 26일 자의 合參本부의 回信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合參本부는 군사적 안전의 견지에서 美國이 韓國에 현재의 兵力과 基地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戰略的利益은 다음과 같은 理由로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極東에서 戰爭事態가 發生할 경우 韓國에 있는 現兵力은 군사적 부담이 되며 戰爭事態가 發生하기 전에 本格的인 보강을 하지 않고는 그곳에서 유지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美國이 아시아大陸에서 攻撃作戰을 전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마 韓半島를 우회하게 될 것이다.

한편 만일 敵이 韓半島에 強力한 海軍 및 空軍基地를 설치하여 유지할 수 있게 되면 東部中國 滿州, 黃海, 東海 및 인접도서에서 美國의 수송과 作戰을 방해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방해는 航空作戰에 의하여 無力化되기 쉬운 地域에 敵이 막대한 공군과 해군을 유지시키지 않고서는 不可能하다. 航空作戰에 의한 無力化는 대규모의 地上作戰보다 실시하기 쉽고 손실도 적을 것이다.

현재의 심한 兵力不足에 비추어 지금 南韓에 駐屯시키고 있는 2個師團 총계 약 4만 5천명은 다른 지역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들 군대를 한국에서 철수시키더라도 그 결과로 蘇聯이 南韓에 日本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력을 설치하지 않는한 美極東軍의 군사적 지위는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로는 韓國占領은 美國의 안전에 아무런 利益도 없으면서 우리의 占領軍을 위태롭게 할지 모를 질병과 폭동의 防止라는 基本的 目的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소요하고 있다.

韓國으로부터의 권위있는 報告들은 自由롭고 獨立된 韓國을 향한 진전이 계속 없는 상황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복구의 면밀한 계획으로 대치되지 않는한 필경 폭력적인 무질서를 포함한 美占領軍의 地位를 유지시킬 수 없는 事態를 빚어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의 軍隊를 급작스럽게 철수시킨다면 美國의 군사적 위신은 저하되고 美國의 安全에 더 중요한 다른 자지역에서의 협조에 그만큼 反對의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이무렵 美軍首腦의 판단은 韓半島에서 戰爭事態가 발생하면 그것은 곧 全面戰爭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美·蘇共委를 통하여 蘇聯이 南北韓占領軍의 同時撤收를 제의해오자 國務省은 蘇聯의 제의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9월 29일의 백악관 각료오찬에서 마셜은 韓國에서 철수하는 문제를 예의감토중이라고 피력했는데, 前駐 蘇大使 해리먼이 『美國이 체면을 손상하지 않고 철수할 수 있느냐』고 묻자 마아셜은 『그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대답했다.<sup>147)</sup> 그리하여 國務省은 10월 4일에 서울의 美·蘇共委代表에게 美國政府가 蘇聯의 提議를 검토하고 있으며 적당한 방법으로 곧 회답하겠다고 蘇聯代表에게 통고하라고 訓令했다.<sup>148)</sup>

合參本部의 건의와 蘇聯의 提案을 검토한 國務省이 도달한 결론은 이 검토회의에 참여했던 조지케난에 따르면, 『蘇聯의 철군제의를 접어들 것

이 아니라 철군하기 전에 한국인들이 国家独立準備를 하게 하는 조치에 대한 우리의 제의와 함께 国聯에 회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시행할 때는 초기 단계 계획에 우리가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최선의 흥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손을 불필요하게 묶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sup>149)</sup> 그리하여 두달 뒤인 11월 14일에 美国의 提議를 수정하여 채택한 国聯總會의 韓國臨時委員團設置 결의에는 国聯 감시하의 總選舉로 수립될 国民政府가 同委員團과 협의하여 시행할 사항의 하나로 『가급적 조속히, 가능하다면 90일이내에 占領軍이 韓國으로부터 完全撤収하도록 兩占領國과 절차를 作成할 것』이라는 항목이 들어가게 되었다.

#### 나. 国聯의 韓國問題決議

國際聯合을 통한 統一韓國政府의 수립이 어려우리라는 것은 韓國問題 討議過程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그리고 国聯의 韓國問題討議와 관련하여 표면화한 駐韓外國軍의 철수문제는 信託統治論爭이래의 가장 큰 政治的 争点이 되었다.

蘇聯의 国聯代表 비진스키는 美国이 韓國問題를 国聯에 移管시킨 것은 모스크바決定의 위반이며, 国聯은 韓國問題를 討議할 근거가 없으므로 議題로 삼을 수 없고, 韓國問題는 美·蘇·英 3國간의 協定에 의해서만 解決이 가능하며, 최선의 解決策은 美·蘇兩軍을 철수시키고 韓國의 장래 문제는 한국인 자신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国聯一般委員會(運營委員會)는 9월 21일에 韓國獨立問題에 관한 제안을 總會議題에 포함시키자는 美国의 決議案을 12대 2로 可決하

고 이어 23일의 總會本會議에서는 41대 6(기권 7)의 可決로 韓國問題를 第1委員會(政治委員會)에 회부하였고, 討議結果를 總會에 報告하도록 결정했다. 第1委員會는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韓國問題를 討議했는데, 여기서도 美國과 蘇聯의 주장은 대립되었다. 美國은 先政府樹立, 後外軍撤収 및 그 過程의 國聯介入을 주장했고 蘇聯은 先外軍撤収, 後政府樹立 및 韓國人들의 自體的인 解決을 주장했다. 또 蘇聯은 國聯의 韓國問題討議와 관련하여 南北韓代表의 同時招請을 주장했고 이에 대하여 美國은 南北韓代表의 公正한 選出을 감시하기 위한 國聯韓國臨時委員會의 設치를 提議했다. 第1委員會는 10월 30일에 蘇聯의 提議를 35대 6(기권 10)으로 부결시키고 美國의 提議를 41대 0(기권 7)로 가결했다. 이 美國案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11월 14일의 總會本會議에서 43대 9(기권 6)으로 채택되었는데, 大韓民國政府樹立의 근거가 된 同決議文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A] 總會의 議題에 있는 韓國問題는 근본적으로 韓國人自身の 문제이며 또 韓國人의 自由와 獨立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 문제는 그 地域住民의 代表의 參加 없이는 정확하고 公正하게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總會는 1) 選舉에 의한 韓國人의 代表가 이 問題의 審議에 參與하도록 초청할 것을 결의하며, 2) 이러한 參與를 용의하게 하고 促進시키며, 또한 韓國人의 代表가 단지 韓國에 있는 軍政當局의 任命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韓國人이 正當하게 選出했음을 監視하기 위하여 조속히 國聯韓國臨時委員會(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을 設치할 것을 決議한다.

[B] 總會는 韓國人의 獨立에 대한 要求가 긴급하고 正當함을 인식

하고, 韓國의 民族的獨立이 再設立되어야 하며, 또 그 뒤에 모든 占領軍은 실행가능한 최단시일내에 철수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1) 韓國人의 自由와 獨立의 조속한 달성에 관하여 國聯韓國臨時委員國(오스트라리아, 캐나다, 中國, 엘살바돌, 프랑스, 필리핀, 시리아, 우크라이나의 9個國으로 구성)과 협의할 수 있고, 國會를 구성하여 韓國의 中央政府를 수립할 수 있는 代表의 選舉를 委員國의 감시하에 1948년 3월 31일까지 人口比例에 따라 普通選舉原則과 秘密投票에 따라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2) 選舉後 가급적 빨리 國會가 소집되어 中央政府를 수립하고 또 그 수립을 委員國에 통고할 것을 권고하고, 3) 中央政府樹立 직후에 同政府가 委員國과 협의하여 ①保安軍을 편성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軍事的 및 準軍事的組織을 해체하고, ②南北韓의 軍司令官과 民政當局으로부터 政府의 機能을 이양받으며, ③가급적 조속히 가능하면 90일 이내에 占領軍이 완전 철수하도록 占領國과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 4) 委員國은 委員國의 結論을 總會에 報告하여야 하며, 事態의 진전에 따라 中間委員會(小總會) -만일 設立된다면-와 협의할 수 있다』<sup>150)</sup>

第2次 美·蘇共同委員會가 整頓狀態에 빠지고 韓國問題가 國聯에 이관되자 國內政界는 自律政府樹立問題, 占領軍의 撤收問題등을 놓고 심한 意見對立을 나타내었다. 右翼勢力중에서도 美軍政에 적극 협조하고 있던 韓民黨과 左右合作을 추진중이던 金奎植系(民族自主聯盟)와는 美·蘇共委에도 참가하지 않으면서 自律政府樹立運動에 協調하던 李承晩과 金九도 南韓·单独政府樹立案에 대한 의견대립과 支持基盤의 相衝(李承晩系의 民族代表者大會와 金九系의 國民議會의 對立)등으로 行動統一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이무렵 國聯에 代表團을 파견하는 문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民族代表者大會와 獨促國民會는 李承晩을, 國民議會등 愛國團體聯合會는 李承晩을 正使로 하고 趙素昂을 副使로 한 代表團을 立法議院에서는 李承晩을 正使로 하고 金奎植을 副使로 한 代表團을 파견할 것을 論議했으나 李承晩은 『國聯에 나가서 左右合作으로 政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든지 總選舉를 反對한다든지 하면 民衆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나는 이러한 의사를 가진 代表와는 同行할 수 없다』면서 金奎植이나 臨政系인 趙素昂과의 同行을 단호히 거부했다.<sup>151)</sup> 그러나 이러한 代表派遣問題는 하지가 『韓國의 統一問題가 美國의 제안으로 國聯에 상정된만큼 軍政當局은 美國政府의 지시나 國聯의 요청이 없는한 國聯韓國代表派遣問題와 南韓만의 單獨選舉를 행할 권한이 없다』고 천명함으로써 실현되지는 않았다.

한편 占領軍의 철수문제에 대해서는 左右合作委의 金奎植도 『外軍의 撤兵은 우리가 전부터 요구해 온 것인만큼 反對할 근거가 없지마는 先決條件없이 蘇聯側이 이러한 提案을 한 것은 愚弄策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언명한데서 보듯이<sup>152)</sup> 右翼勢力들에서는 政府樹立 이전의 撤軍을 無責任하고 危險한 것이라고 反對한데 비하여 左翼勢力은 蘇聯案을 환영했다. 10월 18일에 발표된 社民黨, 勤民黨, 民衆同盟등 左翼系 5黨의 공동성명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곧 ①蘇聯側이 제시한 撤兵期間은 美國側의 同意로써 더 연기되지 말아야하며, 兩軍當局은 撤兵期間內에 38線의 打開策과 南北을 연결할 수 있는 中央機關設立에 責任을 져야한다. ②統一政權을 自主적으로 수립하는 방법은 民族自主的全國總選舉를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兩國當局은 朝鮮人民의 自主自決的權利를 승인하고 우선 南北要人의 往來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sup>153)</sup>

그런데 이 공동성명이 南北要人の 往來의 보장을 요구한 것은 뒤의 南北協商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제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개국대표<sup>154)</sup>로 구성된 國聯韓國委員會團은 48년 1월 8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12일부터 活動을 개시했다. 臨時團長 메논(印度代表)은 하지와의 面談에 이어 21일에는 全國放送을 통하여 「全韓國人의 영원인 獨立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힘을 다할 것」을 표명하고, 北韓駐屯蘇聯軍 司令官에게도 面談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委員會團은 北韓訪問의 기회를 얻고자 國聯蘇聯代表와 蘇聯政府에 여러차례 交渉하였으나 거절당했다. 委員會團은 1월 22일에 9人的 代表(李承晚, 金九, 金奎植, 曹晚植, 金性洙, 許憲, 金料奉, 朴憲泳, 金日成)와 협의하기로 결정하고, 하지에게 逮捕令이 내려져 있는 南勞黨委員長 許憲등에 대한 身分保障을 요구했고 軍政當局은 이들에 대한 不逮捕聲明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委員會團이 실제로 협의할 수 있었던 것은 李承晚, 金九, 金奎植, 金性洙 4人뿐이었으며, 統一政府樹立에 관한 4人的 의견은 그나마 달랐다. 李承晚과 金性洙는 南韓에서 만이라도 빨리 總選舉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金九와 金奎植은 南韓만의 單獨選舉에 반대하면서 委員會團에게 南北韓指導者會議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sup>155)</sup> 委員會團은 4人과의 협의에 이어 過渡政府責任者 등 광범위한 人士들과 接觸하면서, 蘇聯側의 거부로 北韓에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總會決議를 南韓에서만이라도 實行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討議를 거듭했다.

印度, 캐나다, 오스트랄리아, 시리아代表는 美·蘇의 의견조정을 促求하는 견지에서 다분히 회피적인 태도였고, 中國, 필리핀, 엘살바돌代表는 美·蘇의 의견조정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南韓에서만이라도 總會決議를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프랑스代表는 특별한 주장이 없는 채 대체

로 中国代表등의 의견에 가까운 의견이었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美国의 제의로 2월 19일에 소집된 国聯中間委員會(小總會)에 회부하여 그 決定을 따르기로 하고, 실행가능한 4가지 방안, 곧 1) 필연적으로 南韓에 국한된 選舉를 실시하여 韓國의 中央政府로서 승인될 政府를 南韓에 수립하는 것. 2) 選出된 人民代表로 구성되는 諮問機關의 설치를 목적으로 選舉를 실시하는 것. 3) 南北指導者會議과 같은 가능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 4) 機能을 계속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문제를 課題로서 總會에 환송하는 것의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国聯小總會에서 행한 메논團長의 다음과 같은 報告는 国内政治情勢와 관련하여 委員團의 判斷은 南韓에서만이라도 總選舉를 빨리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있음을 말해준다.

『편의상 南韓政黨들은 3개집단, 곧 右翼 中間 左翼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右翼에는 3개의 주요한 政黨이 있다. 곧 李承晩 박사를 총재로 한 獨立促成國民會와 金九씨의 영도하의 韓國獨立黨 및 金性洙씨의 영도하의 韓國民主黨이다. 이 3개의 政黨가운데 獨立促成國民會는 政黨이라기 보다는 李承晩박사의 魔術的인 指導下에 政治的 獨立의 早期達成을 맹세한 여러가지 團體와 個人的 結合體이다. 韓獨黨은 그 세력의 대부분이 또한사람의 元老指導者인 金九씨의 個人的인 吸引力에서 나온다. 金九씨의 政治勢力은 강력하게 때로는 폭력적으로 그 노선을 擁護하는 약간의 右翼青年團體와의 統合으로 인하여 再強化되었다. 金性洙씨를 委員長으로 한 韓民黨은 가장 효과적인 組織을 가지고 있으며 地方連絡을 통하여 특히 최근 몇 개월 동안에 광범한 細包組織을 발전시켰다. 中間路線集團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學者政治家인 金奎植박사에 의하여 조직된 民族自主

聯盟인데, 金氏는 李承晩박사 및 金九씨와 함께 3領袖의 1人으로  
 대개 인정되는 바이며, …… 14 政黨과 51 社會團體로 구성된 同聯盟  
 은 「명목과 실지에서 民主主義的 民族統一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政黨과 團體 및 個人을 결합」 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래 이  
 목적은 南北韓의 統一을 擁護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 上述  
 한 政黨가운데에서 國聯에 의하여 韓國의 中央政府로서 승인될 政府  
 를 南韓에서 즉시 수립할 것을 주장하는 政黨은 2개였다. 그것은  
 李承晩박사가 영도하는 獨促國民會와 金性洙씨가 영도하는 韓民黨이다.  
 이점에 관하여, 그들이 南韓人民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가의 여부  
 를 확실성있게 말하기는 困難하다. 그러나…政黨들은 한개의 도저히  
 測量할 수 없는 財産을 가지고 있다. 그 財産이라는 것은 곧 李  
 承晩박사의 權威이다. 李承晩박사라는 이름은 南韓에서 魔術的威力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 李박사는 韓國의 영구적 分割을 擁護하거나  
 고려하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愛國者이다』<sup>156)</sup>

이러한 보고를 토대로 國聯小總會는 2월 26일에 委員會으로 하여금  
 그들의 任務를 수행할 수 있는 地域內에서 總會決議를 실행하게 하자는  
 美國의 제의를 32대 2(기권 11)로 가결했는데, 기권한 나라들은 共產  
 圈이었고 否票를 던진 두 나라는 委員會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는 카나  
 다와 오스트랄리아였다. 小總會의 결의에 따라 委員會은 48년 5월 10일  
 안에 南韓에서 總選舉를 실시하기로 決定했다. <sup>157)</sup>

#### 다. 南勞黨의 「2.7 救國鬭爭」과 南北協商

南韓에서의 總選擧가 명백해지자 南勞黨을 중심으로한 左翼勢力은 總選擧를 방해할 목적으로 48년 2월 7일을 기하여 이른바 「2.7 救國鬭爭」이라는 暴動을 일으켰다. 民戰은 이 暴動事件에 즈음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傀儡的 單選單政을 분쇄하고 外帝의 앞잡이 國聯委員團을 國外로 驅逐하고 美·蘇兩軍을 철병시켜 조국의 主權을 방어하고 統一, 自由, 獨立을 쟁취하기 위하여』 『朝鮮人民은 勞動者階級의 總罷業을 선두로 위대한 救國鬭爭에 결기하였다』<sup>158)</sup> 고 선언했다. 南勞黨과 民戰은 全評에 지령을 내려 全評傘下의 各勞動組合으로 하여금 總罷業에 들어가게 하고, 機關車破壞, 電線절단, 警察官署습격 등으로 生産機關뿐만 아니라 交通, 輸送을 混亂에 빠트리고 治安과 行政機能을 교란시켰다. 그리하여 7일부터 20일까지에 罷業 30件, 盟休 25件, 총돌 55件, 示威 103件, 燒失 204件이 발생했으며, 8,475명이 검거되었다.<sup>159)</sup> 그리고 11일까지 警察官 12명, 民間人 36명의 死亡者를 포함한 다수의 부상자를 냈다.<sup>160)</sup> 이 폭동사건에서 南勞黨이 표방한 선전구호 중에는 國聯韓委反對, 單選單政反對, 兩軍同時撤収, 國際帝國主義 앞잡이 李承晩, 金性洙등 親日派의 타도등의 새로운 사태와 관련된 것도 있으나, 『勞動者, 事務員을 보호하는 勞動法과 社會保險制를 즉시 실시하라』 『政權을 人民委員會로 넘겨라』 『地主의 土地를 몰수하여 農民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만세』등 46년의 이른바 「新戰術」이래로 일관된 南韓의 北韓化口號였다.

南韓左翼勢力의 이러한 움직임은 北韓에서 추진되고 있던 共產主義政權 樹立準備와 밀접히 관련된 것이었다. 國聯에서 韓國問題가 토의되고 있



## 다. 南勞黨의 「2.7 救國鬪爭」과 南北協商

南韓에서의 總選擧가 명백해지자 南勞黨을 중심으로한 左翼勢力은 總選擧를 방해할 목적으로 48년 2월 7일을 기하여 이른바 「2.7 救國鬪爭」이라는 暴動을 일으켰다. 民戰은 이 暴動事件에 즈음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傀儡的 單選單政을 분쇄하고 外帝의 앞잡이 國聯委員團을 國外로 驅逐하고 美·蘇兩軍을 철병시켜 조국의 主權을 방어하고 統一, 自由, 獨立을 쟁취하기 위하여』 『朝鮮人民은 勞動者階級의 總罷業을 선두로 위대한 救國鬪爭에 결기하였다』<sup>158)</sup>고 선언했다. 南勞黨과 民戰은 全評에 지령을 내려 全評傘下의 各勞動組合으로 하여금 總罷業에 들어가게 하고, 機關車破壞, 電線절단, 警察官署습격 등으로 生産機關뿐만 아니라 交通, 輸送을 混亂에 빠트리고 治安과 行政機能을 교란시켰다. 그리하여 7일부터 20일까지에 罷業 30件, 盟休 25件, 충돌 55件, 示威 103件, 燒失 204件이 발생했으며, 8,475명이 검거되었다. <sup>159)</sup> 그리고 11일까지 警察官 12명, 民間人 36명의 死亡者를 포함한 다수의 부상자를 냈다. <sup>160)</sup> 이 폭동 사건에서 南勞黨이 표방한 선전구호 중에는 國聯韓委反對, 單選單政反對, 兩軍同時撤収, 國際帝國主義 앞잡이 李承晩, 金性洙등 親日派의 타도등의 새로운 사태와 관련된 것도 있으나, 『勞動者, 事務員을 보호하는 勞動法과 社會保險制를 즉시 실시하라』 『政權을 人民委員會로 넘겨라』 『地主의 土地를 몰수하여 農民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만세』등 46년의 이른바 「新戰術」이래로 일관된 南韓의 北韓化口號였다.

南韓左翼勢力의 이러한 움직임은 北韓에서 추진되고 있던 共產主義政權 樹立準備와 밀접히 관련된 것이었다. 國聯에서 韓國問題가 토의되고 있

던 47년 11월 18일에 이미北韓에서는 北朝鮮人民會議 제 3차회의가 열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수립을 위한 臨時憲法制定準備에 관한 報告(金料奉)가 있는 다음 臨時憲法制定委員會가 조직되어 臨時憲法制定作業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48년 2월 6일에 열린 人民會議 제 4차회의에서는 草案이 보고되고, 2월 9일의 北勞黨 제 12차 中央委員會의 토의를 거쳐 12일에는 이를 공포하여 11일부터 25일까지 「人民討議」에 회부시켰다.<sup>161)</sup> 이 臨時憲法草案은 南勞黨에도 송달되었는데, 南勞黨은 同草案을 各地方黨에 배포하여 이를 지지하는 大衆運動을 2.7暴動과 결부시켜 전개한 것이다.

金九와 金奎植이 南北協商을 제의하고 나선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韓國問題에 대한 國聯의 決議가 있는 뒤인 47년 12월의 단계까지만 해도 『혹자는 蘇聯의 보이콧으로 인하여 國聯案이 실시된다고 우려하나 國聯은 그 자신의 권위와 世界平和의 건설과 또 장래에 強力의 擁護를 방지하기 위하여 既定方針을 변하기가 만무하다. .... 만일 일보를 退하여 불행히 蘇聯의 방해로 인하여 北韓의 선거만은 실시하지 못할지라도 추후 何時에든지 그 방해가 제거되는 대로 北韓이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의연히 總選舉의 방식으로서 政府를 수립하여야 한다. 그것은 南韓이 單獨政府와 같이 보일 것이나 좀 더 명백히 규정하자면 그것도 法理上으로도 國際關係上으로도 보아 統一政府일 것이오 單獨政府는 아닐 것이다』<sup>162)</sup> 라고 했던 金九는 左右合作委의 金奎植과 國聯韓委에 대하여 南北指導者會議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고, 南勞黨의 暴動事件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던 2월 10일에는 「三千萬同胞에게 泣告함」이라는 聲明書를 발표하고 『나는 統一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線을 베고 쓰러질 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单独政府를 세우는때는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63)

그리하여 金九와 金奎植은 2월 26일에 공동명의로 金日成과 金科奉에게 『南北政治指導者間の 政治協商을 통하여 統一政府樹立과 새로운 民主國家의 건설에 관한 方案을 토의하자』는 비밀서한을 보냈는데<sup>164)</sup> 그 회답을 기다리는 동안 立法議院에서는 議長인 金奎植과 官選議員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선 가능한 地域에서 총선거를 감시하여 朝鮮國民政府로서 승인을 받도록하여 國際的協助下에 朝鮮의 완전통일을 기할 것을 요망함』이라는 總選舉促求決議案이 통과되어 金奎植과 官選議員들이 議員職을 辭退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지고, 國聯小總會의 결의로 南韓에서만 總選舉實施가 더욱 확실해지자 『南에서는 가능한 地域의 總選舉로 中央政府를 수립하려하고 北에서는 人民共和國憲法을 制定公布한다 하여 南北이 分裂各立할 計劃을 공공연하게 떠들게 되고 目下情勢는 일보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면서 『우리 문제를 美·蘇共委도 解決 못하고 國際聯合도 해결 못할 모양이니 이제는 우리民族으로 自決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는 7巨頭<sup>165)</sup>의 共同聲明이 나오는 등으로 右翼勢力自体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갈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3월 25일밤의 平壤放送은 北朝鮮民戰中央委員會 명의로 「南朝鮮单独政府樹立을 반대하는 南朝鮮政黨團體에게 告함」이라는 放送을 통하여 國聯決定과 南朝鮮單政單選을 반대하고 朝鮮의 統一的自主獨立을 위하는 全朝鮮政黨社會團體 代表者連席會議를 4월 14일부터 平壤에서 열리면서 單選單政을 반대하는 南朝鮮의 모든 民主主義政黨과 社會團體는 참석해 줄것을 요망했다. 그러나 이 放送은 南北指導者會議를 열것을 제외한 金九와 金奎植의 서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言及이 없었다. 이는 一般國民들에게 南北協商을 北韓쪽이 주도적으로 제의하는 것처럼 인식시

키기 위함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하여 金九와 金奎植에게는 27일에 金日成과 金枋奉의 연서로 된 回信을 안편으로 보내왔다. 『회신의 주요내용은 1) 北朝鮮은 자기손으로 자기운명을 開拓할 수 있으나 南朝鮮은 主權이 美國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精神上 物質上 困難을 받는다는 것. 2) 이에 대하여는 모스크바 3相會議決定과 美·蘇共委事業을 적극 반대한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3) 國聯決議 특히 國聯小總會의 行動은 찬성할 수 없다는 것. 4) 蘇聯이 國聯總會에 제의한 바와 같이 兩駐屯軍撤退, 朝鮮代表參加 및 朝鮮問題解決은 순전히 南北朝鮮人에게 맡기어서 自意自處하자는 것. 5)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해결하려는 本志에서 南北朝鮮 小範圍의 指導者連席會議를 48년 4월초에 平壤에서 소집할 것을 동의한다는 것. 6) 同會議에 참가할 成員範圍는 南朝鮮에서 金九, 金奎植, 朴憲永, 許憲, 趙素昂, 洪命熹등 15명, 北朝鮮에서 金日成, 金枋奉, 崔鑄健, 金達鉉, 朴正愛등 10명으로 하자는 것. 7) 論議할 내용은 ①朝鮮의 政治現象에 관한 의견교환 ②南朝鮮單獨政府樹立을 위한 反動選舉實施에 관한 國聯總會의 결정을 반대하며 鬭爭할 대책수립 ③朝鮮統一과 民主主義朝鮮政府樹立에 관한 대책연구 등 8) 만일 金九와 金奎植이 이에 동의할 때에는 3월 말일까지 통지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었다.<sup>166)</sup> 그리고 이 回信과 함께 위에 제시한 15명의 個人과 南勞黨, 韓獨黨, 自族自主聯盟, 全評, 全農, 文芸總등 17개 政黨團體 앞으로 4월 14일에 平壤에서 「南朝鮮單獨選舉를 反對鬭爭하는 南北朝鮮의 모든 民主主義政黨社會團體代表者連席會議」를 열어 『國內政治情勢를 심의하며 우리 國土를 兩斷하고 民族을 分열하려는 反動派의 온갖 策動企圖를 破滅시키고, 祖國의 統一과 獨立을 추진시키며, 世界自由愛護人民들의 一員으로서 朝鮮의 統一民主主義獨立國家建設을 추진시키는 것을 共同目的으로

노력하는데 구체적 計劃을 채택할 것』을 제외한 北朝鮮民戰名儀의 서한이 전달되었다. 167) 金九를 중심으로한 韓獨黨과 金奎植을 중심으로한 民族自主聯盟은, 金日成, 金料奉의 무례한 書翰形式이나 金九와 金奎植이 제외한 南北指導者會議에 대한 문제는 무시된 채 일방적인 北朝鮮民戰決議에 의한 南北政黨社會團體 代表者連席會議에 참석할 것을 요망한데 대해 참가여부를 놓고 討議를 거듭했으나 좀처럼 결론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南北協商을 먼저 제외한 金九와 金奎植으로서는 이를 완전히 거부할 수도 없었으므로 3월 31일에 그동안의 往復書翰을 공개하면서 『第1次 회합을 平壤에서 하자는 것이나 라디오放送때에 南韓에서 여하한 재의가 있었다는 것을 발표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제1차 회합도 미리 다 준비한 잔치에 참례만 하라는 것이 아닌가 杞憂가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은 南北會談要求를 한 이상 左右간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金九와 金奎植이 南北指導者會議를 提案할 때에 이를 反對하지 않기로 했던 李承晚은 4월 2일에 『南北會談 문제는 世界에서 蘇聯政策을 아는 사람은 다 時間延長으로 共產化하자는 計劃에 불과한 것으로 간파하고 있는데 韓國指導者중에서 홀로 이것을 모르고 要人會談을 지금도 주장한다면 大勢에 몽매하다는 조소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더우기 이번 北韓에서 온 回翰內容이 발표와 같다면 이것은 蘇聯目的을 성원하는 이외에 아무 희망도 없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國事に 방해되는 것을 생각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욱 낙심한다. .... 總選舉를 충분히 진행하여 가지고 우리 힘으로 南北統一을 우리 政府에서 달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안다』는 담화를 발표했고 같은날 하지도 『소위 南北協商이라는 것은 朝鮮의 總選舉를 방해하려는 共產系列의 奸計이니 朝鮮國民은 이에 속지 말고



5월 10일의 역사적인 總選舉에 총 참가하여 中央政府樹立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南北協商을 반대했다.<sup>169)</sup> 그동안 하지는 李承晩과 반목하면서 개인적으로 金奎植을 初代大統領으로 밀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政治顧問 卍취中尉와 노로를 시켜 金奎植의 北行을 적극 만류했고 金九를 숭앙하는 右翼青年團體등에서는 金九의 北行을 실력으로 막으려고까지 하는등 역사적인 總選舉를 1개월 앞둔채 政局은 南北協商의 贊反으로 또다시 소란했으나, 左翼系는 물론 文化人(知識人) 108명<sup>170)</sup>의 연서로 된 지지성명이 나오는 등으로 南北協商에 의한 統一政府樹立에 대한 기대의 소리도 높아 金九와 金奎植은 각각 4월 19일과 20일에 平壤으로 갔다.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5일간(20,24,25일은 休會) 牡丹峰劇場에서 열린 「南北朝鮮黨社會 團體代表者連席會議」에는 南北韓의 16개 政黨 및 40개 社會團體代表 545명(추가 695명)이 참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金九가 회의에 나가 『單選單政은 어느時期, 어느 地域에서도 배격되어야 한다』는 축사를 했을 뿐이고 金奎植은 民自聯의 다른 代表만 참가시키고 자신은 稱病하고 會議場에 나가지도 않았다. 모든 會議進行은 그들이 일방적으로 미리 정해놓은 대로였는데, 會議의 중요 내용인 各種報告에서는 金日成이 「北朝鮮政治情勢」을 보고한데 이어 朴憲永이 「南朝鮮政治情勢」, 白南雲이 「南朝鮮의 現政治情勢」, 許憲이 「南朝鮮單選과 單獨政府樹立에 대한 反對鬪爭對策」을 보고했다. 그리고 美·蘇軍의 同時撤収와 統一的인 總選舉를 주장하면서 美國과 國聯 및 「祖國을 分割하고 外國에 預속시키고…… 祖國을 팔아먹는 賣國奴들」과 「그들과 같이 야합하는 分子들」을 규탄하는 내용의 各種文書를 작성하는데도 南韓에서 간 사람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다.

北韓共產主義자들이 同會議을 北韓에 수립하려는 共產政權을 南北韓에 걸친 獨立政府로서의 正統性을 주장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적어도 分斷의 責任을 南韓의 單選單政論者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同會議가 끝나고 南韓의 代表들이 平壤에 머물고 있던 4월 28일에 北朝鮮 人民會議 特別會議을 열고 金料奉이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憲法草案」에 대한 보고를 한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金九와 金奎植이 희망한 南北要人会談(南北政黨社會團體指導者協議會)은 4월 30일에 있었고<sup>171)</sup>, 회의도중에 金九, 金奎植, 金日成, 金料奉의 四金會談도 있었으나 代表者連席會議와 다른 구체적인 政治協商이나 決定은 없었다. 金九와 金奎植은 1) 南韓에 대한 送電繼續 2) 延白貯水池의 開放 3) 曹晚植의 同伴越南을 요구했는데 1) 2) 項은 受諾했으나 3) 項에 대해서 金日成은 자기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蘇聯軍當局과 商議해서 알려주겠다고 대답했다.<sup>172)</sup> 이러한 태도에서도 당시 北韓의 政治가 蘇聯軍當局의 실질적으로 지배하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金九와 金奎植은 5월 4일에 서울에 돌아온 뒤 送電의 계속과 延白貯水池의 개방을 南北協商의 成果로 발표했으나 5.10 選舉 직후에 送電도 給水도 중단되고 말았다.

4월 30일의 會談이후에 발표된 指導者協議會共同聲明에는 統一政府樹立 절차에 대하여 『外國軍隊가 撤退한 이후 下記諸政黨團體들 (連席者會議에 참석했던 56개 政黨 및 社會團體-筆者)은 공동명의로써 全朝鮮政治會議을 소집하여 朝鮮인민의 各층各계를 대표하는 民主主義臨時政府가 즉시 수립될 것이며 國家의 一切政權은 政治, 經濟, 文化生活의 일체 책임을 갖게 될 것이다. 이 政府는 그 첫 과업으로 一般的 直接的 平等的 秘密投票로써 統一的朝鮮立法機關을 선거할 것이며, 選舉된 立法機關

은 朝鮮憲法를 개정하여 統一的民主政府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北韓쪽의 종래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會議와 行事が 끝난 뒤에 金九와 金奎植을 비롯한 右翼系代表들은 서울로 돌아왔으나 左翼系 및 일부 中間派代表들은 平壤에 그대로 머물어 北韓의 政權樹立에 참여하게 되었다.

#### 라. 두개의 政權樹立과 美·蘇軍의 撤収

南北協商勢力이 選舉를 보이콧한 가운데 南韓에서는 5월 10일에 國聯韓委의 감시 아래 制憲國會를 구성하기 위한 總選舉가 실시되었다. 이 역사적인 總選舉에는 7,840,871명의 등록된 有權者가운데 95%인 7,487,649명( 全有權者의 75%)이 참가하여 198명의 國會議員이 선출되었다. 選出된 의원은 李承晚系의 獨促國民會 55명, 韓民黨 28명, 大同青年團 12명, 無所屬 85명이었는데, 무소속 가운데에는 전혀 政治的 背景이 없는 사람도 많았지만 韓民黨과 가깝거나 南北協商勢力에서 이탈하여 總選舉에 참가한 사람도 있었다.

制憲議會는 5월 31일에 개원하여 李承晚을 議長으로 선출하고 7월 12일에 大韓民國憲法를 制定한( 공포는 17일)뒤에 7월 20일에는 新政府의 初代大統領으로 李承晚을 선출했다. 美國政府는 8월 12일에 李承晚政府가 『1947년 11월 14일의 國聯總會決議에 의하여 구성된 韓국의 政府로 간주한다』는 公式聲明을 발표하여 新政府를 승인했다. (정식 政府承認은 49년 1월 1일) 그리하여 8월 15일에는 大韓民國政府樹立이 선포되고, 하지는 같은 날자로 美軍政이 撤지된다고 聲明했다.

大韓民國政府가 수립되자 國聯韓國臨時委員團은 10월 8일에 總會에 제출할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는데, 同報告書는 大韓民國이 國民이 선출한 代表에 의하여 선출되었으며, 이 政府의 기능은 점차 발전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國聯加盟國의 긴밀한 협조로 韓國의 獨立과 統一을 달성할 수 있는 方法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다.<sup>173)</sup>

1948년의 제3차 國聯總會는 韓國臨時委員團의 報告書를 상정하여 토의하고 12월 12일에는 48대 6(기권 1)의 압도적 다수로 韓國問題에 대한 決議文을 채택했다. 이 決議文은 『臨時委員團이 觀察과 협의를 할 수 있었고, 全韓國人의 절대 대수가 살고 있는 地域에서 효과적인 統治와 管理權을 갖는 合法的政府가 수립되었다』고 말하고, 이 政府는 『韓國의 同地域의 有權者의 自由로운 의사의 유효한 표현인 選舉에 입각해 있다』면서 이 政府가 『韓國에서의 唯一한 그러한 政府이다』라고 선언했다. 이 決議가 곧 大韓民國이 韓半島에서의 唯一한 合法政府라는 이론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政府樹立過程에서 共產主義者들은 앞서 본 南北諸政黨社會團體代表者連席會議라는 공개적이며 합법적인 政治工作과 함께 비합법적인 「暴力鬭爭」을 아울러 전개했다. 南勞黨은 2.7暴動事件 이후로 「暴力鬭爭」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黨의 기본조직과는 별도로 各地方別로 「野山隊」라는 武裝組織을 결성시켰었는데, 5.10 選舉實施가 확정되자 4월 1일부터 總選舉反對鬭爭을 위한 「宣傳先行隊」라는 別動隊를 다시 조직했다. 그리고 南北連席會議 뒤에는 上同會議의 결정에 따라 「南朝鮮單選反對鬭爭 全國委員會」를 조직하여 各道·市·郡에도 이를 組織하게 했다. 그리하여 5.10 選舉를 전후하여 各地方에서 警察支署을 격, 放火, 電線절단, 미라살포와 示威 등의 「暴力鬭爭」을 전개했는데, 南勞

당이 이처럼 극력한 「鬭爭」을 전개한 것은 5.10 選舉 破壞工作의 成敗가 그들의 存統問題와 직결되기 때문이었다. 곧 5.10 選舉에 의하여 新政府가 수립되면 그들은 아주 地下로 들어갈 수 밖에 없게 될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北韓에서도 人民共和國를 수립하기 위한 計劃이 추진 중이었으므로 北韓共產主義者들과 合統하여 共產政權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南勞黨系가 유력한 입장을 차지하자면 5.10 選舉 파괴공작에서 자신들의 力量을 과시해야만 했기 때문이다.<sup>174)</sup> 解放直後부터 左翼勢力이 강했던 濟州島에서 48년 4월 3일부터 총계 80,065명의 人命被害를 낸 처절한 暴動事件(4.3事件)이 발생한 것은 그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南韓에서 制憲國會가 구성되어 憲法制定作業을 서두르고 있을 때에 北韓에서는 6월 29일부터 7일동안 4月會議의 연속회의 형식으로 南北朝鮮諸政黨社會團體指導者協議會를 열어 「南朝鮮單獨選舉實施와 관련하여 우리 祖國에 조성된 政治情勢와 祖國統一을 위한 장래 鬭爭對策에 관한 問題」를 토의하고, 大韓民國政府樹立에 対応하는 「적극적인 鬭爭」으로 人民共和國를 수립한다는 協議書를 채택하고, 7월 9일에 소집된 北朝鮮人民會議 제 5차 회의는 金日成의 「北朝鮮人民會議 特別會議에서 찬동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憲法實施에 관하여」라는 보고에 이어서 同憲法實施와 最高人民會議選舉實施를 결정했다. 그런데 南北協商때에 平壤에 갔다가 그대로 머문 사람들과 朴憲永등 그 이전에 이미 越北한 共產主義者들이 人民共和國樹立에 참가하는 방법으로는 「秘密地下投票」에 의한 南韓의 各市郡代表들을 海州에 모이게 하여 따로 「人民代表者大會를 열고 그 회의에서 3백 60명의 最高人民會議代議員(北韓은 2백 12명)을 선출하기로 했다. 南勞黨은 이러한 결정에 따라 民戰을 앞세워 「人民代表者大會」에 참가할 지방대표를 선정하여 이들을 지지한다는 「連判狀運動」



을 전개했는데, 뒤에 北韓当局은 이 「秘密地下投票」에 南韓의 有權者 8,681,746 명중 77.5%에 해당하는 6,762,407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하여 「遷出」된 南韓地域의 대표는 1,080 명이었는데, 이들은 7월말과 8월초에 越北하여 8월 21 일에 海州에서 「南朝鮮人民代表者大会」가 열렸을 때에는 1,002 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南韓의 左翼系幹部는 거의 越北하고, 金三竜등 南勞党的 일부 간부만 남게 되었다.

北韓에서는 8월 25 일에 예의 黑白函選舉方法으로 代議員選舉가 실시되었는데, 北韓当局은 有權者總數 4,526,065 명의 99.9%가 投票에 참가했고 白函投票(民戰推薦候補者支持) 수는 4,456,621 명으로 總投票者の 98.5%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南北總選舉」를 통하여 구성된 最高人民會議가 9월 2 일에 열려 8 일에는 이미 草案이 작성되어 「人民討議」를 마쳐 놓고 있던 憲法을 채택하고, 9 일에는 金日成을 首相, 朴憲永을 副首相으로 하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수립을 선포했다. 蘇聯은 10월 12 일에 이 「政府」를 승인했다.

이처럼 두개의 政府樹立으로 南北韓의 分斷은 固定化되어 갔는데, 外國軍의 철수문제는 南北韓간에서 뿐만 아니라 國際적으로도 한결 열띤 論難거리가 났게 되었다. 北韓의 最高人民會議는 政權樹立을 선포한 이튿날 人民軍(48년 2월 8일 창설)을 100만으로 강화할 것등 8개항의 政綱을 발표하고 美·蘇兩國政府에 駐屯軍의 철수를 요청한다는 書翰을 발송했는데, 蘇聯은 9월 18 일에 蘇聯最高소비에트 常任委員會委員長의 명의로 48년 12월말까지 蘇聯軍을 철수하겠다고 통고해 왔다. 그리하여 北韓政權은 國際적으로 人共의 合法性을 인정받기 위한 活動과 동시에 「兩

軍撤退鬭爭」을 당면과제로 삼고 南韓에 대해서도 暴力鬭爭과 동시에 兩軍撤収에 대한 선전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그런데 駐屯軍의 철수문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美國政府에서도 47년 이래로 본격적으로 검토되어 온 문제였다. 國聯委員團이 韓國에서 活動하고 있던 48년 4월 2일에 美國 國家安保會議는 트루만 대통령에게 對韓政策의 基本原則에 관한 정책문서 (NSC 80)를 제출했는데, 同政策文書의 내용도 합참본부의 건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국가안보회의는 47년 7월에 성립된 國家安全保障法에 따라 國防省 및 中央情報局과 함께 창설된 대통령직속의 정책자문기관 (의장은 대통령)으로서, 이때에 작성된 정책문서가 韓國戰爭때까지의 -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까지도 - 美國의 對韓政策의 原則이 되었다. 그런데 국가안보회의의 정책문서가 건의한 駐韓美占領軍撤収理由가운데에서 參本部의 건의에 없었던 것은 한국에서 發生할지 모를 어떤 사태에도 美國이 自動적으로 介入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었다.

이 政策文書는 美國의 對韓政策의 基本目標은 조속한 시일내의 통일된 자주독립국가의 수립과 「國聯」加入, 그렇게 수립된 국민정부가 한국인의 자유의사를 대표한다는 보증 및 독립된 민주국가의 기반인 건전한 經濟와 教育制度確立의 지원이라고 전제한 다음, 美國이 취할 수 있는 정책으로 다음의 세가지를 들었다.

첫째로 「國聯」 또는 美國의 주권 아래 남한에 수립되는 정부를 포기하는 방법.

둘째로 최소한의 약효과로 美國의 인원 및 經費投入의 청산을 促進시키는 방안으로 남한에 수립되는 정부를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방법.

세계로 外國의 侵略이나 内部의 破壞工作에 對하여 -필요하면 軍사  
력을 써서라도 - 南韓의 政治的 獨立과 領土의 保存을 保證하는 方法.

國家安保會議는 둘째 方法을 채택할 것을 建議했다. 그러면서 미군철  
수에 앞서 南韓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軍대의 訓練과 장비지원이 있  
어야 하고 또 경제적 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經濟援助를 확대해야 한  
다고 덧붙였다. 175)

그런데 이 정책문서는 결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은 한국에서의 어떤 党派나 또는 어떤 다른 勢力(國家)에 의  
해서 취해진 行動도 美國으로서 開戰의 理由라고 생각하게 될 한국사태  
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介入해서는 안된다』 곧 자동개입은 어  
디까지나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트루만이 이 정책문서를 승인한 것도 같은 생각에서였다고 한다. 곧  
『내가 한국으로부터의 미군철수정책을 승인한 이유의 하나는, 비록 사소  
한 것이기는 하나 이 젊은 나라의 政治論争에 불가피하게 介入하게 될  
지 모를 위험 때문이었다. 李承晩대통령은 신념이 강한 인물로서 그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에 대한 人내심이 不足했다. 美軍政庁의 철수는  
반대자들에 대한 그의 專橫的인 行動을 견제해온 구속의 해제였다』고  
트루만은 적고 있다. 176)

한국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李承晩대통령이 하지와 맨 먼저 협의한 안  
건은 잠정적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문제였다. 4월의 美 國家安保會議 政  
策文書에는 12월 31일까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는 制반조치를 강  
구할 것이 지적되어 있었고 트루만도 이를 거듭 지시했었다.

8월 16일에 하지는 李承晩을 방문하여 협정초안을 제시했다. 하지의  
정치고문 제이콥스가 국무성에 보고한 전문에 따르면 이때의 상황은 다

음과 같았다. 초안을 놓고 검토하는 동안 李承晩은 아무런 반대의견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이 초안을 각료들과 협의하자 말썽이 생겼다. 李範奭 국무총리와 특히 張沢相 외무장관이 반대하고 나섰다. 그들은 警察을 포함한 韓國警備隊에 대한 美軍司令官의 監視적 指揮權을 규정한 조항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신문에는 두사람이 만일 李承晩이 이 협정안에 서명하면 장관직을 辭退하고 辭退聲明書를 공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튿날 李承晩은 제이콥스를 불러 협의했는데, 만일 자기가 이 협정안에 서명하면 국회에서 大統領彈劾案까지 나올지 모른다고 그들이 말하더라고 했다. 李承晩은 제이콥스를 부르기 전에 이 문제를 「뉴욕타임즈」의 특파원 존스틴과도 협의했었다. 李承晩은 제이콥스에게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는 미군사령관의 권한이 削除되어 있었다. 제이콥스가 그것은 미국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자 李承晩은 오후까지 재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李承晩에게 그럴 시간 여유가 없을 것이므로 李承晩이 하지에게 미국초안과 한국수정안을 함께 협의회(한국측=국무총리, 내무장관, 외무장관 미국측=헬미트장군, 드럼라이트)에 상정시키도록 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후에 하지는 張沢相과 따로 만나 협의했다. 177)

監視적 군사협상은 8월 24일에 체결되었다. 말썽된 조항 가운데에서 경찰의 지휘권은 한국정부에 이양하는 등으로 약간 수정되었으나 뼈대는 대체로 美國의 草案을 채택한 것이었다. 이 協定에 따라 한국정부가 머지 않아 警備隊의 지휘권을 갖게 될 것이나, 美軍이 철수할 때까지는 美軍이 한국군부대의 지휘권을 가지며, 그동안 美國은 警備隊의 訓練과 장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러기 위하여 임시군사고문단(PMAG)을 설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곧 1백명의 임시군사고문단이 결성되고 年末에

는 고문단의 人員이 241 명이 되었다.

協定이 체결되자 美國은 9월 15일에 최초의 귀환부대를 철수시켰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47년 9월의 美合參本部 建議書에는 주한미군의 수를 4만 5천명이라고 했던 것이 48년 4월의 국가안보회의 정책문제에서는 2만명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동안에도 주한미군의 철수는 사실상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美國은 주한미군철수정책을 자체적인 필요에서 비밀리에 검토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國聯에서의 對蘇協商거리로 삼아왔었다.

한편 蘇聯은 9월 19일부터 북한점령군의 철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앞서 본 대로 北韓最高人民會議의 美·蘇 兩政府에 대한 한국으로부터의 同時撤収要請을 受諾하는 형식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韓國政府로서는 北韓의 軍事力增強이나 南韓各地에서 共產主義者들의 크고 작은 暴動事件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韓國軍의 충분한 증강없이 일방적으로 美軍이 철수한다는 것은 위험스러운일이 아닐 수 없었다. 美軍政庁이 폐지된 뒤 初代駐韓美大使로 부임했던 무치오는 이 무렵의 李承晩의 美軍撤収反對態度에 대하여 『그는 우리에게 군사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도록 壓力을 넣는 데에 온 머리를 짜내고 있었다. 그 자신의 정부기관의 확립이나 리더쉽 및 국민의 발전을 생각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 그는 미군을 그곳에 묶어 놓은 데에 더 관심이 컸다』고 말한바 있다.<sup>178)</sup> 이러한 李承晩의 태도는 미군주둔이 소련이 한반도에서 戰爭을 도발하지 못하게 하는 抑制力이 된다는 판단에서였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國會도 미군주둔이 필요하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49년 2월초에 이르러서는 소장의원 70여명이 남북통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국에 주둔하는 모든 외국군대의 즉시 철수를 요청하는 결



의안을 새로 온 國聯韓委會 제출하자는 긴급동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러자 李承晩은 2월 7일에 국회에 나가 비공개로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외국군대가 다 나가야겠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하는 것이다. .... 소련이 以北에 소위 人民政府라는 것을 승인하고 군사를 양병해서 쳐내려 온다고 하여 .... 인민정부라는 것이 서울을 점령해서 여기와서 행세를 하겠다는 등 선전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

미국은 공개는 안했지만 거반 다 군사가 나가고 없는데 이것마저 철수시키려면 미국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되고 .... 우리가 세계에 선포해 가지고 나가는 것은 韓人共産黨이라는 것이 以南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조치할 수 있고 以北에 가서라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그러나 蘇聯은 여기 내려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다. 美國軍人이 조금이라도 얼마간 여기 있어야 미국 군인들의 체면을 보아서라도 蘇聯이 넘어올 수 없을만한 것을 만들어 놓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48년 10월과 11월에 걸쳐 麗水, 順天, 大邱에서 발생한 군인반란 사건으로 미군철수계획이 늦추어지기는 했으나, '49년에 이르러서는 美軍撤収는 움직일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어져 갔다.

美國은 '48년 11월에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당분간 중지한다고 발표했었는데, 이때의 주한미군은 1만 6천명 규모였다. 소련은 철군을 계속하여 12월 26일에 철군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미군철수는 곧 다시 계속되었다. 合參本部는 極東軍司令官으로서 한국까지 관할하고 있던 맥아더에게 가능한한 빨리 점령군을 7천 5백명 규모의 연대전투단으로 감소시키라고 訓令했다. 12월 28일에 미국은 1개

사단의 철수를 발표하고 '49년 1월 15일에 제 24 군단의 주력이 日本으로 철수했다. 그리하여 7천 5백명의 제 5 전투단(제 32 연대 제 48 포병대대 1개 공병중대 제 7 기갑정찰대)만 남게 되었다.

'49년에 접어들면서 합참본부는 제 5 전투단을 계속 주둔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하면서 맥아더의 견해를 물었는데, 한국의 장래에 대한 맥아더의 전망은 매우 회의적인 것이었다. 그는 한국의 부대로 하여금 전면적인 침략과 내란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훈련과 장비를 갖추게 할 능력을 미국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만일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면 미국은 한국군대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지원을 단념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므로, 남아 있는 부대도 철수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철수시기는 『한국인은 전통을 매우 존중함으로』 총선거 1주년이 되는 5월 10일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 179)

그런데 맥아더는 '48년 8월 15일의 정부수립선포식장에 초청되어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었다.

『…… 이 獨立의 기쁨은 현대사의 最大의 비극의 하나로 말미암아 흐려져 있다.

당신들의 국토는 人工的인 경계선으로 분할되고 말았다. 이 경계선은 지워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韓民族이 自由國家의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未久에 결합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韓民族은 자신들의 성스러운 목적을 희생하고 외국의 파괴사상에 굴복하기에는 너무나 긍지가 높은 민족이다. ……」』

이 귀절은 李承晚의 北進論을 뒷받침하는 말로 引用되기도 하는데, 그런 그가 실은 한국의 장래에 대하여 이처럼 소극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이로니컬한 얘기다. 맥아더는 뒤에 解任直後의 上院청문

회(맥아더청문회)에서도 『철군결정이 내렸을 때에 한국에는 특별히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 . . 南韓 자체에서는 우리의 철군을 요구하는 크나큰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 물론 맥아더의 철군문제에 대한 견해는 2월에 로이얼國防長官이 웨드마이어장군을 대동하고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거듭 표명되었다.

로이얼과 웨드마이어가 李承晩을 만났을 때의 일을 동석했던 무치오는 훗날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워싱턴에 돌아가서 그들이 보고했을 때에 그들은 李承晩이 美國의 제의에 동의했다는 가정에 입각해 있었다.

나의 보고는 이런 것이었다. 李承晩은 그의 군사적 요구에 관하여 우리가 제의한 모든 것에 대하여 「예스, 예스, 예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미군철수의 시기가 왔다는 제시에 대하여 결코 예스라고 하지 않았고 노우 라고도 하지 않았다』<sup>180)</sup>

무치오는 이때의 일이 본국 정부와 현지 외교사절 사이에 보조가 맞지 않았던 대표적인 보기라고 말했다.

'49년 3월 22일에 美國國家安保會議은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를 최종적으로 검토했는데 이때도 『철군이 한국에서의 미국의 지위에 악영향을 미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 맥아더의 건의가 참작되었다. 그리하여 국가안보회의가 내린 결론은 한국에 대한 앞으로의 지지와 원조는 미군의 주둔에 의한 것이 아니며 가능하다면 6월 30일까지 美軍을 完全히 철수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회의는 美國議會가 '49년 7월부터 '50년 6월에 걸친 1950년 會計年度에 군사원조를 계속할 것을 희망하고, 한국군을 훈련하고 또 군사

원조가 유효하게 쓰이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軍事顧問團을 설치할 것을 건의했고<sup>181)</sup> 트루만은 3월 23일에 國家安保會議의 報告를 승인했다.

이러한 철수계획의 확정에 따라 주한 제 5전투단은 5월 28일부터 6월 29일에 걸쳐 철수를 완료했다. 이튿날 마침내 駐韓美軍司令部가 해체되고 임시군사고문단도 해체되었다. 그리고 한국군의 지휘권은 한국정부에 이양되었다. 해체된 임시군사고문단을 대신하여 7월 1일에 駐韓美軍事顧問團 (K MAG)이 5백명의 人員으로 발족되었다.

처음 美陸軍省은 軍事顧問團을 무치오 大使 管轄下에 두되 작전지휘권은 東京의 맥아더에게 맡기려고 했으나 맥아더는 포괄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한 군사고문단은 전적으로 大使의 지휘하에 두도록 건의했다. 그리하여 고문단 자체의 인사행정과 작전지휘사항을 육군성의 직할로 되고 나머지 사항은 모두 大使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極東軍司令官으로서 주한미군을 지휘하고 있던 맥아더의 한국에 대한 권한은 미군철수의 완료와 더불어 없어지고 그의 한국관계 임무는 한국연안까지의 고문단의 지원 및 긴급한 때의 남한에 있는 미군의 철수문제만으로 되었다.

#### 마. 美國의 對韓援助와 韓國軍事力

駐韓美軍의 撤収가 미국정부의 확고한 방침으로 굳어지자 한국정부는 國防力의 강화와 그것을 위한 美國의 지원을 얻어내는 데에 外交的인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다. '49년 4월 18일에 李承晩은 처음으로 兩國政府 사이에 주한미군의 철수문제가 協議中임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UN」 결의에 포함된 것중에는 韓國國防軍을 조직하게 하는

조항이 있는 바, 우리 국군조직이 날로 진취되어 감으로 外軍이 침략하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安全을 보장할 수 있을 만한 지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美軍撤収가 美國의 한국에 대한 責任이나 관심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韓國의 福利와 安全에 필요한 經濟, 軍事 및 技術 기타 모든 필요한 援助를 다시금 강화하겠다는 美國의 새 보장이 따르는 것이다. 美軍事顧問團은 여전히 계속하여 우리 國防軍을 발전시키고 확장하기에 모든 장교를 빌려줄 것이다』<sup>182)</sup>

李承晩의 이러한 聲明은 國內外에서 의외의 장담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하여 뉴우요오크 타임즈 는 19日字 사설에서 李承晩의 聲明가운데서 석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美軍撤収가 초래할 여러가지 위험을 경고하기까지 했다.

국방력강화를 위한 對美交渉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병행해서 추진되었다. 워싱턴에는 初代 駐美大使 張勉과 함께 趙炳玉이 대통령의 개인특사겸 國聯 대표단장으로 파견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要求는 좀처럼 관철되지 않았다. 이 무렵의 交渉狀況을 林炳稷은 그의 「回顧錄」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 나는 미국정부와 주한미군당국에 이북 피퇴의 軍事擴張을 전하는 유력한 정보를 첨가하여 한국군의 장비원조를 수없이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언제나 안이한 태도로 한국정부의 요청을 묵살하고 있었다. 나는 어느날 무치오 미국대사와 미군사고문단 단장 로버츠 준장을 초치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나는 이 석상에서 애국심이 강한 우리 정보원이 수집하여 온 여러가지 이북의 軍事機密과 사진을 제시하고 이래도 한국정부의 무기원조요청이 부당



한가하고 반문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냉담하였으며 조금도 변색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여 나를 흥분시키었던 것이다.

「한국정보원의 정보는 하나도 신빙성이 없다. 결코 이북에서의 전쟁을 목적으로 한 준비란 있을 수 없다. 우리 美國側 정보기 정확할 것이다. 더구나 이북 군대에 탱크가 등장하였다는 것은 난센스다. 한국의 지형은 탱크로 전쟁할 입지조건이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에 나는 지극히 자극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대들은 太平洋問題에 門外漢들이다. 만약 내 말대로 이북 정권이 준비확장을 하여 남침해오는 날에는 당신들은 미국정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자유세제사람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내 흥분된 어조에 그들은 지극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더구나 무치오대사는 나를 노려보고 씩씩거리며 내 방을 나가버렸다」

한편 「무치오」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한국인들은 장비보강과 지원증강을 위해 우리에게 압력을 넣고 있었다. 美國은 南韓에 共產主義者들이 서슴치 않고 넘어올 수 있는 진공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었으나 同時에 특히 李承晩과 李範奭 같은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南韓이 北進하게 될지도 모를 잠재력을 확립시킴이 없이 어느 정도로 그들을 지원해야 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sup>183)</sup>

무치오는 또 李承晩이 『北韓사람들은 그가 白馬를 타고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가 나타나면) 그들은 모두 일어나서 갈채를 보낼 것이며 그렇게하여 한국은 통일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도 말했는데<sup>184)</sup> 이처럼 李承晩의 北進統一論은 美國이 對韓軍事援助를 검토하는 과정에

- 적어도 현지의 외교사절의 레벨에서는 - 逆作用을 했다.

李承晩의 北進統一論의 발상은 49년 9월 30일에 그의 오랜 보좌였던 로버트 올리버에게 보낸 편지에도 나타나 있다.

『…… 나는 우리가 北韓에 있는 우리의 충성스러운 共産軍과 함께 平壤에 있는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공격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지금 이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우리는 金日成 도배를 산악지대로 내몰아 거기서 굶어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방어선을 압록강과 두만강에 걸쳐 증강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100% 유리한 처지에 있게 될 것이다. 충분한 수량의 비행기와 두 河口를 지킬 두세척의 쾌속정과 濟州道를 포함한 모든 해안선을 방어할 전투기가 있으면 두 강과 白頭山을 잇는 天然의 國境線을 거의 침입 不可能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韓國人の 조상들은 2천년에 걸쳐 唐·隨, 蒙古, 日本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켰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 나는 우리가 또 다시 외부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다. 나는 소련이 현단계에서 침략을 감행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고 믿는다. …… 』<sup>185)</sup>

이 편지의 사본은 한국전쟁때에 북한공산군이 청와대에서 탈취해가 물로토프에 의하여 한국이 전쟁을 도발한 증거물의 하나로 國聯에 제시되었기도 했다.

美軍撤収에 따른 보완조치(韓國軍增強計劃)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이 李承晩의 北進統一論 때문이라고는 물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美國으로 하여금 對韓軍事援助를 소홀히 하는데에 중요한 구실이 된 것은 사실이다.

韓國政府로서 軍事力의 증강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으나, 經濟基盤이 지극히 약했던 당시로서는 투자적인 계획추진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日帝의 이른바 「南農北工」 정책에 따라 해방당시의 産業分布는 石炭의 80%, 水力電氣의 90%, 化學製品의 85%가 북한에서 생산되고 있었고 남한에서는 食糧의 65%, 消費品의 80%가 생산되고 있었다. 그러나 남한의 식량과 소비품 생산도 북한의 화학비료와 전력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46년 이후로는 식량 생산량도 급격히 줄었다. 게다가 日本과 中國으로부터 돌아온 귀환동포와 북한에서 내려온 이주민들로 人口는 25%나 급증했다. 그리하여 한국경제는 美國의 원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美軍政期間의 경제원조는 「가리오아」(美占領地救護資金), 「에로아」(美占領地經濟復興資金), 「안라」(聯合國復興救護機關) 등에 의한 것이었는데, 국무성의 보고서 『韓國-45~48』에 따르면 미군정기간에 한국에 제공된 원조는 모두 2억 5천만달러였다. (그 대부분은 「가리오아」에 의한 원조로서 48회계년도까지의 「가리오아」 원조자금은 2억 1천 2백만달러였다) 이들 원조자금은 주로 식량 비료 농산물 도입에 쓰이었다.

한국정부수립과 더불어 이러한 「구호원조」는 「경제부흥계획원조」로 바뀌었다. 48년 12월 10일에 韓美經濟援助協定이 체결되고,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부흥계획을 원조하게 되었다. 원조업무의 소관도 육군성에서 「마아셜 플랜」(유럽援助計劃) 적용국과 마찬가지로 ECA(經濟協力局)로 옮겨졌다.

韓美間의 交渉 끝에 49년 6월에는 「마아셜 플랜」을 모방한 韓國經濟援助案이 성안되어 美國議會에 제출되었다. 이 원조안은 한국의 경제

자립을 위한 3개년 계획으로서, 석탄, 전기, 비료의 순서로 점차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한편 중석과 어선에 투자하여 수출고를 올리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원조 계획을 위해 미국정부는 1950 회계年度(49년 7월 부터 50년 6월까지)분으로 1억 5천만 달러의 지출 계획 승인을 의회에 요청했다. 트루만은 의회의 승인을促하는 특별교서의 끝을 다음과 같이 맺었다.

『만일 우리가 전세계에 걸쳐 평화와 번영의 제조건을 건립하기 위한 우리의 이상에 성실하고 우리의 이해를 잊지 않는다면 한국이 지금의 위기에서 절실히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는 데에 실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무렵 의회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트루만 행정부의 對中政策의 실패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도 對共強硬策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促求하는 壓力手段으로 韓國經濟援助案에 반대했다. 그들중에는 南韓의 國防軍을 강화해서 自衛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경제부흥안을 실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경제부흥안이 실시되는 동안은 1년 또는 그 이상 철군을 보류하라는 타협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이 아시아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반대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설명도 적극적인 것이 아니었다. 국무장관 애치슨은 하원외교위원회에서 『만일 이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極東에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있음을 공공연히 선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국원조안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으나 그것을 실시하지 않으면 한국은 아마도 2, 3개월 안에 赤化될 것이라는 완전한 보장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의회심의회가 사뭇 지연되다가 10월 12일에 이르러 上院의 가결을 보았으나 下院은 끝내 다음 회기로 넘기고 말았다. 그러는 동안 한국은 계획적인 원조를 제공받지 못하고 긴급지출법에 따른 6천만 달러를 몇 차례에 나누어 공급받았을 뿐이다.

50년에 접어들어 트루만은 처음 제정했던 1억5천만달러를 1억2천만달러로 줄여 다시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下院은 1월 19일에 192표대 191표로 끝내 부결시키고 말았다. 이 표결은 美國政府의 外國援助案이 의회에서 좌절된 첫 경우였는데, 그것은 對共強硬策을 주장하는 적극론자들과 외국원조를 반대하는 소극론자들의 결합으로 빚어진 아이러니컬한 사태였다.

애치슨은 뒷날 이 한국원조안의 부결이 북한의 남침을 초래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슬회했다.

한표 차이의 부결로 크게 물의가 이는 가운데 공화당 위원들은 中國에 할당되었던 1억2천5백만달러의 FCA자금중에서 중국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1억달러 이상의 자금 사용 시효를 6개월동안 연기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것을 韓國과 台灣에서 나누어 쓸 수 있게 하자는 타협이 이루어져 2월에 들어와 1억2천만달러의 極東經濟援助案이라는 이름으로 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지출법안의 승인은 늦어져 韓國戰爭勃發 뒤인 6월 29일에 이르러 추가예산 5천만달러의 지출법안이 승인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49년 7월부터 50년 6월까지의 경제원조로서 처음 트루만이 제외한 1억5천만달러 가운데에서 실제로 쓸 수 있게 된 자금은 9천만달러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국전쟁발발 때까지 한국에 도착한 것은 약 4천5백만달러 뿐이었다.



美國의 對韓援助의 무성의는 軍事援助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49년 6월에 미군이 철수할 무렵의 한국군의 형편은, 어느 미군사고문관의 표현을 빌면, 『1775년의 독립전쟁 당시의 미군과 비슷하며, 뛰어난 애국심 하나만을 빼놓고는 별로 볼 것이 없는』 상태였다. 解放 직후에 치안유지와 건군준비에 뜻을 두고 많은 군사단체들이 조직되었는데, 45년 11월에 미군정청이 國防司令部를 설치할 때에 등록된 숫자는 30여단체나 되었다. 국방사령부는 軍事局과 警務局을 두고 警察까지 관할하다가 46년 3월에 군정청의 「局」을 「部」로 改稱하면서 警務部를 독립시키고 國防司令部는 國防部로 改稱되었다. 그러나 3월 20일에 열린 제1차 美·蘇共同委員會에서 소련대표가 『美·蘇 兩國이 한국의 임시정부수립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국방군은 무슨 의도로 설치하느냐』고 항의하자 美軍政庁은 6월에 國防部를 國內警備部로 改稱하고 (그러나 한국인 간부들은 「국내경비부」라는 名稱 대신에 「統衛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46년 1월에 창설된 朝鮮警備隊를 관할하게 했다. 그리고 미군지휘관의 통역관 및 한국군의 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 45년 12월에 설치되었던 軍事英語學校는 '46년 4월에 폐교되고, 5월에 국방경비대사관학교가 개교했다.

주한미군당국은 일찍부터 한국군 창설을 계획했었으나 소련과의 협조문제를 고려한 미국정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었다. 그리하여 45년 12월에 확정된 것이 「뱀부(대나무)計劃」이다. 國防警備隊의 창설은 이 계획에 따른 것이었는데, 정부수립 때의 경비대의 규모는 5개여단의 15개 연대병력(약 5만명)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수립과 더불어 警備隊는 國軍으로서 새로 발족했고, '49년 6월까지에는 8개사단의 23개연대로 증강되었다. 그러나 장비면에서는 북한군대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

리하여 한국정부의 대미교섭은 경제원조보다 군사원조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李承晩은 49년 6월 24일에 주미대사 張勉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주한미군은 이달말까지 철수한다. . . . 많은 우리 육군은 총을 갖지 못했다. 경찰과 해군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실전 3日分の 彈藥밖에 갖지 못했다고 국방부는 보고하고 있다. . . . 한국에 오는 美國人 가운데에는 우리가 무기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매우 놀랐다. 그들은 한국인들은 필요한 모든 전쟁 무기를 갖추었다는 것이 미국의 전반적인 인상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戰鬪機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그런 것은 필요없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미국 비행기가 당장 날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웃사람들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그보다는 우리의 생명선을 위하여 우리 수중에 확보해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 . 우리는 유엔에 우리가 무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美國이 얼마나 주었는지를 조사하여 공개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 . . 현재의 우리의 견해는 우리의 防衛를 위한 적절한 전쟁 무기의 충분한 공급이 경제부흥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國家安全이 보장되면 우리는 경제재건과 그 밖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우리의 안전이 파괴되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 . . 물론 우리는 美國人들 가운데에는 共產主義者의 견해(-공산주의에 대한 한국의 투쟁은 절망적이며 미국이 왜 절망적인 상황에 힘을 낭비해야 하는가라는-)를 지닌 사람들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 . 』<sup>186)</sup>

미국은 駐韓美軍을 철수시키면서 원가 약 5천 7백만달러 (당시의 환산 가격으로는 약 1억 1천만달러) 어치의 장비를 한국군에게 이양했다. 그것은 『약 5만명의 병력을 무장시키는데 충분한장비』였다고 하나, 그 중에는 약 4만의 旧日本軍의 총기와 탄약이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탄약의 사용은 미군사고문단에 의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

미국은 北大西洋條約機構 (NATO)를 성립시킨 뒤인 49년 10월에 韓國, 필리핀, 이란, 터키, 그리스 등에 대한 군사원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相互防衛援助法을 제정했는데, 이 법에 따라 한국, 필리핀, 이란의 세나라에 2천 7백 6십 4만달러어치의 군사원조가 할당되었다. 원조 제공에 앞서 쌍무협정을 체결해야 된다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50년 1월 26일에 韓美軍事援助協定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양국 정부 사이에 협정이 없던 주한미군사고문단에 관해서도 함께 협정이 체결되어 47년 7월 1일까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

相互防衛援助法에 따른 對韓軍事援助額은 1,097만달러로 책정되었으나 미국의 원조품목 제한으로 말미암아 한미간의 합의가 늦어져 한국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전쟁발발 이전에 한국에 도착한 것은 1천달러어치에 지나지 않았고, 船積이 끝난 것을 합쳐도 35만달러어치 밖에 되지 않았다.

미국 下院 외교분과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상호방위원조법에 의한 미국의 대한군사원조가 늦어진 것은 한미간에 원조품목에 대한 합의가 늦어져 50년 3월 29일에야 양국 정부의 승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무기가 너무나 구식이었으므로 병기창으로부터 구하지 못하여 새로 주문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한미군사원조협정은 경제부흥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

래, 한국에 제공되는 장비나 물품 또는 제공방법은 미국의 판단에 따르며, 한국은 제공된 원조의 이용 상태를 미국대표로 하여금 시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그러한 군사원조에 따른 韓國軍의 육성은 駐韓美軍事顧問團을 통하여 실시한다는 것이 미국정부의 기본방침이었다. 그리하여 군사고문단에 관한 협정에서는, 顧問團은 國軍이 미국의 군사원조를 유효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되 한국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협정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원조 가운데에는 한국정부가 요구한 비행기나 탱크 등의 중장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한국군의 장비는 '50년 6월의 단계에서도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고 美陸軍省의 「軍事史시리즈」의 하나인 「駐韓美軍事顧問團」은 적고 있다.

『…… (군사원조의 도착이 늦어진 것은) 韓國軍으로 하여금 그만큼 한국을 침략으로부터 수호하는 데에 무준비상태로 있게 했다. 게다가 한국군의 병참상황은 악화되어 있었고, '50년 6월의 전투단위에 대한 보급과 서어비스는 필요한 최저한도로 제공되고 있을 뿐이었다. 모든 종류의 부품은 멀어지고 주한미군사고문단은 한국군의 무기의 15%, 수송수단의 35%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당시의 장비로는 전면적인 防衛作戰은 15일 이상 지탱하기가 불가능했다. 고문단은 6월 15일에 「한국은 중국에 닥쳤던 것과 같은 不幸에 빠지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 남북 兩軍의 발전은 (인원의 면에서는) 대충 비슷하게 진행되었다. 현저하게 다른 것은 北韓에 제공된 蘇聯의 전면적인 원조에 비하여 南韓에 대한 미국의 미온적인 지지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장비 뿐만 아니라 훈련도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다. 美軍은 49년

6월에 철수를 끝내면서 한국군에 大隊作戰 시범훈련을 보여 주었는데, 그 때까지 한국군은 中隊段階의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수립 이후로 38線 지구에서 충돌이 잦고 또 각처에서 공비들이 출몰하고 있어 공비소탕에 출동하느라고 훈련을 받을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본 美陸軍省의 「駐韓美軍事顧問團」의 記述에 따르면 49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半年동안에 한국군이 공비소탕에 출동한 횟수는 542회나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군 67個大隊 가운데에서 '49년말까지 中隊段階의 훈련을 받은 것은 30個大隊에 지나지 않았고 이들 30개대대 가운데에서 大隊段階의 훈련을 개시한 것은 20개대대 뿐이었다.

처음 美軍事顧問團은 '50년 3월말까지 大隊단계의 훈련을 끝내고 6월말까지 聯隊단계의 훈련을 끝낼 계획이었다. 그러기 위하여 고문단은 '50년초에 국군 및 警察과 협의하여 공비토벌은 戰鬥警察隊를 조직하여 전담시키고 國軍은 공비토벌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계획도 한국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아 5월말에 이르러서도 출동할 수 있는 전투경찰대는 1개대대에 지나지 않았다. 韓國軍(陸軍本部)은 3월 14일에 훈련계획을 다시 작성하여 6월1일까지 대대단계의 훈련을 끝내고 여름 안으로 聯隊단계의 훈련을 끝내라고 하달했다. 그러나 6월 15일까지 大隊段階의 훈련을 끝낸 것은 16개대대 뿐이었고 17개대대는 小隊단계의 훈련조차 끝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훈련목표는 또다시 변경되어 대대단계의 훈련은 7월말까지, 연대단계의 훈련은 10월말까지로 연기되었다.

한편 미국정부는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면서도 고문단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그것은 美國政府의 전반적인 군사비 절감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51 회계년도에는 세계 各國에 산재하는 특별임무반의 수를 감축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4월에 이르러 陸軍省은 駐韓美軍事顧問團長 로버츠 소장에게 고문단의 감축계획을 준비하라고 훈령했다.



## 바.北韓의 軍事力增強과 對南工作

北韓에 진주한 蘇聯軍은 占領初期부터 일련의 「民主改革」의 강행과 아울러 北韓의 軍事力強化에 힘을 기울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45년 10월 12일에 蘇聯軍司令官 치스차코프는 특별성명을 통하여 각지방의 治安隊, 赤衛隊등의 자연발생적인 軍事組織을 해산시키고 그들이 소지한 武器를 전부 회수한 다음 11月初에 臨時人民委員會의 하부기관으로 保安隊를 조직했고 이 保安隊만으로는 治安과 警備를 담당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6년 1월 11일에 本部를 平壤에 둔 道단위의 鐵道保安隊를 組織했다. 그리고 46년 2월 8일에는 平壤에 平壤學院을 창설했는데, 이는 金日成, 金策등 蘇聯軍과 같이 入國한 蘇聯派 30여명이 주동이 되어 창설한 것으로 주로 같이 入北한 軍出身을 단기적으로 政治教育을 위한 保安隊, 黨, 各級臨時人民委員會 各養成機關의 教官등으로 배치하는 한편 正規軍을 창설할 준비를 위한 것이었다. 이어 46년 6월에는 保安隊를 訓練할 价川保安訓練所와 政治教育和 軍事訓練을 위한 「北朝鮮中央保安幹部學校」가 창설되고, 解放1周年紀念日인 46년 8월 15일에는 平壤學院, 保安訓練所, 中央保安幹部學校에서 각각 배출된 軍事要員들을 統合指揮하는 保安幹部訓練大隊部를 창설했다. (司令官= 金日成의 직제인 崔庸健, 砲兵副司令官= 延安派인 金武亭). 이 訓練大隊는 막대한 兵力增強과 軍事施設을 확장해나갔으나 所屬軍人들은 軍官(將校)과 戰士(士兵)로 구분되었을 뿐 階級장이 없었다. 그러다가 47년 5월 17일에 전 장병에게 일제히 階級장이 수여되고, 階級장수여식과 함께 保安幹部訓練大隊部는 人民集團軍 (總司令官= 崔庸健)으로 확대 재편되었다.

人民集團軍의 발족과 동시에 2개 訓練所는 師團으로, 1개는 獨立混

成旅團으로 개편되었고, 장비는 종래에 사용하던 日本製武器를 전부 회수하여 保安隊와 警備隊에 넘겨 주고 새로 蘇聯이 지원한 蘇聯製武器로 바뀌었다. 蘇聯製武器의 조작 訓練은 軍官學校(平壤學院은 제 2 軍官學校, 保安幹部學校는 제 1 軍官學校로 개편)와 各師團에 배치되어 있는 蘇聯顧問官들이 담당했는데, 蘇聯顧問官들은 兵器訓練 뿐만 아니라 共產黨史, 戰術學, 參謀學등등 본격적인 軍事教育까지 담당했고, 小 中 大隊단위의 戰鬪訓練도 실시했다. 187)

그런데 이 단계까지도 一般住民들에게는 軍隊養成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47년 7월 27일에 國際民靑大會 親善競技에 出陣할 軍官學校선수들과 北韓代表선수들의 환송경기때에 人民集團軍복장과 蘇聯製武器로 사열과 분열을 하여 비로서 一般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軍事力을 토대로 北韓에서 아직 政權이 樹立되기도 전인 48년 2월 8일에 正規軍(人民軍)의 창설이 선포되었다. 金日成이 人民軍의 창설을 선포하면서 朝鮮人民은 역사상 처음으로 순수한 人民의 것이며, 또한 民主的成果를 수호할 능력을 가진 군대를 창설하였다. ... 군사 규율의 강화. 용감하고 영웅적인 병사의 양성, 蘇聯 軍事科學과 蘇聯軍의 귀중한 전술 기술을 학습하는 과제를 강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도 (188) 北韓軍의 育成이 얼마나 蘇聯에 의존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人民軍은 48년 5월 1일에 平壤驛광장에서 사열식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는 南北協商을 위하여 入北한 南韓代表들도 참석했다.

48년 10월부터 蘇聯軍이 철수하기 시작했을 때에 北韓에는 國境 警備隊이외에 完全武裝된 4개 步兵師團이 있었고, 또 蘇聯製 T-34 型戰車로 장비된 第115 機甲聯隊가 編成되었다. (49년 5월에 人民軍 제 105 戰車旅團으로 개편). 또 49년 3월에는 蘇聯製 122mm 砲가 도입되어

4월 22일에는 砲兵시범훈련이 있었다.

그러나 北韓軍의 軍事力을 실질적으로 급격히 강화시킨 것은 1949년 7월부터 中共軍내의 朝鮮義勇軍(東北義勇軍)의 귀국이었다.

實戰經驗이 豊富한 이들 28,000名의 兵力은 北韓軍戰鬥力의 골간을 이루게 되고, 北韓軍步兵은 10개의 步兵師團으로 급격히 증강되었다.

46년 6월에 창설된 海上保安隊는 12월에 海岸警備隊로 개편되고, 또 47년 6월에는 海岸警備隊幹部學校가 창설되었으며, 人民軍창설과 政權수립에 따라 人民軍海軍으로 발전했다. 空軍은 45년 10월에 발족된 新義州航空隊가 平壤學院으로 吸收되었다가 人民集團軍창설 때에는 飛行聯隊로 獨立해 있었는데, 48년 12월에 蘇聯軍이 철수할 때에 IL-10과 YAK-9를 인수했고, 49년 12월에는 航空師團으로 증강되었다.

49년 3월에 金日成과 朴憲永은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兩國間에 經濟文化協定을 체결했는데, 이 협정에 따라 蘇聯은 北韓에 새로운 武器援助를 개시하여 49년에서 50년 6월의 戰爭직전까지 정찰기 10대, YAK-9 전투기 100대, 폭격기 70대, T-34형 전차 및 T-70형 전차 100대와 重砲를 支援했다. 이렇게 하여 北韓軍은 開戰때 까지 地上軍 135,000명이 넘게 되었다. (189) 이러한 軍事力의 증강이 南韓에 대한 武力攻擊에 있었음은 49년 9월 9일의 政權樹立1周年紀念式에서 행한 金日成의 다음과 같은 연설로도 짐작할 수 있다.

『政府는 親日派와 民族反逆者들의 매국적인 책동에 의하여 우리 祖國에 조성된 긴박한 政治情勢하에서 北半部에서 성취된 모든 民主建設의 成果를 守護하고, 祖國을 侵略에서 방위하며, 祖國을 統一하기 위하여 人民의 鬪爭을 보호하는 軍隊를 한층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신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人民軍은 강대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또 우리 人民軍과 警備隊는 언제라도 祖国과 人民의 要求에 応하여 敵을 소탕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190)

正規軍의 증강과 함께 南韓에서의 「武力鬭爭」에도 한층 힘을 기울여 現성된지 얼마 되지 않는 軍隊内部에까지 南勞黨細胞를 침투시켜 麗水 順天의 反亂事件에 이어 48年 11월과 12월의 두차례에 걸친 大邱의 6聯隊反亂事件을 유발시켰다. 이들 反亂事件은 많은 犠牲者를 내고 진압되었으나, 智異山 五台山등 山岳地帶는 46年の 10月暴動이래로 도주한 共產계 匪徒들의 근거지가 되었고, 軍隊反亂事件이후로 무장도 銃器등으로 갖추어지게 되었다. 北韓政權은 이러한 南韓의 계 匪徒들을 支援하기 위한 工作도 積極化해 나갔다. 이러한 對南工作은 朴憲永을 중심으로한 南勞黨系가 주도했으며, 이를 위한 要員訓練機關은 平南江東郡의 政治學院이었다.

江東政治學院은 47年 9월에 설립되어 처음에는 南勞黨地方幹部들을 越北시켜 단기教育을 실시하고 다시 南派시켰으나 48年 4월의 南北協商과 같은 해 8월의 人共代議員選出을 위한 海州代表大會에 참가했던 南勞黨과 左翼系幹部들이 北韓에 머물게 되자 이들을 入校시킴으로써 同學院의 規模가 갑자기 커졌고, 大邱 6聯隊反亂事件을 계기로 南韓의 일부지방에 몇 개의 이른바 「遊擊戰區」가 形成되자 49년부터 계 匪徒戰에 대비한 訓練所로 체계를 바꾸었다.

그리하여 訓練은 地下黨工作要員을 위한 政治班, 계 匪徒要員을 위한 軍事班 두가지를 배합한 混合班으로 구분하고, 中·小 分隊로 編成하여 실시했는데, 49年 9월 現在 약 1,200명이 訓練을 받고 있었다. 191)

江東政治學院에서 訓練받은 工作要員과 계 匪徒要員들은 48年 11월부터 50年 3월까지 10회에 걸쳐 약 2,400명이 南派되었는데, 대개의 경우는 國軍에 依하여 본격적인 活動직전에 主力이 소탕되었으나 49年 6월에 2

次南派된 400명, 49년 8월에 4次로 南派된 金達三(濟州道 43事件主動者)部隊와 7次로 南派된 약 100명, 49년 11월에 9次로 南派된 약 100명 및 50년 3월에 南派된 약 700명등은 北韓에서 다량의武器까지 운반해 와서 기존의 게릴라部隊와 合流하여 山岳地帶에 근거지를 구축하고 韓國戰爭때까지 活動을 계속했다.

그런데 南勞黨系에 의한 이들 南派工作員 및 게릴라의 양성은 北韓政權의 主導權競爭과도 관련이 없지 않았다. 곧 朴憲永등 南勞黨系에서는 이들 工作員 및 게릴라를 통하여 南韓에 自派의 勢力을 구축해 놓음으로써 全韓半島가 赤化되는 경우 金日成勢力을 누르고 主導權을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192)

軍事力の 增強과 함께 南北韓의 共產主義勢力을 政治적으로 統合하는 작업이 49년 4월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南北韓의 統一戰線機構를 統合하는 작업부터 추진하여, 49년 5월 12일에 南勞黨을 비롯한 民主獨立黨, 勤勞人民黨, 南朝鮮靑友黨, 全評 등 南韓出身의 8개 政黨 社會團體 공동명의로 『美軍철퇴와 祖國統一을 위한 鬪爭에 전인민을 총궐기시켜야 하겠다. ... 모든 政黨 社會團體들은 자기들의 力量을 총집결하여 한층 광범한 全朝鮮的 民族統一戰線을 결성할 시기가 박두했다』면서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祖國戰線」)을 결성할 것을 제의하고, 北朝鮮民戰이 이 제의를 수락하는 절차를 거쳐 6월 25일 부터 5일간의 결성대회를 열고 南朝鮮民戰과 北朝鮮民戰이 祖國戰線으로 統合되었다. 그들이 採択한 綱領은 1)美軍과 國聯委員會團을 철거케 하고 完全 獨立을 위해 鬪爭한다. 2)北韓의 民主改革을 한층 공고히 발전시킨다. 3)南韓에서 人民委員會부활과 合法化를 위한 鬪爭을 전개한다. 4)南韓에서 無償沒收 無償分配의 土地改革을 실시한다 5)日



帝所有였던 企業을 國有化한다는 등의 13개 항목이었다.

이 綱領內容중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土地改革問題였다. 이미 北韓政權 樹立當時에도 憲法(第7條)에 『아직 土地改革이 실시되지 아니한 朝鮮半島의 地域에 있어서는 最高人民會議가 규정하는 時日에 이를 실시한다』라는 규정을 두었고, 49년 5월 9일에는 「共和國南半部의 土地改革實施를 위한 法令起草委員會組織에 관한 決定書」가 內閣會議를 거쳐 공포되고, 同法令起草委員會(위원장=洪命燾)는 5월 말까지 法令草案을 작성하여 內閣에 제출하게 했다. 이처럼 南韓의 土地改革法令을 이 시점에서 작성했다는 사실은 南韓의 「解放」과 관련된 事前準備인 동시에 당시 南韓에서 게릴라 地下工作을 벌이고 있던 南勞黨員들에게 希望을 주고 또 南韓農民들을 설득하여 그들과 연계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3)

祖國戰線의 結성과 동시에 6월 30일과 7월 1일의 양일간 北朝鮮勞動黨과 南朝鮮勞動黨이 合黨會議를 열어 朝鮮勞動黨(委員長=金日成, 副委員長=朴憲永)으로 통합되었는데, 이는 合黨이라기 보다는 北勞黨이 南勞黨을 吸收한 것이었으며, 黨組織上으로도 1920年代 이래의 朴憲永의 지위가 명실상부하여 金日成의 下位로 격하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對南政治工作은 여전히 朴憲永과 李承燁등 南勞黨系가 전담했으며, 따라서 南韓情報는 朴憲永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 南北勞動黨의 合黨에 이어 南北民靑, 南北女盟등 외곽단체들도 차례로 통합되었다

이처럼 武力에 의한 南韓의 「解放」을 위하여 體制를 정비한 北韓當局은 48년 7월 15일에는 外곽단체를 動員하여 人民軍의 무장강화를 목적으로 「祖國保衛後援會」를 結성하여 人民軍에 대한 武器獻納運動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南韓에서는 祖國戰線이 9월에 總選舉를 실시하자고

제의한 「平和統一宣言」에 호응하여 各地에서 이른바 「9月攻勢」가 전개되었다. 「平和統一宣言」을 전달받은 勞動黨서울指導部에서는 地方黨에 『決定的 시기가 불원간 도래한다. ... 各地方黨은 政權接受를 위한 준비를 하라. 또한 人民軍이 진격하게 되므로 各道黨은 「解放地區」를 1.2개 確保하라. 모든 黨組織은 軍事組織으로 개편하고 결정적 투쟁을 전개하라』는 투쟁지시를 내리고, 「平和統一宣言」에 대하여 ① 8월 20일에 大韓民國政權접수 ② 9월 1일에 朴憲永이 선거 위원장으로 서울에 도착 ③ 9월 20일에 總選舉實施 ④ 9월 21일에 서울에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중앙정부수립등의 해석을 붙여 선전했다. 그리고 政權을 접수하면 銀行金庫가 해방될 것이므로 黨員들은 4개월간의 最低生活費를 제외한 全財産을 7월말까지 黨에 바치라고 지령했다. 194)

모든 조직을 「遊擊鬪爭」형태로 改編한 勞動黨員들은 종전의 산발적인 게릴라活動方式을 바꾸어 일거에 行政機關이나 軍警의 본거지에 대하여 집중공격을 가하는 이른바 「牙城攻擊」을 감행했다. 이러한 攻勢는 武力에 의한 南韓 「解放」政策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으로, 특히 朴憲永 등의 南勞黨系에서는 南韓에서의 그들勢力의 力量을 과시함으로써 黨內地位の 확립과 결정적 시기의 呼応勢力을 실증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5) 8월부터 시작되어 9월과 10월에 걸쳐 全南北地方, 慶南北地方에서 전개되었던 「9월공세」는 大衆의 呼応暴動을 유도하는데 失敗하고, 겨울철에 접어들면서는 게릴라들의 「戰區」인 山岳地帶와 民間部落과의 연계가 두절되는 한편 國軍과 警察의 강력한 討伐作戰으로 말미암아 피멸상태에 빠지고 黨組織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北韓當局으로서, 그 중에서도 朴憲永을 中心으로한 南勞黨系에서는 南韓의 「解放」을 위해서는 韓國政府의 軍事力이 對抗할

수 없을 정도로 增強되기 전에 正規軍에 의한 전면적인 侵攻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美國의 經濟 및 軍事援助에 의한 南韓의 軍事力의 增強은 充分히 예상되는 일이었고, 그러면서도 49년 10월의 中共의 大陸장악과 50년 1월의 에치슨 聲明등으로 韓國이 美國의 太平洋防衛線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등이 奇襲내지 先制攻擊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사. 美國의 世界戰略과 太平洋防衛線

49년 말에서 50년 초에 걸친 美國政界의 가장 큰 論争거리는 中國문제였다. 中國大陸을 장악한 中共은 49년 10월 1일에 「中華人民共和國」의 정부수립을 선포하고 國聯에서의 中國代表權의 교체를 要求하고 있었다. 中國문제를 둘러싼 論争을 매듭짓기 위해 트루만은 1월 5일에 『...美國은 현재 특수권리나 우선권을 얻거나 또는 이 시기에 台灣에 軍事基地를 건설하거나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 美國政府는 中國의 내란에 介入하게 될 어떠한 방도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美國政府는 대만에 있는 中國軍隊에 軍事的 援助나 권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 美國政府의 견해로는 대만에 있는 財源은 그들이 대만의 방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자를 구입하기에 충분하다. 美國政府는 현행의 입법적 권한에 따른 經濟援助에 관한 ECA計劃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성명을 내어 台灣의 방위에 軍事的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美國政府의 基本方針을 밝혔다. 196)

이러한 政策성명에 이어 트루만은 1월 12일의 記者會見에서 대만정책을 거듭 밝히고 『대만문제는 미국에 관한 명백히 해결이 끝난 문제다』라고 말했는데, 같은 날 국무장관 에치슨은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아시아정책을 포괄적으로 개진했다. 이 연설이 한국전쟁을 유발시킨 것이라고 격심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유명한 연설이다. 애치슨은 이 연설에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방위선은 알류우산 列島에서 日本, 琉球列島, 필리핀을 잇는 線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말하여 韓國과 台灣은 이 방위선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밝혔다. 방위선에서 제외된 太平洋의 다른 지역의 안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한 공격행위가 발생하면... 일차적인 책임은 공격을 받은 國民들의 반격력에 있으며, 그 다음에는 「國聯憲章을 신봉하는 모든 文明社會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외부의 침략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獨立을 지키려고 결의한 국민들이 의존하기에는 國聯은 너무나 약한 갈대라는 것이 입증된 적은 아직 없다. 그러나 太平洋과 極東問題를 논의하는 경우 軍事的 문제만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軍事的 問題도 중요하나 동시에 이지역에는 절박한 다른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다. 다른 문제들이란 軍事的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다. ...』 197)

「트루만」의 성명과 특히 애치슨의 연설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에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에 의하여 北韓 共產軍의 侵略을 유발시킨 原因이 되었다고 맹렬한 비난을 받았다는데 198) 당시 駐韓美大使였던 무치오에 의하면 애치슨의 연설 내용은 이미 47년에 國家安保會議의 政策문서 (NSC 7의 1)로 결정되었던 것인데

『애치슨의 말이 새로운 것처럼 된것은 50년의 의원선거전에서였다. 애치슨은 미국이 아시아의 폭선 주변국에 대한 어떠한 侵略에도 일방적으로 개입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한 侵略의 경우는 미국의 一方的인 責任이 아니라 國聯의 문제임을 명백히 한 것

으로서 그것은 한국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대로라는 것이다』 또 그 무렵에 국무성 차관보였던 딘 러스크도 무치오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애치슨의 연설은 아시아의 사태진전과 관련하여, 미국이 소련과의 협상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시아방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공포한 것이었고 방위선은 美軍이 주둔하는 지역과 주둔하지 않는 지역의 구별에 지나지 않으며 安全保障問題는 기본적으로 國聯의 책임임을 강조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200)

사실 애치슨의 연설문은 5천1백여 단어에 이르는 긴 內容이었는데, 방위선 설정에 언급한 뒤의 문장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北太平洋地域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기회는 南太平洋地域에 대한 것과는 크게 다르다. … 北太平洋에서는 우리는 日本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직접적인 기회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韓國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에 대해서 우리는 직접적인 책임을 졌었고 또 행동했으며 현재도 南太平洋에서 보다는 성가를 올릴 큰 기회를 지니고 있다. … 또한 우리는 그(한국) 정부의 기반이 공고하게 될 때까지 援助를 계속해야 한다고 議會에 요청하고 있다. 지금 그러한 입법조치가 의회에서 진행중이다.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을 중지해야 한다면 또는 그러한 정부의 확립이 완성되어 가는 도중에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아시아에서 우리의 이익을 버리는 극단적인 敗北主義요 극단적으로 무분별한 처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나는 확신한다. …』 201)

애치슨이 말한 입법조치란 한국경제원조안을 가리킨 것이었는데, 그러나 1주일 후의 표결에서 이 원조안은 1표차로 부결되고 말았다. 이 무렵 일부에서는 한국포기론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었고, 또 국가



안보회의는 이미 49년 12월에 한국에 대하여 共産軍의 武力侵略이 감행  
되더라도 미국은 地上軍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美國政府가 韓國을 美國의 太平洋防衛線에서 제외시킨 것은 트루만 독  
트린 이후의 미국의 기본전략이 蘇聯과의 全面戰爭을 전제로 하고 있었  
기 때문이다.

키신저는 合參本部의 고문이던 때의 저서「核武器의 外交政策」에서 다  
음과 같이 지적했다.

『事實이 우리의 期待와 어긋날 때에는 그 결과는 必然的으로 失敗  
이다. 한국전쟁은 軍事的으로 전혀 준비가 없던 우리를 붙든 것이  
었다. 그중에서도 戰略理論에서는 특히 그랬다.

미국의 전략사상으로는 전쟁의 원인으로 美國本土에 대한 기습공격이나  
西歐에 대한 軍事侵略의 두가지 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유일한  
해결책으로 전면전쟁을 예견하고 전쟁에 이기는 수단으로서는 戰略空軍  
力을 뒷받침하는 公業잠재력에 의존하고 있었다. ... 蘇聯과의 전면전쟁  
에서는 韓國은 美國의 방위권 밖에 있고 그 運命은 다른 戰爭地域에  
서의 戰鬪成果에 左右되게 마련이었다. 그러므로 한국전쟁은 미국의  
戰略思想의 범주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미국에 대한 기습공격으로  
시작된것도 아니었고, 유럽에 대한 侵略도 아니었으며, 蘇聯은 參戰  
하지도 않았다. 전면전쟁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생각된 戰爭이었다. ...  
韓國戰爭이라는 도전에 전혀 준비가 없었던 것은 곧 美國의 防衛計劃  
이 世界的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데에 어려운 점이 있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 (202)

그리고 이러한 全面戰爭戰略에서는 原子爆彈의 독점상태를 전제로 한  
「戰略爆擊」이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原子爆彈의 독점상태가 무

너지자 미국은 對蘇戰略을 전면적으로 再檢討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 결과로 作成된 政策문서가 유명한 「國家安保會議 政策문서 68호」(NSC 68)였다.

49년 8월의 蘇聯의 原爆實驗은 美國의 政策決定者들에게나 一般國民에게나 큰 충격을 주었고, 뒤이은 中공의 大陸장악은 美國人들의 不安을 더욱 심화시켰다. 인도차이나 半島의 사태 진전도 심각한 問題였다.

50년 1월에 蘇聯과 中共이 잇달아 胡志明政權을 승인하자 2월 1일에 애치슨은 『이로써 胡志明일파의 目標가 民族主義的 性格의 것이 아니며, 그가 인도차이나 民族獨立에 대한 敵임을 暴露하였다.』고 성명했고, 3월에는 第7艦隊의 일부가 사이공에 파견되어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조사단 파견 및 현지 외교관회의등을 통하여 東南아시아 援助問題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트루만은 50년 1월 30일에 그동안 전문가들과 정부 各省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던 수소爆彈의 개발을 명령하는 한편 새로운 사태에 대처할 國家政策을 國무성과 國防성이 합동으로 전면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연구과제는 國무성과 합참본부의 합동위원회에서 2월 중순부터 약 6주일동안 검토되어 4월 7일에 트루만에게 보고되었고, 트루만은 그 보고서를 國家 安保會議에 회부하여 보고서의 취지를 계획으로 구체화하고 비용을 제상할 것을 요청했다. 「國家安保會議 정책문서 68호」로 분류된 이 보고서의 내용은 極秘에 붙여졌으나 중요한 결론은 정부고위층 사이에 이미 알려져 있었다.

보고서는 蘇聯의 世界政策이 아직 면밀한 계획은 없으나 우선순위는 現체제의 權力地位의 유지, 衛星國의 통제와 강화, 적대권력의 중심의 약화에 의한 세계제패라고 分析하고, 이에 대처할 미국국민의 목표를

다음 네가지 항목으로 요약했다.

첫째로, 인간의 존엄이라는 개념에 입각한 제도를 수립하고 유지하겠다는 결심.

둘째로, 이 제도가 존속하고 번영할 조건을 국내외로 촉진하고 보장하겠다는 결의

셋째로, 댓가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도전적이더라도, 이 목적을 평화적 수단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행동에 대하여 다른 나라와 협동하겠다는 의사

넷째로, 이 제도를 우리 자신과 우리자손을 위해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싸우겠다는 용의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미국은 다음 네가지의 選擇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첫째로, 실력을 증진시키지도 않고 공약을 감축시키지도 않고 지금의 한정된 재정코오스를 계속하는 방법

둘째로, 豫防戰爭으로 기선을 잡는 方法

셋째로, 국제적 공약을 버리고 서반구로 철수하여 「아메리카 要塞」속에 숨는 方法

넷째로, 自由陣營의 防衛力을 증진시키는 계획을 통하여 자유진영의 결속을 발전시키는 방법

보고서는 넷째의 방법을 상세히 檢討했는데, 미국은 평화시에도 國民總生産의 20%를 安全보장을 위해 사용하더라도 경제적 파탄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또 소련이 4년 안으로 原子彈을 갖게 되어 미국의 核武器에 의한 억제력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제한된 군사적

도전에 대처할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203)

「制限戦争」이라는 전략개념이 이때에 비로소 채택된 것인데, 그것은 対蘇封鎖政策의 입안자인 國務省 政策企劃委員會 위원장 조오지 케난에 의하여 주장된 것이었다. 케난은 49년 7월에 전면적인 原爆 보복전략은 제한된 局地戦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합참본부에 대하여 완전히 기계화된 2個師團 이상의 機動部隊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었으나 그의 건의는 채택되지 않았었다. (204)

그런데 「국가안보회의 정책문서 68호」는 韓國戦争이 발발할 때까지는 아직 국무성에서 檢討중이었다. 制限戦争의 概念이 실제로 적용된 것은 韓國戦争에서였고, 그 과정에는 맥아더의 해임이라는 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가안보회의는 이 문서에 따른 順位計劃과 費用計上을 국방성에 위임했고, 국방장관 존슨은 최종계획의 완성을 51회계년도 (50년 7월~51년 6월) 예산안 작성 직전인 49년 11월 1일로 잡고 있었다. 5월 9일에 下院에서 승인된 50회계년도 국방예산은 1백 33억 달러 (정부안은 1백 30억 달러)였는데, 「문서 68호」의 비용은 입안단계에서 3백 50억 달러내지 5백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었다.

50년에 접어들어 미국인들의 전쟁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심각해졌는가는 輿論調査의 결과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5월 31일 현재로 미국민의 22%가 1년 안에, 57%가 5년 안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냉전에서 『蘇聯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도 48년 이래로 늘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정부 안에서 한국전쟁의 발발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안이한

판단이였다.

국무성은 세계의 어디에선가 공산군이 군사행동을 감행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에 따른 정세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고 케난은 적고 있다. (「케난」은 50년초에 국무성고문이 되어 있었고 6월말로 사임할 예정이었다. )

『蘇聯情勢의 면밀한 검토는 이들 징후가 관련된 것은 소련군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다. 그렇다면 위성국군대인데, 어느 곳인가. 여러 전문가들을 테이블에 불러 모으면서 우리는 소련블록의 지평선을 여행했다. 韓國 차례가 되었다. 그 나라의 軍事狀況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내 기억으로는, 우리는 日本과 워싱턴의 국방성에 있는 두 군사조직을 통과하는 장거리의 간접적인 통신연락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 간접적인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달된 말은 그 나라에서 공산측으로부터 군사작전이 개시되는 일은 사실상 문제 밖이라는 것이었다. 남한의 군대는 매우 잘 장비되고 훈련되어 공산주의 北韓의 군대보다 훨씬 우월하며, 따라서 우리의 최대의 임무는 南韓이 北韓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력에 호소하는 것을 막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이 판단을 문제삼을 근거는 없었으므로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 그리고 우리는 다른 문제로 넘어갔다. 그러나 다른 어디에서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나, 우리는 아무런 공격의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었다. ...』 (205)

그런데 「맥아더」는 그의 「回顧錄」에서 다음같이 적고 있다.

『...나는 극동에서 공산세력의 위협이 점차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실을 알리려고 노력했으나 여전히 효과가 없었다.

49년부터 50년 6월에 걸쳐 나는 北韓이 침략해볼 위험이 닥아오고



있음을 워싱턴에 줄곧 보고했으나 전면적인 무관심과 中共은 「土地改革者」에 지나지 않는다는 一部の 의견 앞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 무렵에 내가 제출한 보고 가운데에는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올 시기가 50년 6월이라는 예상을 말한 것 까지 있었다.』

맥아더의 情報報告는 정보참모부장 월로우비가 작성한 것이었는데, 월로우비의 말에 의하면 맥아더사령부의 참모2부(G2)는 49년 6월에서 50년 6월 사이의 한햇동안에 1천1백9십5통의 보고를 보냈고 50년에 들어와서는 한국전쟁 직전까지 417통의 특별보고를 보냈는데, 이들 보고에서 북한의 침략기도를 경고한 것으로 되어있다. 207)

그러나 애치슨의 말은 다르다. 맥아더 解任 직후의 맥아더 聽聞會에서 애치슨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정보는... 극동사령부 CIA 육군성 및 각지의 국무성대표에 의하여 제공되었다.

그리고 이들 기관은 이때에 한국에 대한 침략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었으나 50년 여름에는 침략의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도 완전히 일치하고 있었다. ...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의 상태가 침략의 가능성이 있는 다른 몇몇 지역에도 있었으나 그 시기에 침략이 발발하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208)

그러면서 애치슨은 3월10일부 맥아더의 전보를 소개했는데, 그 전문에서 맥아더는 人民軍이 50년 6월에 남한을 침략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을 부인하는 의견을 첨부했었다. 209)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7새전인 6월19일에 CIA의 현지기관은 전반적 북한정세와 아울러 침략개시 직전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보고했다.

거기에는 中共軍內 韓人部隊의 귀국과 최근 몇달 사이에 탱크와 중포가 38선으로 이동되었다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北韓主力部隊에 의한 南韓侵略이 임박했다는 긴박한 정보보고는 없고, 『南韓体制에 대한 北韓의 明白한 軍事的優勢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蘇聯軍과 中共軍의 적극적인 참여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南韓전부를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하고, 『南韓의 反共計劃은 南韓의 정부 및 조직에 대한 공산세력의 침투능력을 실질적으로 감퇴시키고 있다』면서, 南韓의 軍事增強보다는 南韓内部의 政治力의 강화, 곧 남한에 대한 경제원조에 의한 共產계렬라對抗作戰의 확충에 제안의 역점을 두고 있다. 210)

이처럼 對蘇戰略概念이 달라지고 一般國民들이 戰爭의 위험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北韓의 전면적인 침공가능성에 대한 워싱턴의 판단은 회의적이었다. 트루만은 이 CIA報告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 정보에 따르면 北韓은 그러한 침략은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침략이 분명히 있을 것인지, 또는 언제쯤 있을 것인지의 단서를 제공해주는 정보는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었다. 세계의 도처에 소련측이 침략해올 가능성을 지닌 장소가 많다는 같은 보고가 반복해서 들어왔다. ...』 211)

그러나 리지웨이는 그의 회고록 「韓國戰爭」에서 이 무렵의 정보분석과정의 과오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 보고를 읽고 침략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보고는 東京에 있는 총사령부에 의하여 「아무런」 결론의 기초로도 이용되지 않았고, 긴급표시도 없이 통상경로를 통하여 워싱턴에 보내져 왔었다. 뒤에, 총사령부는 이

들 표준적인 준비를 해석하는 데에 실패한 책임을 부인하고 워싱턴에 「모든 사실을 알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군에 의한 무력 침략의 옛새전에 총사령부가 워싱턴에 다음과 같이 해석한 보고를 보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분명히 소련의 고문들은 특히 남한에서의 게릴라戰이 최근에 중대한 失敗에 봉착했기 때문에 지금은 南韓政府를 정치적 수단으로 붕괴시킬 것을 기도해야 할 좋은 기회라고 믿고 있다.

한편 東京에는 東洋人情報員에게는 최소한의 신뢰밖에 두지 않는 경향이 있고, 특히 한국인은 가까이에 아무 짐승도 없는데 「여유다」라고 외치는 경향을 지녔다.』 212)

이런 판단 때문에 한국정부의 거듭된 경고도 과장으로 받아들여졌다.

#### 아. 5.30 選挙와 北韓의 偽裝平和攻勢

미국정부와 미국의회가 한국을 원조하는 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은 것은 李承晩의 독재적인 政治行態와 그에 따른 政局의 不安定에 기인된 점도 없지 않았다. 극동문제 전문가인 레티모어는 49년 8월에 국무성에 제출한 정책각서에서 「蔣介石과 같은 거물도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李承晩의 정권이 얼마나 오래 존속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미국이 한국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바 있고, 국무성은 이 정책각서를 공개했다. 213) 「지는 쪽」을 원조하고 있지 않나 하는 미국인들의 不安은 날이 갈수록 더 해갔다.

50년 1월 31일字 「뉴욕 타임즈」는 애치슨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中共이 승리한 것은 共產主義者로서 보다는 부패하고 무능한 中國의 전통사회를 改革하려는 革命勢力으로서 中國社會의

革命기운에 편승했기 때문이다.』라고 한 말을 인용하면서, 蔣介石이 中国大陸에서 革命기운에 거역하여 결국은 패망해버린 것처럼 李承晩은 南韓에서 革命기운에 거역하고 소수만을 위한 부패한 통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한의 内政改革없이 미국이 부패하고 독재적인 李政權에 아무리 많은 원조를 제공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라고 논평하기도 했다.

트루만도 그의 「回顧錄」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는 李承晩의 경찰이 정치집회를 방해하고 政敵을 탄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李承晩政府가 그들 나라의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크게 우려되었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李承晩을 지지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한국은 1905년 이래로 日本人의 침략과 유린을 받아왔고 다른 지도자와 리더십을 발전시킬 기회가 없었다. 北韓軍이 만일 전면공격을 개시하는 경우 李承晩政府는 중대한 위협에 처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자기의 지역을 될 수 있는대로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랐고 또 農民들이 공산주의 선동자에게 등을 돌릴 수 있도록 그들의 번영을 초래할 방법을 강구하기를 바랐다.』 214)

50년 봄의 国内의 가장 큰 論争거리는 인플레이션문제와 改憲問題였다. 49년 1월에서 50년 1월 사이에 도매물가지수는 거의 2배가 되었다. 쌀값도 48년 12월에서 49년 12월 사이에 역시 거의 2배가 올랐고, 50년 1월에는 더욱 치솟아 6일 동안에 다시 2배나 올랐다.

美国 下院에서 한국경제원조안이 부결된 직후에 국회에서는 内閣責任制 改憲안이 상정되었다. 많은 國民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3월 14일의 표결에서 비록 부결은 되었으나 李承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改憲

안에 반대한 의원은 33명 뿐이었다. (찬성 77명 기권 66명).

李承晩은 경찰과 청년단체등으로 하여금 国会議員들을 위협하여 많은 의원들이 기권하게 했었다.

制憲国会의 임기만료에 따른 제2대国会議員選舉가 5월로 다가오자 李承晩은 선거를 11월로 연기하려고 했다. 그동안 여러가지 방법으로 한국의 정치정세에 관심을 표명해오던 미국정부는 4월 3일에 엄중한 항의각서를 보내왔다. 국무장관 애치슨이 駐美大使 張勉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된 이 항의각서 (명칭은 「援助覺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한국의 재정상태는 이미 위험한 불균형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이 가까운 장래에 둔화되지 않는 한 한국은 ECA가 마련한 經濟援助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능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지출은 승인된 예산의 한계에 관계없이 銀行借入金으로 엄청나게 膨脹했다. … 각종의 자발적 誠金の 무서운 실행은 정상적인 租稅体系의 비능률적인 대응물로 이용되고 있다. 이들 비경제적인 사실이 통화팽창과 정부예산의 불균형과 물가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시켰으며 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위세를 떨치고 있다. 한국정부가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위세를 꺾는 만족스럽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 한국에 대한 ECA의 원조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하겠고 아마도 조정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美国政府는 보도된 韓國政府의 의도, 곧 대통령이 3월 31일에 国会에 보낸 메시지를 통하여 총선거를 5월에서 11월로 연기할 것을 제의한데 대하여 마찬가지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軍事援助는 한국의 民主制度의 존재와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의 憲法과 그



밖의 기본법에 따른 자유보통선거는 그러한 민주제도의 기반이다. 미국 정부로서는 한국의 기본법에 따라 예정되고 준비된 선거의 실시는 위에서 언급한 인플레이션의 위세를 꺾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215)

정부지출의 팽창은 주로 軍隊와 警察의 증강에 따른 것이었으나 國聯 韓委의 보고에 따르면 49년에 조사한 각종의 자발적 성금의 징수총액은 稅收총액보다 더 많았다.

「援助覺書」의 실행을 위하여 美國은 여러 方面으로 설득작업을 벌리면서 한국쪽의 反應도 면밀히 살폈다. 무치오는 워싱턴에 가서 國務 國防 農業 ECA 등 各省 대표들의 대책회의에서 한국사정을 설명했다. 주한미국대사관 職員이 「援助覺書」를 李承晩에게 전달한 다음 찾아간 사람은 야당인 民國黨 最高委員 金性洙나 그와 같이 만난 그의 동료들의 의견도 균형예산의 편성과 5월의 총선거실시에 같은 의견이었으나 다만 李承晩의 의사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5월 30일에 第2代國會議員選出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선거의 결과는 李承晩뿐만 아니라 기존정당의 참패였다. 210명의 당선자 가운데에서 制憲國會議員으로서 재선된 사람은 31명뿐이었고 133명이 무소속이었다.

5.30 선거는 결과적으로 李承晩政權에 대한 일종의 不信任投票였다고 할 수 있는데, 北韓은 그것을 무력침공을 위장하기 위한 평화공세에 이용했다. 6월 1일에 근로인민당의장 李英의 이름으로 북한신문에 평화통일의 촉진을 제의하는 글이 실리고 이틀뒤에는 5백 30만명이 「평화통일 호소문」에 서명했다고 방송했다. 그 이틀 뒤인 6월 5일에는 「祖國戰線 中央委員會」가 열려 평화통일촉진에 관한 기본방침에 합의를 보았다고 방송

했다. 그리하여 7일에는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계획을 방송했는데, 내용은 統一最高立法機關을 설치하기 위한 총선거를 8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실시하여 해방 5주년 기념일에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모든 조건과 절차를 토의 결정하기 위한 南北民主主義政黨 및 社会团体 代表者會議를 6월 15일에서 17일에 걸쳐 海州(북한) 또는 開城(남한)에서 개최하자는 것이었다.

祖国戰線의 이러한 제의는 49년의 「9月攻勢」직전에 발표된 「平和統一宣言」의 내용과 거의 같은 것이었다. 계속된 방송은 남한의 거의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의 대표들에게 「호소문」의 사본을 받으러 10일에 삼팔선 바로 북쪽의 礪峴驛까지 오라면서, 북한대표 세사람이 기다리겠다고 했다. (방송된 「호소문」에서 제의된 「제조건」가운데에는 李承晩 李範奭 金性洙 申性模 趙炳玉 蔡秉德 白性郁 尹致暎 申興雨의 배제와 아울러 『国聯 韓委가 조국통일과업을 방해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항목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제의에 대해 주한미대사 무치오가 본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는 것은 韓國戰爭이 발발했을 때에 美國政府가 그것이 蘇聯에 의한 도발행위로 판단하고 즉각 韓國戰爭 介入과 台灣 인도차이나半島등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決定하는 것과 같은 판단에 立脚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제의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蘇聯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다. ... 정치활동으로서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호소는, 그것은 분명히 5월 30일 이전에 준비된 것일 것이나, 5.30 選舉의 성공과 북한이 그것을 어떠한 중요한 수단으로도 「좌절」시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약세의 처지에서 출발될 것이다. 현재 북한은 대한민국에서 정부

기반을 잠식할 그들의 게릴라활동을 지원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호소는 아마 그것에 대처하는 구실을 할 것 같다.

그러나 선전활동으로서 이 호소는 주도권을 잡는 것이다. 그 표면적인 합리성은 지난번 선거때의 입후보자들의 공약 가운데에서 불만족스럽게 남아있는 38度線의 철폐를 아직도 소망하는 남한의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일지 모른다.

이 호소는 새로 선출된 中道派 無所屬 의원들에 대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일부는 2년전의 南北協商에 동조적이고, 아직도 북한정권에 마음으로부터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릇된 進步的 輿論을 대표하고 있다. ...』(216)

그러나 「호소문」의 사본을 받으려 삼팔선을 넘어간 사람은 國聯 韓委會의 사무국장대리 가이야드뿐이었는데, 國聯 韓委會는 이를 北韓과 접촉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 것이었다. 國聯 韓委會는 5월 11일에 總회의 결의를 실천하는 데에 북한이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대북방송을 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한편 李承晩도 5월 6일에 대북방송을 했었는데, 李承晩은 이 방송에서 북한의 「호소」와는 달리 金日成도 회개만 하면 「상당한 지위」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이라도 그들만 改過悔誤한다면 그들을 주구로 내세워서 남의 나라를 침범하기를 도모하던 외국인들이 다 낙심하고 물러갈 뿐이니 그때는 우리끼리 돌아 앉아서 順理로 모든 문제를 일일이 解決해놓고 앞으로 다시 사오천년역사의 기초를 세우고 앉으면 우리 민족의 영광으로서 더할 여지가 없는 것이요, 以北에서 남의 피뢰기관이 되었던 동포들은 功効가 후세에까지 미칠 것이며, 또 東洋平和에 대하여 많은 공헌이 될 것이오...』(217)

가이야드는 礪峴에서 북한대표를 만나 國聯 韓委의 대북방송문 사본을 전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받지 않았다.

자기들은 단순한 대리자로서, 어떤 협의를 하거나 문서를 접수하거나 할 권한이 없다고 그들은 말했다.

이튿날 북한은 이 3 대표에게 지명된 단체들에 「호소문」의 사본을 전하기 위하여 서울로 가라고 지시했다고 방송했고, 방송된 대로 3인은 38度線을 넘어왔다. (3인은 삼팔선을 넘자 이내 한국 경찰에 체포되었고 뒤에 모두 귀순했다.)

같은 날 北韓은 또 뜻밖의 새로운 제의를 방송했다. 45년 12월의 信託統治反對운동 이래로 연금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우익지도자 曹晩植 및 그의 아들과 南韓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南勞黨지하공작의 두 책임자 金三竜과 李舟河를 38度線에서 교환하자는 제의였다. 韓國政府는 성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제의를 묵살하지 않고 國聯韓委에 중계역할을 의뢰했다.

19일에 북한은 다시 「最高人民會議 議長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합동으로 立法議會를 구성하여 統一憲法을 제정하자는 제의를 방송했다. 이 제의에서도 李承晩을 비롯한 요인들은 배제되어 있었고, 또 國聯韓委의 철수를 요구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선전공세를 묵살하면서도 曹晩植의 구출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9일에는 開城에서 교환할 것을 제의하면서 22일까지 회답하라고 방송했고, 22일에는 다시 24일에 礪峴에서 교환할 것을 제의했다. 북한은 20일에 國聯韓委의 어떠한 중개도 거절한다고 방송했다.

이러한 방송의 교환에 대하여 國聯韓委의 보고서는

『…이 문제에 대한 중재는 라디오방송의 수단으로 계속되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정부와 북한정권이 간접적으로 상호 연락한 최초의 기회였다.』고 論評했다. 그러나 이러한 「최초의 간접대화」가 곧 民族的 大悲劇인 戰爭의 도발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韓國政府는 다시 26일 14시에서 16시 사이에 삼팔선 이남 1km 철로선에서 교환할 것을 제의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음모로 보고 어떠한 수단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방송했으나, 그 하루전에 삼팔선을 넘어온 것은 탱크를 앞세운 무장군인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韓國安保問題와 관련한 韓美간의 交渉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한국戰爭이 발발하기 직전인 6월 17일 국무성 고문이던 델레스가 한국을 방문하여 나흘동안 북으면서 38度線을 시찰하고 제 2대 國會의 개원식에 참석하여 격려의 연설을 하고 갔는데 이 사실은 뒤에 여러가지 억측을 자아내었다. 이해 가을의 國聯總會에서 소련대표는 델레스가 38도선의 참호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사진을 제시하면서 델레스의 訪韓은 한국의 北侵計劃에 대한 최종적인 점검과 승인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한국戰爭에 대한 공식간행물도 『(「델레스」가)삼팔선 일대를 시찰하고 삼팔선 참호속에서 「北伐」에 대한 작전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 비준 하였다』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델레스는 서울에 돌아온 후 6월 25일을 기하여 戰爭을 개시할 것, 북조선이 먼저 침공하였다는 역선전을 진행함으로써 미국이 國聯으로 하여금 朝鮮戰爭에 간섭할 수 있는 결정을 채택할 수 있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실상 델레스는 일본과의 강화문제와 관련된 제반정세를 파악하



기 위하여 일본을 방문하는 길에 한국정부의 초청으로 들른 것이었다. 국무성은 델레스에게 일본방문을 의뢰하면서 무치오를 통하여 한국정부가 델레스를 한국에 초청하도록 제의했었는데, 한국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고위관리들이 일본을 다녀갈 때마다 맥아더를 통하여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했으나 거의는 그냥 돌아가고 말아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2월에 합참멤버들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도 李承晩은 그들을 초청했었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델레스의 극동여행은 한국정부로서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李承晩은 4월초순부터 한달동안 太平洋條約機構의 조직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太平洋地域諸國을 순방하고 帰國했던 張勉을 급히 워싱턴으로 보내어 델레스를 한국에 초청하도록 지시했다.

50년 6월 17일에 한국에 온 델레스는 도착 이튿날 오전에 議政府를 거쳐 東豆川방면의 38度線地域을 시찰했고, 19일에는 제 2대 國會의 개원식에 참석하여 연설을 했다. 델레스는 이 연설에서 「自由와 獨裁 사이의 鬭爭」을 수행하고 있는 韓國國民을 격려하고, 북한에 대하여는 북지의 建社社會를 건설함으로써 소련의 지배력을 붕괴시킬 수 있는 「平和的 影響力」을 확립할 것을 강조한 다음, 공산주의자가 남침했을 경우의 대책을 말한 마지막 구절을 다음과 같이 맺었다.

『...미국국민은 여러분 자신의 자존 및 여러분 자신의 노력에 대하여 먼저 여러분을 물심양면으로 원조할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을 정신적으로 國聯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國聯은 거의 일치하여 여러분의 政治的自由를 조장하고, 여러분의 북한과의 통일을 회구하며,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가맹국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든 나라에 대하여 여러분의 領土保全과 政治的 獨立을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 미국국민의 여러분을 自由世界를 構成하는 위대한 조직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환영한다. 이 자유세계는 광범한 道德的 및 物質的 힘과 불멸의 決意를 지니고 있다. ... 여러분은 고립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이 人間의 自由라는 원대한 실제 속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보람있게 수행할 수 있는한 여러분은 결코 고립되지 않을 것이다. 』(219)

뒷날 무치오는 델레스의 삼팔선 시찰과 국회연설은 뜻밖의 일이었고 자기는 그 연설문을 미리 읽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또한 맥아더는 그의 「回顧錄」에서 『... 델레스는 韓國国会에서, 만일 한국이 침략을 받으면 美國은 한국을 방위한다고 연설하여 앞서 국무성이 언명하고 있던 정책을 얼핏 보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나는 도대체 어느 것이 미국의 처 아시아政策인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220)

델레스의 연설문은 애치슨과도 상의하지 않았던 것이나, 이 무렵에 국무차관보이던 러스크의 말에 따르면, 연설문의 내용을 그가 미리 검토했었고, 특히 마지막 귀절은 그와 국무성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파울 니체가 기초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정부가 요청했고 또 맥아더가 그렇게 본 것과 같은 韓國防衛에 대한 새로운 약속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델레스는 19일 오전에 있었던 李承晩과의 會談에서도 李承晩의 防衛條約 체결 제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였고, 현시점에서 소련이 戰爭을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미국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221) 21일 한국을 떠난 「델레스」는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京都에서 쉬고 있었다

註 :

- 104) 前掲『트루만回顧錄(下)』, p. 298
- 105) 日本問題에 대한 決定은 번즈 자신이 그의 回顧錄 "Speaking Frankly"(1947)에서 『트루만大統領과 내가 미리 준비했던 計劃대로였다』고 적고 있으므로 번즈의 獨走라고는 할 수 없고, 中國問題에 대한 決定도 強力하고 統一된 民主的中國의 再建이라는 기본목표와 國民政府를 中國의 唯一한 合法政府로 인정한다는 12월 15일의 트루만의 聲明을 확인한 내용이였다.
- 106) 「東亞日報」, 1946년 1월 5일 字.
- 107) 韓載德, 『北韓總鑑 '45-'68』, p. 64
- 108) 大韓民國公報處, 『蘇聯軍政의 始末』, 1950, p. 17
- 109) 民主朝鮮社, 『解放三年間의 國內外重要日誌』, 1948, 同日條 및 前掲 『北韓總鑑』, p. 65
- 110) 韓載德의 前掲書에 따르면 (p. 64), 曹晩植이 3相會議決定을 반대하고 나서자 치스차코프司令官과 로마넵코少將은 번갈아가며 曹晩植과 만나 『당신이 찬성만 해준다면 北朝鮮쪽이 절대 우세한 統一을 할 수 있소. 그렇게만 되면 당신을 大統領으로 모시고 金日成은 首相에 앉히겠소』라고 說得했다.
- 111) 『民主主義民族戰線結成大會議事錄』, 1946. pp. 25 ~28
- 112) 前掲『議事錄』에 따르면 民戰은 結成準備과정에서 「南北을 통한 政黨及 各界各層을 총망라한」 準備委員 24人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는 金日成, 金科奉, 崔鏞健 등 北韓共產主義者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으며 準備委事務局의 總局長에는 金科奉을 추대하고 있다.

또한 結成大会는 「南朝鮮全体와 北朝鮮一部」가 參加했다고 선언했  
는데, 結成大会때의 議長團이나 中央委員에서는 北韓共產主義者들은  
제외되어있다.

- 113) 孫世一, 『李承晩과 金九』, 1970. p 210
- 114) Ibid. pp. 216-222
- 115) Dept. of States "Korea's Independence 1947, pp. 20-31  
흔히 이 會議를 美蘇 共委의 豫備會議였던것으로 인식하고 있으  
나 共委의 개최일자를 합의했을 뿐으로 목적이 다른 會議였다.
- 116) F.R. 1946, Vol. VIII. pp. 652-654
- 117) 「東亞日報」, 1946年3月30日字
- 118) F.R. 1946 op. cit pp. 652-667
- 119) 孫世一前揭書, pp. 227-236
- 120) F.R. Ibid. pp. 665-667
- 121) 前掲 『트루만回顧錄(下)』, p 300
- 122) 同上
- 123) F.R. ibid. pp. 681-682
- 124) ibid. pp. 687-688
- 125) 宋南憲, 『解放三十年史①建國前夜』, 1976. p. 307
- 126) 朴馬遠, 『南勞黨總批判 上卷』, pp. 48-50
- 127) 前掲, 『解放一年史』, pp. 458-460
- 128) 朴馬遠, 前掲書, pp. 86-88
- 129) 朝鮮勞動黨出版社, 『朝鮮勞動黨歷史教材』, 1964. p. 176
- 130) 金点坤, 前掲書, pp. 64-65
- 131) 宋南憲, 前掲書, p. 312

- 132) 同上書, pp. 313-314 및 F R. 1946. Vol VIII p. 767
- 133) 李庭植, 『尤史 金奎植』, 1974, p. 170
- 134) 孫世一. 前掲書, pp. 237-264
- 135) 同上書, p. 269
- 136) F R. 1947. Vol VI p. 752
- 137) ibid. pp. 791-772
- 138) ibid. pp. 779-180
- 139) 그런데 딘 러스크는 그 당시 美国政府로서는 国聯에서의 美国의 압도적인 영향력에 의하여 国聯決議에 따라 南北韓에 걸친 総選舉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말하면서 그 例로 前年の 이란問題의 解決을 들었다. (前掲 筆者와의 인터뷰)
- 140) U.S. Congress, Senate, Legislative Origins of the Truman Doctrine: Hearings Held in Executive Session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March 13 and 28, and April 1, 2 and 3, 1947, 80th Cong, 1st Sess. 1973, p. 22
- 141) F R. 1947. Vol VI pp. 625-628
- 142) JSC 1769/1 " The United States Assistance to Other Countries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Security" 29 April 1947.
- 143) F R. Op. cit. p. 741
- 144) 이 報告書의 中国關係部分은 中国大陸이 赤化하고나서 國務省이 『中国白書』(United States Relations with China)를 公刊할 때까지, 그리고 한국관계 부분은 韓國戰爭이 발발한 뒤에



上院軍事委員의 청문회에 제출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웨드마이어報告書」를 둘러싼 미국안의 論争은 미국 정부가 그것을 공개하지 않은 데서 야기되었는데 『中國白書』에 따르면 同報告書는 대통령 자신과 국무장관의 지침으로 요구한 것이고 또 웨드마이어의 건의중에 들어있는 滿州를 蘇聯을 포함한 5大國의 保護아래 두거나 國聯의 信託統治아래 두어야 한다는 제의가 공개되면 중국인의 감정을 자극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反共主義者인 「웨드마이어」는 뒤에 정부와 뜻이 맞지 않아 자진하여 退任했는데, 58년에 그 자신의 저서로서 『웨드마이어報告書』가 출판되자 이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 145) 前掲, 『트루만回顧錄(下)』, p. 304
- 146) 同上 p. 303 F R op cit pp. 817-818
- 147) The Forrestal Diaries, 1951, pp. 321-322
- 148) F R op. cit. p. 823
- 149) FR op.cit. p.818.
- 150) U.N. Official Record, Second Sessio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12(11), pp. 16-18
- 151) 孫世一, 前掲書, p. 276
- 152) 宋南憲, 前掲書, p. 411
- 153) 朝鮮通信社, 『朝鮮年鑑』(1948年版), p. 947. pp. 112-113
- 154) 總會가 지명한 9개국중에서 우크라이나共和國이 不參했다.
- 155) 孫世一, 前掲書, pp. 282-287
- 156) 同上書, pp. 289-292
- 157) U.N. Document A /AC. 19/48
- 158) 金南植, 『實錄 南勞黨』, 1975. p. 359. 金点坤, 前掲書 p. 103

- 159) 金南植, 前掲書, p. 360
- 160) FR. 1948 Vol.VI. p. 1098
- 161) 前掲 『解放三年間の 国内外重要日誌』
- 162) 孫世一, 前掲書, p. 280
- 163) 同上書 pp. 287-289
- 164) 이 비밀서한은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國聯韓委의 캐나다代表를 통하여 英國→蘇聯→北韓의 外交경로를 통하여, 다른 1통은 서울駐在蘇聯領事館을 통하여 전달하게 했다고 한다. (宋南憲 前掲書 pp. 447-448)
- 165) 金九, 金奎植, 趙素昂, 金昌淑, 趙琬九, 洪命熹, 曹成煥
- 166) 宋南憲, 前掲書, pp. 450-451
- 167) 同上書, p. 452
- 168) 同上書, p. 454
- 169) 孫世一, 前掲書, p. 300
- 170) 그중에는 鄭求映 兪鎮午 裴成竜 薛義植 李秉岐 廉尚燮 宋志英 高承濟등도 포함되어 있다.
- 171) 南北要人会談에 참가한 사람은 南韓代表 金九 金奎植, 趙素昂, 趙琬九, 洪命熹, 金明濬, 李克魯, 嚴恒燮(이상 右翼). 許憲, 朴憲永 白南雲(이상 左翼) 15인과 北韓代表 金日成 金科奉, 崔庸健, 宋寧河 4인이 참가했다. (宋南憲 前掲書 p. 466)
- 172) 孫世一, 前掲書, pp. 311-312
- 173)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48-1949. pp. 116
- 174) 金南植, 前掲書, p. 394
- 175) FR. 1948. Vol. VI. pp. 1164-1169

- 176) 前掲, 『트루만回顧録(下)』, pp. 306-307.
- 177) F.R. 1948, op. cit. pp. 1282-1283.
- 178) Oral History Interview with Ambassador John J. Muccio, The Herry S. Truman Library, 1972.
- 179) K Sawyer, Military Adrisers in Korea: K MAG in Peace and War. p. 37.
- 180) Oral History Interview op. cit.
- 181) F.R. 1948, op. cit. pp. 969-978.
- 182) 東亞日報, 1949년 4월 19일자.
- 183) Oral History Interview op. cit.
- 184) Francis H. Heller ed, The Korean War: A 25-Year Perspective. 1977, p. 16.
- 185) Robert T. Oliver, Syngman Rhee and American Involvement in Korea, 1942-1960, 1978, pp. 251-252. 올리버의 記述에 따르면, 물로토프가 国聯에서 이 편지를 공개했을 때에 「뉴욕 타임즈」가 이 편지의 眞否를 물어와서 올리버가 公開하려고 할 때에 国聯 美国代表 오우스틴이 그것은 소련이 날조한 것이라고 声明하여 當時에는 公開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올리버는 이 편지가 李承晩이 「不可能한 꿈」을 표명했던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 186) Robert T. Oliver op. cit. pp. 245-249.
- 187) 戦史編纂委員会, 『韓国戦争史(1) 解放과 建軍』, 1967, pp. 671-683.
- 188) 李鍾学, 『韓国戦争史』, 1969, p. 129.
- 189) U.S. Department of the Army, United State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1961 Chapter II.

- 190) 李鍾學, 前揭書, p. 130에서 再引用.
- 191) 金南植, 前揭書, pp. 466-468.
- 192) 49년 9월 당시에 江東政治學院의 院長은 蘇聯派의 朴憲永, (蘇聯 2世) 政治副院長은 朴憲永의 직제인 朴致祐, 軍事副院長은 北 勞黨系의 徐哲로 표면상으로는 南北勞動黨의 배분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學院의 實權은 朴致祐가 장악하고 있었고, 南勞黨의 李承燁, 趙一明등이 週一回정도로 檢閱을 나와 南韓情勢에 대한 강연을 하기도 했으며 「金日成만세」 대신 「朴憲永만세」를 부르게 했다고 한다. (金点坤, 前揭書, pp. 226-227, 金南植, 前揭書 pp. 466-469.
- 193) 金南植, 前揭書, p. 484.
- 194) 同上書, pp. 488-489.
- 195) 金点坤, 前揭書, pp. 240-241.
- 196) Harry S. Truman, "United States Policy Toward Formosa" D.S.B.XXII No. 550 (1950. 6.6), p. 79.
- 197) Dean G. Acheson "Crisis in Asia-An Examination of U.S. Policy", D.S.B.XXII No. 556(1950.1.23).
- 198) 이 무렵에 애치슨의 특별보좌관이었던 배틀 (Lucius D. Battle) 은 뒷날 이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한국사태가 악화되어 그 연설이 論爭거리가 되자 애치슨은 배틀에게 『그 연설 문안을 가지고 와 봐. 다시 한번보게. 내가 뭐라고 했었지.』하고 말했다. 배틀이 연설문을 가지고 가서 문제

된 귀절을 지적하자 애치슨은 그러한 공격행위가 발생하면...』하  
고 읽어 내려갔다. 다 읽고 나서 애치슨은 『우리가 行動한 그  
대로군. 그래 썩 잘 표현된 것같아』라고 말했다.

( Francis H. Heller(ed). op. cit. pp.15-16)

- 199) *ibid.* p.13.
- 200) 1978년 9월 5일 筆者와의 面談.
- 201) 註 197.
- 202) H. A. Kissinger # Nuclear Weapons and Foreign Policy,  
1957, pp. 43-46.
- 203) NSC 68 (April 14, 1950 Washington D.C) 1975년 2월 2일에  
解禁.
- 204) George Kennan, Memoirs 1925-1950, 1967, pp. 355-367.
- 205) *ibid.* p. 484.
- 206) 津島-夫訳, 『マソカーサ-回想記』(下), 1964, p. 203.
- 207) C.A. Willoughby and Chamberlain, # Mac Arther, 1941-1951  
# 1954, pp. 351-352.
- 208) U.S. Senote 82d Cong., Military Situation in the Far  
East, 1951 Vol. 111 pp.1990-1991.
- 209) *ibid.* p.1991.
- 210) F R. 1950: vol VII Korea, 1976, pp. 109-121.
- 211) 前掲 『트루만回顧錄(下)』, p. 308.
- 212) Matthew B. Ridgway, # Korean War #, 1967, pp. 13-14.
- 213) New York Times. April 4, 1950. p.1.
- 214) 前掲 『트루만回顧錄(下)』, p. 307.



215) F R. 1950, op. cit. pp. 43-44.

216) ibid. pp. 99-100.

217) 「国聯제 5 차總회에 제출된 国聯韓委報告書」(国防部『韓國戰亂 一年誌』, 1951, C 247)。

218) 張勉과 덜레스는 48년의 파리 国聯總회에서 韓國承認문제로 거의 매일 만나 대책을 협의했던 인연이 있었는데, 덜레스는 後日 張勉에게 자기가 大韓民國탄생의 산파노릇을 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고 한다. 張勉은 덜레스訪韓招請交渉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는 미리 우리 주미대사관에 연락하여 덜레스씨를 주빈으로 하는 만찬회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내가 워싱턴에 도착하자 그 당일 바로 워드맨 파아크호텔에서 만찬회를 베풀었다. 비가 억수로 퍼붓는 날인데도 초대된 미국무성고관들은 빠짐없이 참석 해주었다. 나는 덜레스씨와 나란히 앉아 한국을 다녀온 이야기를 나누고, 특히 38線의 경비상태가 너무 허술하다는 실태를 설명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나는 덜레스씨에게 방한 즉시로 38線에 몸소 가볼 것과 国会開院式에 참석하여 「유사시에는 미국이 한국을 즉각 지원하겠다」는 언약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덜레스씨는 나의 이말에 「전쟁이 금방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이처럼 서두르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한국에 가보면 자연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만한 언약도 안할 바에야 한국에 가도 아무런 의의가 없으며 아무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덜레스씨는 「내가 미국정부를 대표하는 공식 직위에 있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런 책임있는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망설이는  
태도였다.

그래도 나는 끈덕지게 「한국의 사활문제에 관한 부탁이니 꼭  
들어달라」고 재삼 요청했다. …」(「6.25 動亂과 워싱턴」 「新東亞  
1965년 8월호)

- 219) John Foster Dulles / The Korean Experiment in Representa  
tive Government / D.S.B. XXIII No. 574 (1950.7.3) p.12
- 220) 津島 - 夫訳, 前掲書, p.203.
- 221) F R. 1950. op. cit pp. 107-109.
- 222) 李雄熙訳, 『후루시초프秘録(2)』, pp. 115-116 이 후르시초프의 巨  
願錄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의심하는 주장도 있으나 美國政府 関  
係者들을 包含한 많은 사람들이 신빙도를 높게 보고 있다.
- 223) 永井陽之郎, 『冷戰의 起源』, 1978, p. 318
- 224) 「人民」, 1950년 1월호.
- 225) 「人民」, 1950년 2월호.
- 226) 朱榮福, 「朝鮮戰爭開戰의 記錄」, 「ロシア 評論」, 1978년 6월호.

## 5. 結 語

위에서 본 바와 같이 韓國戰爭은 解放 이후 北韓에 진주한 蘇聯軍에 의하여 北韓에 「民主基地」政策이 급속히 추진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全韓半島의 赤化를 目的으로 하는 「人民解放戰爭」으로 도발된 것이다.

戰爭準備는 軍事力의 조직과 裝備, 訓練등 일체의 과정에서 蘇聯의 지도로 추진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戰爭의 도발자체는, 흐루시초프가 그의 「回顧錄」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金日成이 「絶对確實」과 신속한 勝利」를 스탈린에게 장담하고 스탈린이 毛沢東과도 상의한 다음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1949년에 金日成이 訪蘇했을 때의 흐루시초프는 다음과 같이 슬회하고 있다.

『金日成은 한번 자극을 주기만 하면 南韓에서 内亂이 일어나 인민의 힘 즉 北韓統治力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물론 스탈린은 이 아이디어에 반대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鬭爭은 韓國문제가 韓國인 자신들에 의하여 해결될 성질의 國內問題인 까닭이므로 더욱 共產主義者들로서의 그들의 信念에 어필하였다.

... 스탈린은 金日成에 대하여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어느 정도 計算을 해서 구체적인 計劃을 가지고 다시 오도록 說得했다.

金日成은 귀국하였다가 모든 計劃이 끝나자,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왔다.

金日成은 스탈린을 만나 자기는 절대로 勝利를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나는 스탈린이 의심을 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스탈린은 美國이 介入하여 올 가능성에 대하여 염려했지만, 우리는 戰爭이 전격적으로 수행된다면

면 - 金日成은 戰爭이 단시일 내에 승리로 끝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

다 - 美國의 개입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金日成 제의에 관해서 毛沢東의 의견을 들어 보기로 결심하였다. ... 毛沢東은 역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그는 金日成의 제안을 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런 戰爭이야말로 韓國人 스스로가 해결할 國內問題이므로 美國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견해를 피력하였다.』 (222)

다만 이때에 이미 中蘇關係가 긴밀한 협조관계라고는 할 수 없었으므로 韓國戰爭수행과정에서 中共이 담당할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위의 흐루시초프의 증언에서도, 스탈린이나 毛沢東 및 金日成은 韓國戰爭은 「人民解放戰爭」의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戰爭開戰이후, 특히 예상외로 美國이 개입하자 蘇聯이나 北韓측이 韓國戰爭을 李承晩의 「北進統一論」에 의한 南韓의 도발이며, 또 그것은 美國과의 事前計劃에 의한 것이라고 逆宣傳 한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부 美國의 修正主義者들에 의하여 美國의 誘引說등이 나오고 있는 것은 「境界線을 넘어」 武力으로 侵攻하는 것은 「侵略戰爭」이며 惡이라는 전래의 西歐價值觀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23)

그리고 韓國戰爭이 北韓共產主義者들과 蘇聯이 사전에 면밀히 계획된 것임은 최초로 公開된 美國公文書保管所의 北韓資料들을 비롯하여 최근에 간행된 여러가지 刊行物등으로 충분히 입증된다.

1950년 3월에 코민포름機關紙 「恒久平和와 人民民主義」에 게재되었다. 가 「프라우다」紙 (50년 3월 23일자)에 전재된 朴憲永의 論文 「祖國의 統一과 獨立을 위한 南朝鮮人民의 英雄的鬪爭」은 南韓에서의 게릴라 活動의 성과를 길게 설명한 것이었는데, 蘇聯의 기관지들이 이 論文을

이처럼 비중을 두고 다룬 것은 곧 南韓에서의 게릴라 활동을 蘇聯이 그만큼 評價하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보다 앞서 50년 1월의 金日成의 新年辭는 지금까지의 統一問題에 대한 추상적인 주장과는 달리 「鬪爭」의 내용을 한결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武力行使의 긴박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人民軍隊, 警備隊, 保安隊의 군무자들은 各兵種部隊들을 더욱 강화하며 軍事技術을 더욱 강화하며, 각종 무기에 정통하여 그의 능수가 되며, 軍官은 지휘에 능숙하며, 戰士는 전투임무를 기민하게 이행할 줄 알며 自覺的軍律을 강화하며, 祖國과 人民을 위하여 복무하는 선진적 애국사상으로 武裝함으로써 이미 쟁취한 民主改革의 승리들을 더욱 고수하며, 祖國과 人民의 부름에 應하며 敵을 어떤 시각에든지 소탕하기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다. ...』

共和國南半部人民들은 그 정견과 신앙과 계층별 여하를 불문하고... 반동도배들의 폭압정책을 반대하여 人民봉기를 일층 猛烈히 전개하며, 괴뢰정권을 외부로 내부로 파괴하며... 遊擊隊들을 物心兩面으로 부단히 성원하여야 하겠다. 손에 武器를 들고 반동과 가혹한 鬪爭을 전개하고 있는 유격대원들은 자기의 鬪爭能力을 더욱 강화하며 부대들을 공고 발전시키며 人民들과의 연계를 일층 강화하면서 유격운동을 도처에서 전개하며 그의 활동범위를 일층 확대해야 하겠다. ...』 224)

또한 北韓의 軍事力 創設이후로 줄곧 그 責任者였고 北韓政權수립과 동시에 民族保衛相(國防相)이 된 崔庸健은 '50년 2월 8일의 人民軍창설 2주년 記念辭에서 다음과 같이 호언했다.

『이미 어떠한 힘으로서도 꺾을 수 없는 위력을 가진 강대한 武裝力 量으로 장성된 우리 朝鮮人民軍은 祖國의 統一獨立을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강력한 담보로 되는 것이며, 평화적 조국통일도상에 있는 온갖 장애물들을 모주리 소탕하기에 넉넉히 준비되어 있으며, 따라서 祖国과 人民이 부를때에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서슴치 않고 나서서, 적을 소탕하기에 항상 준비되어있다.』 225)

이렇게 하여 5월에 들어서는데, 앞서 본 美国 CIA의 報告에서 지적된 대로, 機動演習을 한다는 명목으로 機甲部隊들이 38도선 일대로 이동 배치되었는데, 美国公文書保管所에 보관되어 있는 資料들은 南侵日字가 25日로 정해져 있었음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가령 '50년 5월 23일에 「朝鮮人民軍 제 531軍部隊部隊長 武亭」의 이름으로 하달된 秘密指令들이 그것이다.

그중에 발송 넘버 0148指令은 「6月工作日歷表」로서 「工作」의 내용은 保衛省시행 保衛相組上学, 砲兵副相組上学 등 4종), 指揮參謀訓練 (115, 235, 395, 485, 615, 655 各軍部隊 指揮參謀訓練), 檢閱(직속 포병연대 通學중간봉조점열), 기타(직속 区分隊 戰士, 下士官隊員 보충등 4종)로 되어있는데, 주목되는 것은 이들 「工作」가운데에서 어떤것은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어떤 것은 6월 22일에 가서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 모든 「工作」이 6월 24일이전에 끝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開戰단계에서 作戰命令은 各級部隊에 배속되어 있던 蘇聯軍事顧問團에 통하여 하달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手記가 '78년에 새로 발표되었다. 韓國戰爭開戰 당시에 人民軍砲兵少佐로 蘇聯軍과의 高級通譯을 맡고 있던 朱榮福씨의 手記에 의하면 朱씨는 6월 12일에 鐵原으로 배치되었다가 14일에 평양에 소환되어 19일 저녁에 保衛省工兵局長室에 蘇聯軍顧問 돌긴大佐가 주는 러시아語의 「工兵作戰命令」을 한글로 번역하여 朴吉南局長에게 주었고, 돌긴大佐는

原文을 말아 성냥불로 그자리에서 태워버렸다고 한다. 다른 軍隊의 作戰命令도 마찬가지였다.

러시아語 原文과 번역문이 같이 部隊에 하달되는 일은 없었고, 러시아語原文은 蘇聯軍司令部에 가도 입수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226)

이처럼 韓國戰爭은 人民解放戰爭으로 도발된 것이나 開戰당시의 作戰命令이 러시아語로 되어있을 정도로 실제로는 蘇聯의 지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局地戰인 동시에 美蘇 戰體制와 직접 관련된 것이었다.

美國政府가 즉각 介入을 결정한 것도 그러한 認識에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